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19-01
연구보고 06-R1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책임연구원 : 이춘화(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윤옥경(경기대학교·교수)
 조아미(명지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강지명(한국청소년개발원·위촉연구원)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개발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한국청소년개발원
06-19-02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춘화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윤옥경 교수 조아미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	홍영오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부연구위원	박정선 교수 방은령 교수

연구결과 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속사업으로서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음.
- 2003년도에는 청소년 유형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4년도에는 중독성 및 상습성이 강한 문제유형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 금년도는 청소년과 좀 더 밀착된 환경인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각 영역들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의 장이 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음.
- 이에 따라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를 조사하고, 각 영역별로 현행 대책을 분석하여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했음.

2.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는 협동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한 개의 총괄과제 연구보고서와 두 개의 세부과제 연구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과제의 진행을 조정하고 연구결과를 총괄한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총괄과제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수행한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III 연구의 분석 및 평가, 독일과 일본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분석, 세부과제인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연구결과 요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설문조사는 세부과제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실시했고, 조사는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11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최종분석에 사용

된 조사대상자는 1,146명임. 각 영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세부과제별로 분석했고, 총괄과제에서는 세 영역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

- 첫째, 전반적 수준에서 볼 때,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모두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음. 자아통제는 개인적 수준에서 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청소년비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드러났음. 한편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비행에 주는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음. 유흥업소의 범람이나 거리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는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비행과의 관계는 사회해체론과 일상생활이론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 둘째, 중학생의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학교요인은 학교불신이고 지역사회 환경은 거리무질서임. 중학생이 생각하는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 개인적, 가정적 요인보다 그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임.
- 셋째,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생과는 달리 자아통제의 비행억제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 학교환경의 한 요인인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고등학생의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으로 나타남.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지역사회환경의 한 요인인 유흥업소의 수가 그들의 폭력비행·재산비행·지위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개인적인 변수나, 가정·학교변수는 비행억제에 대해 효과적 의미를 가지지 못했음.
- 넷째, 남녀학생 모두 자아통제력은 일정한 효과를 가짐. 다만 차이점은 남학생의 경우 자아통제력이 지위비행을 막는 요인에 한정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지위비행뿐만 아니라 폭력비행과 자살을 막는 요인도 되고 있다는 점임. 한편 지역사회환경 중 유흥업소의 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주지만, 거리무질서는 남학생의 경우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 경우에는 비행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3.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는 세부과제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를 총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음.
-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위기개입을 위해서는 부모역할 및 가정기능, 학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개입이 적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가족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내용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함. 이혼이나 경제적 갈등에 의한 가정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 부적절한 양육방식 및 부부갈등 같은 가정적 요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지원이 바로 가정·부모중심의 지원내용임.
- 셋째,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규약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며, 학교 내에서 전문상담제도나 정신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청소년의 인권과 전인적 발달이 보장되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국제기구의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범적용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법률 구조와 지역 예산편성, 기업, 미디어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 다섯째,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관심과 노력을 촉진하고, 청소년 유익 공간 및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함. 또한 빈곤지역과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설계와 개발과정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목 차

연구결과요약

I. 서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제한점	6
II.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분석	11
1. 선행연구 분석	11
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	11
2)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	34
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47
2. 외국사례 분석	59
1) 독일	59
2) 일본	76
III. 설문조사 결과분석	95
1. 분석틀	96
2. 조사방법	100
1) 조사대상	100
2) 변수의 조작화	101
3. 분석결과	105
1) 기초분석	105
2) 주요 분석결과	106
4. 소결 및 시사점	117

IV. 세부과제 연구결과	127
1.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127
1) 개요	127
2) 이론적 배경	129
3) 조사결과	137
4) 정책제언	181
2.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191
1) 개요	199
2) 이론적 배경	202
3) 연구결과	215
4) 정책제언	237
V. 결론	263
1. 주요결과	263
2. 정책제언	267
참고문헌	279
부록 : 설문지	293

표 목차

<표 II-1> 바이에른주 청소년원조 공공기관	62
<표 II-2> 청소년보호법상 연령별 허용대상	69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1
<표 III-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105
<표 III-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06
<표 III-4> 조사대상 학생 전체에 대한 비행관련 요인들	108
<표 III-5> 중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110
<표 III-6> 고등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113
<표 III-7> 실업계고등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114
<표 III-8> 남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115
<표 III-9> 여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116

그림 목차

<그림 II-1> 소년사건의 처리 과정	88
<그림 IV-1>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의 종류	188
<그림 IV-2>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 전달체계	193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들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양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해지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03년도에는 청소년 유형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4년도에는 중독성 및 상습성이 강한 문제유형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들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로 수행됨으로서 다각도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원인을 규명하여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금년도는 연구의 종결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시된 대책과 차별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의 삶의 영역에 좀 더 밀착되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환경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유익하게 또는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도 있고 문제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다. 환경들 중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환경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이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정은 구조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화 기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공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학교는 인간의 사회화를 위한 핵심적인 장이 되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과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학교문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교는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

다. 청소년과 밀접한 환경인 가정과 학교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밀접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일상 생활 거점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청소년에게 중요한 환경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의 범람으로 지역사회의 긍정적 기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청소년 문제행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환경 영역들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의 장이 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필요성에 따라 우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를 조사하고, 각 영역별로 현행 대책을 분석하여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4개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3년도에는 청소년 유형별로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연구대상 청소년의 유형은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여성청소년, 탈북청소년, 비행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2004년도에는 중독성 및 상습성이 강한 문제유형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연구대상 문제의 유형은 향정신성 약물 중독, 흡연 중독, 온라인게임 중독, 성매매 상습화로 구성되었다. 2005년도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 환경 별로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연구대상 유해환경 유형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로 구성되었고, 별도로 각 유해환경 유형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해 고찰했다.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행동¹⁾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주제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자 한 본(2006년) 연구는 협동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한 개의 총괄과제 연구보고서와 두 개의 세부과제²⁾ 연구보고서로 구성된다. 총괄과제인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도는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를 종결하는 시점이므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수행한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 II, III 연구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전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 II, III’의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에 관한 사례를 수집해 소개한다. 세부과제에서도 외국사례를 소개하기 때문에 총괄과제에서는 세부과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책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대상 국가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어 제도 도입이 용이한 독일과 일본을 선정했다.

셋째, 가정과 학교·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세부과제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는 세부과제에서 공동으로 실시했다. 각 영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세부과제별로 분석했고, 총괄과제에서는 세 영역의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세부과제인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요약된 내용은 개요와 이론적 배경, 조사결과, 정책제언 순으로 구성된다.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1차 년도에 수행된 연구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가 이루어졌다. 청소년 문제행동이란 청소년비행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들이 범하는 범죄 뿐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를 받는, 소위 지위비행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이춘화·윤옥경, 2003).

2) 세부과제는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으로 구성된다. 세부과제의 연구내용은 제4장에서 소개하는 각 과제의 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총괄과제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3개년간의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세부과제에서는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조사연구이다. 가정·학교·지역사회 각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³⁾를 실시해 각 영역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세부과제에서는 면접조사를 실시해 양적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이다.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전문가의 연구 참여를 통해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한다. 또한 중간발표 및 최종 발표 워크숍을 통해 세부과제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 한정된 점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과거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가장 밀접한 환경이었지만 연구목적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점차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오히려 또래집단이나 대중매체, 특히 인터넷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영역으로 한정된 것은 이들 환경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영역이 청소년을 둘러싼 일차적 환경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환경영역을 설정한 것은 금년도에 연구비가 대폭 삭감되어 많은 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물리적 제

3)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3장에서 소개한다.

한으로 인해 또래집단이나 대중매체, 특히 인터넷영역과 같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또래집단은 학교환경에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주제이고, 인터넷의 경우는 작년도에 유해환경 대책의 일환으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환경인 가정·학교·지역사회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외국사례를 대륙법계 국가,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으로 한정하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 대한 연구가 누락되었고,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두 개의 국가만 다룸으로써 외국사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두 개 국가만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미 연구내용에서 밝힌 것처럼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나라를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법과 제도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분석

1. 선행연구 분석
2. 외국사례 분석

II.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분석

1. 선행연구 분석

금년도는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를 종결하는 시점이므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수행한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 II, III 연구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전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 II, III’의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은 ‘제4장 세부과제 연구결과’에서 기술한다.

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은 인문사회연구회 2003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 탈북·귀국 청소년, 일탈·범죄 청소년, 여자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대책과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1)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가. 연구목적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공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살이나 중도탈락 등의 부적응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과 보호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학교에

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청소년들이 어떤 문제행동을 보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는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상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각종 학교청소년 문제들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①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관련 통계자료 및 조사도구 검토·분석이 이루어졌다.

②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상담사례 분석

③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분석 및 예방대책을 위한 조사 실시 :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조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은 학교(초등5, 중2, 고2:인문계, 실업계)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성별을 고려해 표집한 2,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의 관련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다. 결과

가)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 및 범위 탐색

기존의 연구가 일반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이루어져왔다면, 본 연구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정한 집단인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학

교청소년의 문제행동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었다. 조사결과, 흔히 발생하는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수업시간에 딴 짓 하기(63.5%), 수업시간에 잠자기(54.8%),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29.9%) 등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분석

①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 64.1%의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② 문제행동의 경험 : 5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률은 적게는 1.5%(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경험)에서 많게는 25.2%(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 출입, 성인용 술집 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경험횟수는 대체로 5가지 문제행동에 대해 6개월에 1-2번 경험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경험 이유는 대체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지도실태 분석

요즘 학생들의 고민과 특성에 대해 교사들은 ‘결손가정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보는데 비해 학부모는 ‘주의집중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상급학교 진학문제’를 들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간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라) 효과적인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대책

효과적인 문제행동의 예방과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형성배경과 요인의 차원,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우선적으로 예방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내용 및 성격의 차원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및 지도방법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 평가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연구는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 이해와 그 예방 및 지도대책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의 방향설정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이 일반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과 차별화된다는 것을 밝혀 이 후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지는 일반청소년과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비교하는 논의조차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일반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수업시간에 탄 것하기, 수업시간에 잠자기, 수업시간에 불손한 언행 등의 행동유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대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청소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행동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에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중학교 시기에는 늦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차원의 지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대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교사들에게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문제행동을 다루는 전문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내용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 파악과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학교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건 교사는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주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문제행동 전문가의 확보도 고려해봐야 한다.

넷째,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의 주된 원인을 가정문제에서 본 것은 이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의 주된 원인을 가정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해결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고,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2)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가. 연구목적

범죄청소년의 재범률 증가는 이들이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기존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치우 프로그램 및 대책의 전반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청소년 범죄의 재범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새로운 대책의 강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범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 재범시기, 재범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선진 각국의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국내외 관계법령과 연구자료 등의 문헌 및 인터넷 정보와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나) 조사연구

915명의 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있는 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소수의 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다. 연구결과

가) 조사결과

범죄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관련 특성으로는 절도가 가장 많고 강도와 폭행·상해의 순이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범죄청소년의 범죄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고 최초의 경찰체포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가 70%를 넘고 범죄로 인한 경찰체포횟수(본건 제외)의 경우 1회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70% 이상이 비행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률은 유흥관련 문제행동이 95.8%로 가장 많고 재산관련 문제행동 84.6%, 폭력관련 문제행동 76.6%, 성관련 문제행동 49.5%, 약물관련 문제행동 18.9%였다.

재범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과거 폭력관련 문제행동 경험, 최초 경찰체포 연령이 낮을수록, 첫 번째 범죄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수록, 첫 번째 범죄시 학생신분의 변화를 경험할수록, 첫 번째 범죄 이후에 부모

의 통제정도가 약화되고 나쁜 친구를 새로 사귀거나 기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법제도적 문제와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처우시스템이 개별화, 과학화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위험성 지표분석의 과학화 및 내실화, 조기 개입의 제도화,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과 민간참여기반의 확대, 비행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 다기관·제도의 협력체계 구축,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새로운 처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라. 평가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탈·범죄청소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 소년보호정책과 사법적 처우관행들이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현행 처우효과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공했다. 그 대안으로서 정의가 시민, 가해자, 피해자들의 필요에 의한 균형적인 반응이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한 ‘회복적 사법’을 소개하였다.

둘째,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경찰에 체포될수록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조발범죄는 향후 범죄경력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비행가담 연령이 저령화되는 우리로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셋째,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초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재범억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 범죄

시 수용처분보다 비수용처분이나 경찰에 의해서 훈방 조치되는 소년들이 이후에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재범률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히려 비행청소년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제재의 긴장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법 준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넷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모의 통제활동 강화는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 나쁜 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존 친구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행청소년의 범죄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또한 비행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자나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법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비행청소년들의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는 재범가능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올바른 법의식과 사회에 대한 편견제거 내지는 적대감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아통제능력을 길러주고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 및 상호의존감을 확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재범 발전기제로서의 낙인효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자 처우정책과 방향을 청소년 개인의 위험요소에 대응한 개별화된 적절한 개입 전략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중심처우를 통해 낙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재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3)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가. 연구목적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과 원인 진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초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적, 통합적 접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행동 해결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방향성을 탐색함으로써 근로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와 1차 자료 분석

근로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와 문제행동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나) 면담조사

면담조사는 15-19세의 근로청소년과 근로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다) 설문조사

15-19세의 서울 및 수도권 사업장 종사 근로자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연구결과

가) 근로청소년의 이해

근로청소년의 감소와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근로청소년이 사회적, 정책적 관심에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일하는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근로청소년 간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다.

나) 근로청소년 문제행동의 특성

심한 말다툼이나 무단결근 등과 같은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은 모두 나쁜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약물사용 다이어트를 제외한 모든 표출형 문제행동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였고, 유흥풍속형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했다. 법률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폭력/절도형과 성 비행형 모두 허용도가 낮았고, 근로청소년의 실제 문제행동 경험은 규범적 문제행동이 가장 많고, 사이버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가정교육/가정환경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청소년 자신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다) 근로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방안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서비스의 확대하고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하여 근로청소년은 건강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 우대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평가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근로청소년들이 왜 일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 밝힘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러한 근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에 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나 진학문제이므로 이들에게 특화된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률이 높은 편이라는 결과로 인하여 근로청소년에 대해 이제까지 소홀했던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근로청소년의 감소와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로 인하여 근로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감소함으로써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가진 문제와 문제행동 경험률은 더 이상 이들을 청소년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셋째, 건강한 직장체험의 기회가 인터넷 중독과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을 통해 사회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난 어느 근로청소년의 사례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이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연구 방법에는 면담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에는 그것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청소년과 기관실무자의 면담결과가 연구결과에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보다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청소년들은 특히 중졸이하인 경우 사회

적 편견과 학력차별로 겪는 애로사항이 타학력 근로청소년보다 높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편견과 학력차별은 근로청소년에게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아개념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근로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근로청소년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동료나 직장상사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근로청소년의 직장경험을 부정적으로 만들 것이고 이것은 다시 근로청소년 자신의 자아, 직무만족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장경험이 근로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여러 유의한 영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 북한이탈 청소년 및 귀국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가. 연구목적

북한이탈 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국내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점증하고 있다. 이들의 적응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및 귀국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원만한 국내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 대책을 개발하고, 사회통합형 청소년대책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2003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적응조사 중에서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계된 항목을 토대로 남한사회적응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나) 면접

다. 연구결과

가) 북한이탈 청소년

(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적응과 문제행동 유형

북한이탈 청소년은 학업능력 부진, 교우관계, 폭력, 성문제, 불안감, 과도한 음주와 흡연과 같은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

(나)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의 원인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체제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족하며, 북한이탈 청소년이 갖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불안정한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가족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응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북한 교육체제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생활경험의 영향이며 남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다.

(다)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 대책

체계적인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 조사, 정기반 확충 및 민간참여를 위한 지원,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 제도권 교육에 대한 보충체계 확립,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전문인력의 양성, 직업교육 유도 등이 있다.

나) 귀국청소년

(가) 귀국청소년의 특징과 문제

귀국청소년은 외국생활의 경험을 통해 다문화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나이, 성별, 경험한 문화권, 부모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지니기에 학업문제, 교육관계 등 학교생활지도 문제와 더불어 일시적인 역문화 충격 현상도 겪는다.

귀국청소년에 대하여 외국과 한국사회의 교육현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내적 심리상태의 형성이라든지, 적응을 위한 타협과정의 문제 등 구체적인 경험에 주목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나) 귀국청소년 적응을 위한 정책대안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 만들기,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력자원 교육지원, 출국 전 교육과 귀국 준비과정의 내실화, 적응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의 확보,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교사교육, 학교경계를 넘어 만날 수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 지원, 귀국 청소년 부모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있다.

라. 평가

탈북·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연구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탈북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이들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마련에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사회의 적응이라는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특성이 상이한 북한이탈 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을 하나의 과제로 다룬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물론 이 두 집단을 달리 연구하기는 했지만 각각의 청소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립

적인 연구였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접근에 제한적인 탈북청소년에 관한 이해를 높여 이들이 가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마련에 도움이 되었다. 이제까지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들이 국내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알려졌을 뿐이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와 고민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용이해졌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이 가진 부적응 유형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인 학업능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식기반사회에서도 학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업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이것이 어렵다면 다양한 지원이 이들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이 가지는 문제 중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된 경로는 다르지만, 폭력, 성문제,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귀국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경험한 것이 다양하고 이들이 가진 문제도 다양하므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융통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귀국청소년의 경우 유학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므로 이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가.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행되었던 청소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여자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문제행동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와 대책에 대한 선행연구와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교육, 사법, 사회적 지원분야)와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전문가 자문과 전문가 워크숍

다. 연구결과

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써 가출과 성매매의 심각성이 제시되었다. 현장전문가가 제안한 개선방안이 교육 분야(예, 성교육과 성문제 예방대책으

로써 여성 정체성 형성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실시), 사법 분야(예, 유해업소와 업주 및 성매매 가해성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방안으로써 공정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 단속 횟수와 권한 확대, 지속적인 단속 등), 사회적 지원 분야(예, 가출청소년 쉼터와 관련하여 쉼터 증설, 쉼터의 시설 개선, 접근이 용이한 위치선정 등)별로 제시되었다.

나)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경험실태를 보면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사법처리경력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위비행의 경험은 10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자청소년들이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비행은 지위비행 중에서는 가출, 음주, 흡연이고, 폭력비행 중에서는 폭행, 그리고 성비행 중에서는 성관계, 성매매, 성추행이다. 여자청소년들이 가진 문제점이나 고민으로는 가족 간 불화나 소원함 등 본인의 가정에 관한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걱정, 취업과 학업, 이성친구를 포함한 친구문제이며,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이 가정에 바라는 점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체벌보다는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 화목한 가정, 충분한 용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에 바라는 점은 학생들에 대해 이해와 관심으로 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체벌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사회에 바라는 점은,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과 공간 마련, 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원과 인권존중, 남녀차별이 없어지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됨, 법제정을 통한 엄격한 단속과 제재, 문제행동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 예방대책

교육적 대책으로는 여학생 생활지도 대책(여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지도, 교사-학생간의 신뢰 회복 등)과 여자청소년 성교육대책(대상자

중심의 차별적인 성교육, 학교성교육의 교과과정화 및 담당교사 지정 등)이 있고, 사법적 대책으로는 성보호 관련법의 개선,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사법처우 대책, 사회적 지원대책으로는 여자청소년 보호시설의 활성화 대책, 성매매 여자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운영 대책이 있다.

라. 평가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과 이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가출과 성매매가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출의 경우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성매매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대책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교육과 쉼터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여자청소년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는 일반청소년과 대부분 비슷하나 여자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지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고, 남자와 차별하고 여자라고 해서 무시를 당했고, 문제행동을 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보다 더 많은 질책을 받는 등 여자이기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자신들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문제행동을 저질렀을 때, 가정, 학교, 사회에서 무시 내지는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이들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조건 나무라거나 체벌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주고 잘못된 것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상담을 받을 때 부드럽게 대하고 야단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것으로도 잘 나타난다.

(6)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가. 연구목적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은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연구방법

문헌조사

다. 연구결과

가) 미국

청소년복지정책만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는 없지만 보건 및 인간서비스성에서 주로 청소년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관련법으로는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법, 가출청소년 및 집 없는 청소년법, 청소년비행예방법 등이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안전하고 약물 없는 학교 프로그램(Safe

and Drug-Free Schools Program), 틴 프로그래머시 프로젝트(Teen Pregnancy Project), 국립가출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 등이 있다.

나) 일본

일본에서는 청소년육성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간주하면서 청소년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내각부를 포함한 15개 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청소년육성회의가 있다.

청소년문제 예방 및 대책 관련법으로는 생활보호, 의료보장, 고용보장, 환경보장, 기타 분야의 총35개 법이 있으며, 청소년문제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내각부의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가정, 학교, 직장, 사회 환경의 정비, 국제교류에 대한 시책, 소년의 비행방지와 비행청소년의 대응이 있다.

다) 독일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국에서 연방아동청소년플랜을 근간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으로는 아동·청소년서비스법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규정 뿐 아니라 빈곤청소년·일탈청소년 등 모든 영역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집약적·사회 교육적 개별보호프로젝트(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Projekt), 버스프로젝트(Bus Projekt), 모빙프로젝트(Mobbing Projekt)가 있다.

라)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공공행정부의 청소년부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자문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없으나 사회서비스법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십대 미혼모 방지를 위해 가정과 사회가 피임법에 주안을 둔 철저한 성교육을 하고 있다.

마) 핀란드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는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자치정부내의 청소년 사무국에서 주로 관장한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으로는 ‘신청소년사업법(The New Youth Work)’이 있는데 위 법규정은 국가에서 청소년의 생활상태와 조건들을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관심과 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EELIKA 훈련 프로그램과 청소년실업, 소외,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위상정립 및 사회참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NUOASTRA가 있다.

바) 덴마크

덴마크에는 청소년관련사항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고, 교육, 고용, 주거와 관련된 청소년 업무는 이와 관련된 각각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없고,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에 초점을 맞춘 성교육이 추가 된다.

사) 영국

영국에는 실질적인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은 없고 교육·고용성의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차관의회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으로는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형사 재판법과 아동복지법이 있고, 교육법과 같은 일반청소년을 위한 법이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보호관찰 프로그램인 피.에이.씨.티(PACT : Probation Action Challenge and Training)가 있고, 휠 프로젝트(WHEEL Project)가 있는데 이것은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청소년들의 자동차관련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아)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체육부의 청소년국에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대책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체육부의 설립근거가 되는 1977년 4월 26일 법령이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데피죄느(DeFi jeunes), 방학 및 여가센터 등이 있다.

자) 호주

호주의 경우 정부차원의 청소년관련 행정조직보다는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청소년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ACYS(Australian Clearinghouse for Youth Studies), ATM(Anglicare Tasmania & Miscellaneous), YAPA(Youth Action Policy Association), YNOT(Youth Network of Tasmania)등이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중심센터의 조사,

Homelessness 프로그램, 약과 알코올 사용·남용에 관한 프로그램,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차) 싱가포르

청소년관련 조직으로는 YMCA, Counseling & Care Centre가 있고,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Student Care Services, Diploma Program, Certificate Program이 있다.

라. 평가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연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이나 일본의 청소년 문제대책뿐만 아니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여 각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이 다른 이유를 이해할 만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왜 덴마크에는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도 성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각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이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행동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이 연구의 활용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2003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 일탈 및 범죄청소년, 탈북·귀국청소년,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하여 각각 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에 따른 보다 정확한 예방과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 일탈 및 범죄청소년, 탈북·귀국청소년,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에게는 각기 다른 문제행동 유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도 문제행동 유형이나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은 특정 청소년집단에게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필요한 예방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Ⅱ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Ⅱ는 다양한 청소년 집단에 초점을 맞춘 2003년의 연구들과는 달리 청소년에게 심각한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각각의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흡연중독, 향정신성 유해약물 중독, 온라인게임 중독이 포함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행동에 대한 각 국의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소개가 포함되어 있다.

(1)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가. 연구목적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가 반복되는 트래픽현상을 보일 확률이 다른 문제행동보다 높아 사회의 관심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에서는 소홀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성매매 실태와 상습화 과정,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도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실태, 대책에 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성매매 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형태의 조사와 국내외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과 연구방법과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다. 연구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이들은 가출 후 잠자리나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성매매 방법은 티켓다방이나 인터넷 채팅이 반반이었다. 이외에도 이들의 성매매와 관련된 실태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인식, 성매매 상습화 과정, 성매매 관련 요인,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책도 제시되었으며, 청소년 성매매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성교육을 통한 예방 프로그램, 가치관 교육을 통한 예방 프로그램, 집단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포함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진로·직업교육의 확대 등을 포함한 8가지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8개 정책은 다시 25개 세부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라. 평가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적절했다. 이 청소년 성매매실태의 경우 설문지를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의 파악은 조사대상인 수도 한정되어 있고 실태파악에도 한계가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면접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성매매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성교육을 통한 예방 프로그램과 가치관 교육을 통한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에서 청소년 성상담과 성교육을 오래 동안 담당한 현장전문가가 개발한 것이다. 이것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고 성매매 청소년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를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소개된 것은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형태라기보다는 미술치료와 음악치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 프로그램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한 정도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남는다.

넷째,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 제안은 청소년 성매매 상습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이 용이할 것이다.

(2) 여성청소년의 흡연실태와 흡연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여성청소년의 흡연을 증가, 여성 청소년을 위한 현장 활용 프로그램의 부재 등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여학생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여학생의 흡연환경과 관련한 기제를 밝혀내며 여학생의 흡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성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방법

가) 여성청소년의 흡연실태 파악 : 선행연구 검토, 질문지 조사 자료의 성별분석,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기존 프로그램 분석, 검수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 연구결과

설문자료와 면접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흡연관련 실태가 발견되었다.

첫째,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에 비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흡연에 대한 태도는 남성 청소년에 비해 수용적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남녀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다.

둘째, 면접 자료를 통해 흡연의 원인과 과정, 담배비용 조달, 담배구입, 흡연 장소, 흡연관련 건강정보의 내용과 교육, 학교와 금연학교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대처, 금연시도와 실패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셋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의 이론적 틀 검토,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분

석, 설문자료와 면접 자료로부터의 시사점, 전문가 자문회의,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검수의 과정을 통하여 여성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라. 평가

여성청소년의 흡연실태와 흡연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기존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경제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최근에 실시된 연구로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연구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그 시간적 및 경제적 여유분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의 이론적 틀 검토,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분석, 설문자료와 면접 자료로부터의 시사점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검수의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각각의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프로그램 개발에 잘 반영하였다. 여성 청소년의 지속적 흡연에는 스트레스, 우울증세, 몸무게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여성 흡연 청소년은 남성 흡연 청소년에 비해 흡연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교정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으로 교육대상에 흡연 청소년만이 아니라 비흡연 청소년도 포함시켜 흡연예방의 의미를 부각시킨 것도 예방과 치료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흡연 등을 포함하는 문제행동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들을 분리시켜야 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통합이 가능하다.

(3) 청소년의 향정신성 유해약물 중독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연구

가. 연구목적

청소년의 향정신성 유해약물중독은 청소년의 비행행위와 연관이 있고 상습적인 성인마약중독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관련 담당자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지침, 국내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특성 분석, 효과성이 입증된 외국의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분석, 국내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 국내외 프로그램의 비교 분석, 국내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 제시, 향후 국내 프로그램의 모형 제시 등으로 이루어졌다.

다. 연구결과

가) 청소년 약물남용의 현황

일반집단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그 사용을 규제하는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용을 하지 않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고 법적인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경우, 10%이상이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부적절한 약물의 남용은 불법약물과 마찬가지로 강한 중독을 유발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해를 끼치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수집단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불법약물의 남용비율이 높으며, 약물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학생은 무경험 학생에 비해 가출경험, 사회적 지원의 부족, 이성친구, 학교와 가정에 불만족하는 등의 특성을 보였다.

나) 효과적인 외국 프로그램 고찰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케어링 스쿨 지역사회 프로그램(Caring School Community Program), 프로젝트 ALERT(Project ALERT), 가족강화프로그램(The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약물치료 자조모임이나 치료공동체 등이 있다.

다) 국내 프로그램 현황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년에 1-2시간 실시하는 약물교육, 성남, 수서, 하안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복지관, 보건기관, 상담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라) 국내외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국내외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결과, 외국의 프로그램은 학교 전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국내는 정규교과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고 단기적으로만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의 차이점이 있었다.

마) 국내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

약물예방의 일반적, 선택적, 지시적 프로그램,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약물예방의 일반적 프로그램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차별화된 내용을 장기간에 걸쳐 교육하여야 하고 고등학생 대상의 일반적 프로그램은 고위험 학생 대상의 지시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3가지 제안을 했다.

바) 향후 국내 프로그램의 모형 제시

향후 국내 프로그램 모형을 약물예방 일반적, 선택적, 지시적 프로그램, 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별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약물예방 선택적 프로그램의 경우 약물중독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족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했다.

라. 평가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연구가 수행되었던 청소년의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다루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외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아직까지 청소년의 향정신성 유해약물 사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약물남용의 현황, 외국의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국내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모형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이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현장지도자, 정책입안자 등에게 많은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했다.

둘째,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들이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셋째, 국내외 청소년의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하며 효과적인 내용들을 발췌하여 제시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연구의 결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헌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면 프로그램의 개요나 일부만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4) 청소년 온라인게임 중독실태와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연구

가. 연구목적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에서 온라인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게임 사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온라인게임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게임중독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인터넷 중독 또는 온라인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나) 조사연구

985명(학생 535명, 학부모 45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항, 온라인게임사용과 관련된 문항,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생활 만족도, 부모의 양육태도,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을 질문했다.

다) 프로그램 개발

다. 연구결과

게임중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청소년은 5%정도였고 이들은 일반사용자보다 롤플레이팅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했다. 게임중독자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었으며, 게임중독자의 경우 온라인게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수면부족이었다. 그리고 1회기 당 50분 내외로 구성된 6회기의 게임중독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라. 평가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볼 때 게임중독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외에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의 정도를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했다. 이것은 게임중독 청소년의 분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게 해주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초점도 명확하게 해준다고 본다.

둘째, 연구결과, 게임중독 청소년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게임중독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의 매력으로 다양한 사람과의 만

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일반 사용자는 친구들과 놀 수 있다거나 판타지 세계를 경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것으로 게임중독 청소년과 일반 사용자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근거해서 온라인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온라인게임 대처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현 초등학교 교사에게 검수를 받은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흥미에 맞게 다양한 게임을 프로그램에 삽입한 것도 프로그램 활용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있어서 6명의 실험자 중에서 3명은 효과가 있었지만 2명은 역효과가 있었고 다른 1명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결과로 나타나 예상과 달랐고, 이론적 및 실제적 근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성급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5)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가. 연구목적

청소년 문제행동 중에서 중독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과 동시에 현재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및 치료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2004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II에서 부족한 부분인 외국의 우수한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보탬이 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나. 연구방법

외국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기관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관련 문헌이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영역의 이론 부문 전문가와 현장의 지도자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다. 연구결과

가) 향정신성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미국의 Carron 재단(Carron Foundation)의 약물중독 청소년 프로그램, 일본의 약물남용 방지 교실, 호주의 청소년 약물남용 서비스(Youth Substance Abuse Service) 등 9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나) 흡연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캐나다의 Health Canada-Quit 4 Life 프로그램, 영국의 Roy Castle Lung Cancer Foundation, 미국의 흡연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등 5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다) 성매매 습성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미국의 뉴욕시티 청소년 성착취 반대 협동 프로젝트(New York City Task For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Young People), 중국 청소년의 성문제 원인 및 대책, 독일의 청소년 매매춘 실태 및 대책 등 11개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라)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영국의 Kid Smart, 캐나다의 AADAC(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Your Best Bet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마)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했다.

라. 평가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향정신성 약물중독, 흡연중독, 성매매 습성,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8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에는 청소년 성매매와 약물중독, 흡연,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한 몇 개의 단체가 모여서 함께 협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거시적, 포괄적, 장기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도 잘 적용 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시사점들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이러한 시사점을 근거로 향정신성 약물중독, 흡연중독, 성매매 습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에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아쉬운 것은 외국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과 관련된 부분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2004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마련에 도움이 된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둘째, 2004년에 선택한 4개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 문제행동 중에서도 현재 심각하여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대처가 부족한 것이어서 현장전문가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셋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상습화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의 프로그램 소개와 그에 대한 시사점 제시는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나 종합대책 마련에 도움이 된다.

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Ⅲ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Ⅲ 연구에서는 2003년 대상별, 2004년 문제행동 유형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을 연구한데 이어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초점을 맞춰 유해환경 요인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유해환경요인의 확산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학교차원의 문제행동완화모형을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개선대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1)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가. 연구목적

인간의 발달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의 주변 환경은 청소년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가와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해업소의 수는 매년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유해업소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해요인들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과 유해성, 유해업소 출입과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관련문헌을 연구하였다.

나) 설문조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청소년 1,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실태, 유해요인의 접촉 확산 경로에 대해 분석하고, 유해요인들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검토하였다.

다) 심층면접

심층면접을 통하여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전문가에게 유해업소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설문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다. 연구결과

가) 유해요인 접촉실태 분석

유해업소가 가진 유해성에 따라 다른 차원의 대책을 구분, 잠재적 유해업소와 실제적 유해업소의 구분,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접촉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나) 유해요인의 접촉 및 확산에 대한 분석

업소와 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가정과 또래집단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다) 유해요인과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이용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유해업소 분류,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출입 분류, 유해업소별 청소년출입관리 체계 및 청소년대책 제시 등이 있다.

라. 평가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그동안 청소년 유해업소라고만 알려져 있고 왜 그러한 업소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그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예를 들어, 심층면접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을 유해물질 등 다섯 가지로 도출했고, 경로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해요인 중에서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이용을 밝혔다.

둘째, 유해성의 강도가 업소마다 다르므로 유해업소가 가진 유해성에 따라 다른 차원의 대책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술집은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 경험 간의 상관계수가 .544인 반면 도서대여점은 .143이다. 이 두 업소에 대해 동일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유해업소 분류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유해요인은 있지만 간접적 유해요인은 없는 업소 유형을 유해업소 유형 2로 제시했다. 이러한 분류는 이제까지 유해업소 유형 2를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간주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이들 업소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어 앞으로의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대책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넷째, 유해업소별 청소년출입관리 체계 및 청소년대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유해업소별로 각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제까지 그 예가 없었던 것으로 정책실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업소에 대한 개선대책의 경우 잠재적 유해업소와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해 각기 다른 개선대책을 제시했고, 청소년에 대한 개선대책의 경우에도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에 대해 각기 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2)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 대책 연구

가. 연구목적

한국사회 전반의 산업화, 정보화는 정보의 확산과 사회전반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 대중화에는 순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역기능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역기능 중에서 심각한 것은 인터넷이 청소년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 모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방법

가)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영역별 문제행동 관련 유해요인을 추출하여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된 경로 파악하였다.

나) 설문조사

전국의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8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문제행동과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 접촉을 조사하였다.

다. 연구결과

가정 내에서의 인터넷과 관련한 부모의 감독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호·감독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파일을 다운받는 행동, 인터넷 활용 과정에서 욕이나 폭언을 하는 행동처럼 이제까지 연구들을 통해 그 문제성이 지적된 행동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해 지역사회 사이트의 문제나 과잉충동구매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소로는 지역사회관련변수, 가족관련 보호요소로는 가족응집성, 그리고 또래관련 보호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정책은 인터넷 유해매체 개선대책과 개인·환경적 보호요소 개선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라. 평가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을 온라인게임 관련 유해요인, 온라인 채팅 관련 유해요인, P2P 서비스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유해요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련 유해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그에 대한 선행연구도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에서처럼 유해요인을 도출한 적은 없었다. 위와 같이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소의 탐색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자아존중감, 교사 지지도 등의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은 강조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지역사회관련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 변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해준다. 또한 대책마련의 방향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셋째, 정책제언이 인터넷 유해매체와 개인·환경적 보호요소 개선대책으로 나뉘어 제시되었다. 이것은 인터넷 문제행동의 감소에 이 두 가지가 중요

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개선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유해요인 접촉경험과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보호요인의 역할에 대한 보다 충분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3)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가. 연구목적

청소년 유해행위는 우리 사회의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착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개념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행위가 인해 청소년들의 성장에 방해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행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사례, 보호요인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조사연구

1,129명의 특수집단(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일반집단(여자실업고) 청소년의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 성관련 위험행동, 보호요인을 조사하였다.

다) 사례연구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가출과 성문제행동, 가출 후 생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 연구결과

조사연구 결과로는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유흥업소 출입 시 업주들이 ‘대부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은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5.6% 실업계 여고생의 경우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결과로는 이들 대부분이 해체가정과 재혼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혹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결국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한 이 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성관련 문제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요인의 강화와 위험요인의 제거와 같은 개인적 측면과 또래문화,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적 측면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라. 평가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청소년 유해행위는 청소년이 주체가 아닌 성인의 행위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로 인해 청소년이 받은 영향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현명하게 풀어갔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행위가 주로 성관련 문제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행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연구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둘째, 성문제 행동은 조사연구와 같은 양적 연구로는 심층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한계점을 성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해서 보완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문제행동 예방을 위험요인의 제거와 보호요인의 강화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한 것도 성문제행동의 실제적인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단지 제시된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모형에는 가정문화 바로 세우기나 즐거운 학교 만들기 캠페인 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가. 연구목적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의하고 총망라하여 일관성 있는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05년 3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로 격상되었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제반 법·제도는 이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재정비되지 못하여 오히려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보호업무 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환경 제재규정들의 구성요건 및 관련 처벌법규들을 살펴보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법령분석

다. 연구결과

가)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고찰

청소년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행위를 중심으로 법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보다 중한 형에 처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순서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나)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분석

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3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전 국가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고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여건상 청소년기본법 개정 에 따른 법제 정비에 미흡함이 있을 수 있어 청소년위원회에 적절한 권한 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검증했다.

다)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추진정책의 개선방안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법령과 관련하여 규제법규의 유기적 통합, 처벌규 정 적용의 우선원칙 확립 등과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와 관련하여 집행주무부처에 적절한 권한으로서 ‘부령발포권’ 또는 ‘지방행정의 장에 대 한 지휘·감독권’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라. 평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연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목적 자체로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2005년 3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수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책임이 늘어난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법과 제도는 이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재정비되지 못하여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보호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업무수행 시 지장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했다.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행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청소년보호법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추진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법령과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제시된 개선방안들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활동에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들이어서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본다.

(5)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사례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등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다. 연구결과

미국의 경우, 이웃 정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Neighborhood Justice: A Community Response to Juvenile Crime) 8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 약물, 폭력, 무단결석, 안전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개별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주로 국가기관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대책,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대책, 관련단체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프로그램, 그 외의 민간단체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대책에 의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에서 Young People's Centres, There4me.com, Assessing risk and helping after abuse, Supporting parents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청소년위원회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 평가

이 연구에서 소개된 청소년 유해환경 사례들을 보면 각 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른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정책, 프로그램 등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 사례들은 우리의 청소년 유해환경 대책마련에 유익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각 국의 개선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잘 활용하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2005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에 유해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2005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의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에 제시된 유해환경 정의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요인을 밝혀 앞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마련에 기틀을 마련했다. 셋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금까지 지장을 초래했던 법과 제도 재정비의 필요성을 부각 시킴으로써 법과 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 외국사례 분석

1) 독일

(1) 서설

청소년 문제행동을 청소년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탈행위 내지 우범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독일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양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예방으로 구분해 보면,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 예방은 청소년보호(Jugendschutz)라는 개념 속에서 각종 법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 금지하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인형법의 특칙에 해당하는 소년법원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까지도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독일의 소년법원법은 오로지 범죄소년만을 적용

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독일의 소년법원법이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범죄소년에 오로지 경찰, 검찰, 소년법원 등과 같은 형사사법기관만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범주는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독일의 학문과 정책의 관념에 따를 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기관과 형사사법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이미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법원법에 따른 제재부과 이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에 따른 교육원조의 제공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전적 예방대책으로서 청소년보호이며, 다른 하나는 사후적 예방대책으로서 소년법원법의 개입이다. 이 점에서 여기서는 독일의 청소년 문제행동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주무관청과 관할권에 관하여 소개하고(아래의 (2)),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제(3)와 청소년범죄에 관한 법제(4)에 관하여 개관해 보고, 독일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정책의 특성(5)을 검토해볼 것이다.

(2)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기관

가. 청소년국

가) 청소년원조를 위한 공공기관

청소년원조(Jugendhilfe)란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이 청소년의 발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적 급부와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의 활동영역은 사회법전 제8권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에

서 청소년원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원조업무는 자치단체(Kommune)가 담당한다. 독일에서 청소년원조업무는 주의 관할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는 독자적인 청소년국(Jugendamt)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청소년원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국 이외에 주소년국(Landesjugendamt)도 있다. 주소년국은 당해 시나 군 지역에서의 소년원조업무를 담당하는 것임에 반하여, 주소년국은 초지역적인 차원에서 소년원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점에서 청소년국과 주소년국의 차이점은 지역적(örtlich)인지 초지역적(überörtlich)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또한 몇몇의 주에서는 주소년국이 청소년원조와 관련한 자문기능, 상담기능, 교육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국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즉, 시 또는 군)의 청소년 및 사회부(Fachbereich Jugend und Soziales)에 소속되어 있으며, 청소년원조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적 소년보호를 실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사회법전 제8권 제14조). 여기서 교육적 소년보호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나 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청소년국 공무원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예: 정보제공, 캠페인, 학교나 유아원 등에서 부모와의 협력 등)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집행에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청소년국은 청소년원조위원회와 청소년국행정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청소년원조위원회는 시 또는 군에서 의결권을 가진 위원과 승인된 사설소년원조기관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청소년국행정은 시 또는 군 행정의 일부이다. 청소년원조위원회는 자문을 행하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한편, 청소년국의 내부 행정조직은 각각의 시 또는 군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명칭도 시청소년국, 군청소년국, 청소년및운동청, 가정청소년국 등으로 달리 나타난다. 참고로 바이에른 주의 청소년원조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1> 바이에른주 청소년원조 공공기관

	상급주관청	초지역적 청소년원조기관	지역적 청소년원조기관
기관 명칭	바이에른 주 노동, 사회, 가정 및 여성부 (Bay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und Frauen)	바이에른 주 주청소년국 (Bayerisches Landesjugendamt)	청소년국 (Jugendämter)
주소	Winzerstr. 9, 80797 München	Richelstr. 11, 80634 München	(96개 지역에 분포)

나) 청소년원조를 위한 사설기관

한편, 독일의 청소년원조기관에는 공공기관 이외에 각종 청소년단체, 복지단체 등과 같은 사설기관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사회법전 제8권 제3조는 청소년원조를 위한 급부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설기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설기관의 자격은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인적 단체이면 족하다. 그러나 모든 사설기관이 청소년원조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설기관이 청소년원조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동안 청소년원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인적 단체가 현재 청소년원조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문성이나 인적 구성의 면에서 청소년원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본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청소년원조를 위한 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교회, 공법상의 종교공동체 및 연방차원에서 결성된 사설복지단체는 승인된 청소년원조사설단체로 본다(사회법전 제8권 제75조). 독일에서 청소년원조와 관련하여 사설기관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원조와 관련을 가지는 기관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원조의 내용, 방법론 및 업무형식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사회법전 제8권 제3조 제1항 참조).

다) 공공기관과 사설기관과의 관계

독일에서 청소년원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예: 청소년국)과 사설기관(청소년복지단체)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양자를 보충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보충적인 관계란, 청소년원조를 위한 공공기관은 청소년과 그 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사설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여기서 공공기관은 사설기관이 청소년원조와 관련하여 추구하는 목표와 그 실행 및 사설기관이 그 조직구조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사회법전 제8권 제4조 참조).

나. 자치단체의 질서관청의 기능

자치단체는 유흥업소 등에서 소년보호법규정의 준수를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질서관청의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관청의 임무란 일상적인 예방단속이외에 규정위반에 대한 신고에 기초한 단속도 포함한다. 이러한 단속과정에 종종 경찰도 참가하게 되는데, 경찰의 개입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예: 디스코장에서 출입가능연령의 비준수)의 혐의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형법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혐의(예: 마약류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개입하게 된다. 청소년노동보호의 영역에서는 영업감독청 내지 노동보호청이 단속의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관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다. 경찰 및 검찰

독일에서 경찰과 검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경찰과 검찰의 사후개입적 성격은 성인범죄에 대해서뿐

만 아니라 청소년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소년보호의 영역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형사소추(즉, 사후수사 및 기소)의 영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한다.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의 업무를 예를 들어보면,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력을 묘사하거나, 포르노그래피를 표현하는 매체와 기타 청소년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체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수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총장 산하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두고 있다.

라. 유해매체규제기구

과거 독일에서 유해한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는 매우 분화된 자기규제체계를 발전시켰다. 유해매체규제를 위한 개별적인 제도들은 규제 대상, 규제에 대한 책임 및 국가의 영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의 형식과 규제의 과정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독일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과 청소년매체보호-국가계약(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이라는 규범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규범을 통하여 유해매체규제제도의 작용이 보다 투명화 되고, 비교가능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으로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매체규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청소년매체보호공동위원회(KJM: Gemeinsame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규제기구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기구로는 연방검찰총장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문서 또는 매체내용의 척결을 위한 중앙수사처(Zentralstelle zur Bekämpf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oder Medieninhalte), 인터넷내용을 규제할 임무를 수행하는 개별적인 경찰관서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사청(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이 있다. 나아가 청소년국 등과 같은 청소년관청도 유해매체를 규제할 임무를 수행한

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으로는 사설방송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방송국(Landesmedienanstalten)이 있다. 공법상 방송사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관(Jugendschutzbeauftragte)에 의한 자기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마. 아동 및 청소년보호 단체⁴⁾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이후에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많이 설립되었다. 특히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에 소년보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종교적 또는 초종파적인 사업체 내지 사업공동체가 많이 설립되었다. 이들 사업체 내지 사업공동체는 매우 폭넓은 기관회원을 두고 있었다. 이 기관회원의 예를 들면 청소년원조와 청소년복지 관련 사설단체에서부터 마약류척결을 위한 전문협회나 노동조합, 교육 분야의 직업단체, 자치단체의 대표단체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오늘날 독일에서 아동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단체로는 Mecklenburg-Vorpommern주, Hessen주, Rheinland-Pfalz주와 Saarland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 및 청소년원조를 위한 주사업공동체(Landesarbeitsgemeinschaft)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주사업공동체는 사설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다. 나아가 Nordrhein-Wesfalen주에서는 기독교사업체와 주개신교사업공동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Baden-Württemberg주에는 개신교 사업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다.

아동 및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사업공동체들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회의 개최 및 홍보계몽활동도 매우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보호 사업공동체들은 아동 및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이한 업무영역들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단체에서부터 경찰관청과 주차원의 방송국들을 연결시켜서 상이한 업무영역들을 조정하기도 한다.

4) 상세한 자료는 www.jugendschutz.de 참조.

(3) 청소년보호법제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일반 형법⁵⁾에서는 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로 나타나는 범죄를 규정해 두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아동의 복지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근로보호법도 입법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제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5) 특별히 중한 사회유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을 통한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을 통한 청소년보호는 청소년이 피해자로 되는 범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형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성범죄의 분야(형법 제174조 내지 제18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범죄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지도개념은 '성적 자기결정'이다. 형법 제174조는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행위(sexuelle Handlung)란 중대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감지할 수 있는 성행위를 말하며, 예컨대 청소년과의 동침, 청소년에 대하여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 대체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형법 제174조에서는 성적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상세한 개념정의를 해 두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보호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란 교육, 직업교육 또는 보호와 관련하여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자를 말한다. 행위자는 이러한 종속성을 협박이나 회유를 통하여 이용하게 된다. 형법 제176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80조는 예컨대 성매매와 같은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성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형법 제182조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형법 제184e조도 청소년보호기능을 수행한다. 성을 파는 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머무는 장소에서 성매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컨대 학교나 청소년시설과 직접적인 인근지역에서는 성매매가 금지된다. 형법은 성범죄를 통한 청소년보호 이외에도 제184조를 통하여 음란문서의 반포를 금지시키고 있다. 여기서 음란문서란 인간을 성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시키거나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관련성과 동떨어지도록 성행위를 묘사하는 정도의 문서이면 족하다. 형법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정은 사회적 법익을 가진 범죄구성요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범죄구성요건으로는 민족선동죄(형법 제130조)와 폭력묘사죄(형법 제131조)이다. 이들 범죄는 오늘날 음악CD나 인터넷 등과 같은 현대적 매체를 통하여 민족의 일부에 대한 중요성을 부추기게 하고, 과격한 폭력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독일사회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폭력행사나 민족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86조와 제86a조는 선전수단의 반포와 위헌적 조직의 표식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규정하고 있다.

가지는 것은 사회법전 제8권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Kinder- und Jugendhilferecht),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과 청소년매체보호-국가계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법률의 주요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가.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은 독일 사회법전 제8권의 제목으로 편입된 법률로서 교육적 및 예방적 청소년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8권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발육을 증진시키고, 책임성과 공동체에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인격성을 교육받는데 있어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 예외적인 경우에 27세까지 - 18세 이후에도 현저한 교육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점에서 사회법전 제8권에 규정된 아동 및 청소년원조 관련규정들은 급부법(Leistungsgesetz)이며, 일차적으로 청소년과 부모의 교육을 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법전 제8권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원조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Detlev Baum/Bruno W. Nikles, 2001 : 105~124)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를 청소년원조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구체적인 청소년보호의 임무는 사회법전 제8권 제14조에 규정된 교육적 청소년보호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회법전 제8권 제14조에 의하면, 청소년과 교육권자에 대해서는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며(동조 제1항), 교육적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을 키우고, 청소년의 비판능력, 판단능력과 자기책임 및 동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동조 제2항 제1호). 다른 한편, 부모와 기타 교육권자에 대해서도 아

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다 잘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동조 제2항 제2호).

나. 청소년보호법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2003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법률로서, 일반 공중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연방차원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1953년도에 제정되어 1985년에 개정된 청소년유해문서반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과 1951년에 제정되어 1985년에 전면개정을 단행한 일반 공중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시키면서 그 동안 방송매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것이다.⁶⁾ 이 점에서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나 담배의 판매, 비디오매체 등의 대여, 컴퓨터게임물의 판매, 디스코텍의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한마디로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일반대중이 접할 수 있는 각종 매체물의 교부나 특정한 장소에의 출입을 청소년의 연령과 시간대에 따라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독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아동(Kinder)과 청소년(Jugendliche)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동이란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표 II-2〉 청소년보호법상 연령별 허용대상

내 용	14세 미만 아동	16세 미만 청소년	18세 미만 청소년
숙식업소에서의 체류	원칙적 금지, 단 교육권자와 동행할 경우 허용	원칙적 금지, 단 교육권자와 동행할 경우 허용	24시까지 허용
야간술집, 나이트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술집에서의 체류	금지	금지	금지
디스코장 출입	원칙적 금지, 단 교육권자와 동행할 경우 허용	원칙적 금지, 단 교육권자와 동행할 경우 허용	24시까지 허용
승인된 청소년원조기관이 주최하는 무도행사장 출입	22시까지 허용	24시까지 허용	24시까지 허용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임장 출입	금지	금지	금지
청소년유해 장소에서의 체류	금지	금지	금지
증류주의 교부 또는 음용	금지	금지	금지
기타 알코올음료(맥주, 와인 등)의 교부 또는 음용	금지	금지	허용
공개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금지	허용
영화관 출입(연령제한이 없는 경우)	20시까지 허용	22시까지 허용	24시까지 허용
전자매체(비디오, DVD 등)의 교부(연령제한이 없는 경우)	허용	허용	허용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게임과 동영상게임기구는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영화와 비디오 필름의 경우와 같이 판매 내지 교부가능연령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 컴퓨터게임과 동영상게임기구는 표시된 연령대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만 교부가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을 중대하게 위태롭게 하는 매체, 특히 폭력을 묘사하는 매체를 금지시키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허용의 요건도 보다 강화시켰다. 따라서 예컨대 배포금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연방청소년유해매체

심사청은 전쟁을 찬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비자연적이고 성을 강조하는 신체유지를 제시하는 음반, 비디오물 등의 매체(예: 서적, 비디오, CD, CD-ROM, DVD 등)를 교부, 판매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셋째,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사청(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의 관할권이 보다 확대되었다.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사청은 현재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매체들에 대하여 배포 내지 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은 배포금지 내지 판매금지의 절차도 새롭게 규정하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든 공급매체들을 가능한 한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사청의 목록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사청이 특정한 기관의 신고나 제안이 없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넷째,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담배제품을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물론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까지 담배자동판매기는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나아가 영화관에서 18시 이전까지는 담배와 술에 관한 광고를 방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위반한 경우에는 범죄로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어 최고 50,000 유로(한화 약65,000,000원)까지 질서위반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별 주의 관할관청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업주나 행사주최자에 대해서도 형벌이나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청소년매체보호를 위한 각주간의 국가계약

독일에서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 시점인 2003년 4월 1일에 또 다른 하나의 규범이 발효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청소년매체보호를 위한 각주간의

국가계약(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이었다. 이 계약은 기존의 라디오-국가계약상의 청소년보호규정과 매체서비스-국가계약상의 청소년보호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Bruno W. Nikles/Sigmar Roll/Dieter Sprürck/Klaus Umbach, 2005) 이 계약은 전자적 매체(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의 영역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동영상이나 서적, CD등과 같은 일정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등과 같은 전자적 매체의 경우에는 청소년매체보호를 위한 각주간의 국가계약이라는 규범이 적용된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매체보호를 위한 각주간의 국가계약의 2가지 규범을 통하여 연방과 주의 관할기관들이 통일적인 표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4) 청소년범죄에 관한 법제

독일에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형법과 소년법원법이 적용된다. 독일의 소년형사사법체계는 우리나라 소년법과 유사하게 가벌성의 요건은 일반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와 소년에 대한 제재는 소년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소년보호 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 반하여 독일의 소년법원법은 소년형사사건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 소년법원법이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형사절차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범죄소년에 부과되는 제재가 반드시 형사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소년법원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매우 다양한 법적 효과 내지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에는 우리나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유사한 법적 효과들도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우리나라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유사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독일에서 소년법원법의 적용대상 연령은 범죄행위당시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다(소년법원법 제1조 제2항). 범죄행위만을 소년법원법의 적용대상을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법의 적용대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독일의 소년법원법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를 준소년(Heranwachsende)라고 규정하여 이들을 소년법원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준소년에 대하여 소년법원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준소년이 행위당시에 정신적, 심리적 발육상태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준소년이라고 하여 반드시 소년법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당해 준소년의 발육상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독일의 소년법원법은 그 특징이 소년형사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단계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 다만, 성인형사절차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소년법원법에서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목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소년법원법 제2장 제2절에서는 훈육처분(Erziehungsmaßregel)을 소년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육처분에는 특정한 장소의 출입금지, 특정한 장소에의 체류 등과 같은 지시(Weisung), 사회법전 제8권에서 규정하는 교육원조(Hilfe zur Erziehung)의 두 종류가 있다. 또한 소년법원법 제2장 제3절은 범죄소년에 대한 징계수단(Zuchtmittel)을 명시하고 있는데, 징계수단에는 경고(Verwarnung), 부담사항의 부과(Auflage), 소년감금(Jugendarrest)의 세 종류가 있다. 이상에 언급한 내용은 성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범죄소년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제재수단들이다. 그 밖에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성인범죄자와 같이 소년형벌로서 자유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 등이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소년형벌은 범죄소년에 대한 훈육처분이나 징계수단만으로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기에 충분하기 못하며, 범죄소년의 책임도 매우 중하게 나타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원법 제17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소년에 대하여 형

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최저 6월 최장 5년이며, 당해 범죄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10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죄(Verbrechen)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년법관은 최장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소년법원법 제18조 제1항 참조).

(5) 독일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정책의 특성

독일의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는 소년복지 내지 소년보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이 자신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청소년국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에서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교육적 차원의 원조를 한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현실적인 범죄행위로 나온 경우에는 경찰, 소년검찰 및 소년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여 소년형사절차를 진행시킨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보면, 독일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업무영역에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상호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청소년정책의 집행실무와 관계법규를 상세하게 고찰해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담당하는 관련기관들 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 범죄소년에 대한 청소년원조의 가능성

독일의 경우 소년법원법이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관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원법에 따라서 범죄소년에 대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반드시 소년법원법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법전 제8권 제27조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당해 범죄가 청소년의 복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원조

(Erziehungshilfe)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원법에 따른 제재와 사회법전 제8권 제27조의 교육원조를 동시에 받거나 어느 하나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14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회법전 제8권 제27조에 따른 교육원조가 유일한 대응수단이 된다.(Bernd-Dieter Meier/Dieter Rössner/Heinz Schöch, 2003) 이 점에서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청소년원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범죄소년을 관할하는 소년법원법과 청소년 및 그 가정의 교육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원조법)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나. 범죄사건에 대한 청소년국의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건은 오로지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고, 청소년복지나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로써 청소년의 발육상태나 심리상태에 관한 정보가 형사사법기관에 전달되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곧 청소년에 대한 확실적 제재의 부과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이에 반해 독일의 소년형사사법절차에서는 청소년의 복지를 담당하는 청소년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하나의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청소년국의 담당공무원은 소년법원법에 따른 절차에서 일정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원조법) 제52조에 의하면, ‘청소년국은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제50조 제3항 제2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년법원법에 따른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소년법원법 제38조는 소년법원원조(Jugendgerichtshilfe)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소년의 인격성과 가정환경 등 양형관련 자료에 관한 조사를 의미한다.⁷⁾ 소년법원법 제38조에 의하면, ‘소년법원원조는 청소

7) 이 점에서 소년법원원조를 판결전조사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고, 청소년국의 이러

년국이 청소년원조협회(Vereinigungen für Jugendhilfe)와 협력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년법원법 제50조 제3항 제2문에 따라서 청소년국의 공무원은 범죄소년을 피고인으로 하는 공판절차에서 당해 범죄소년의 인격성이나 가정환경 등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청소년국은 범죄소년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법전 제8권에 따른 청소년원조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청소년국이 만약에 청소년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거나 당해 범죄소년에 대하여 이미 적합한 청소년원조급부가 개시된 경우에는 청소년국은 검사나 법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해 범죄소년에 대한 청소년원조급부가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나 소년법원에 의한 절차중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사나 법관으로 하여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소년법원원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국 공무원이나 사설기관의 종사자는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모든 단계마다 당해 청소년을 보조해야 한다(사회법전 제8권 제52조 제3항).

다. 지역사회단위의 예방정책

독일은 연방제국가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입법할 경우에는 그 입법의 관할권이 주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 주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방제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반드시 주에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만이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연방과 주간의 입법권경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주의 관할권 하에 놓인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비록 2003년 4월 1일자 청소년보호법이 연방차원에서 입법된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 주의 시행입법(Ausführungsgesetz)이 필요하다. 따

한 임무수행은 판결전조사기능의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라서 독일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의 수립은 개별 주의 법률과 시행규칙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개별 주의 입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는 청소년국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그 재량 또한 강하게 인정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각 시 또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국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과 동시에 당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범죄로 된 경우에도 소년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범죄소년의 성행과 가정환경 등을 조사할 관할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청소년원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청소년국)과 승인된 사설기관(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2) 일본

(1) 서설

최근 일본에서의 소년비행은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국민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급하고 적절한 형사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일본은 일찍이 전후 부흥기인 1946년 소년비행의 제1 정점을 맞이하고, 동경올림픽이 열린 1964년 제2 정점, 고등학교 진학률이 95%를 넘어서 고등교육진학률이 40%에 이르게 된 1983년에 제3 정점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이지메⁸⁾, 학교 부적응으로 생겨나는 부등교⁹⁾, 고등학교 중도퇴학 등이 주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지메의 증가와 13만이 넘는 부등교 학생과 전체 2%가 넘는 중도퇴학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 등이 다시 증가하면서 최근 소년비행이 제4 정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橫山實, 2002 : 69)

8) 문부과학성의 정의에 의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계속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학교 내외를 불문한다.

9)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30일 이상 등교를 하지 않거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병이나 경제적 이유는 제외된다.

이러한 일본의 소년비행 현상은 소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범으로서 검거·선도되는 소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칼등을 사용한 범죄 등 소년비행의 흉포화가 현저한 경향을 나타내고, 소년에 의한 각성제의 남용, 소위 원조교제라 불리는 성비행 등도 높은 수준에 있는 등 일본의 소년비행도 구미와 같이 폭력, 약물, 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에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2)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제도적 대책현황

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중앙행정체계의 정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청소년 담당행정도 교육, 복지, 보호, 사법 등 다수의 부처가 청소년행정을 분담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각 관계부처별 시책이 다양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상호조정과 시책의 종합적 추진이 요구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청소년 행정부처도 개편하였다.

즉 21세기를 맞이하여 청소년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국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때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는 내각총리대신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2001년 1월 ‘중앙성청개혁기본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총리부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담당하였던 청소년행정업무를 내각부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2003년 6월에는 각의 결정으로 내각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¹⁰⁾

10) 청소년육성추진본부의 구성원은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여, 내각관방장관, 내각부특명담당대신(청소년육성), 문부과학대신,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을 부분부장으로 하고, 그 밖의 모든 국무대신을 본부원으로 구성하고

를 설치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에서는 최근의 심각한 소년비행문제에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목적으로 관계성청간의 긴밀한 연락, 정보교환, 협의 등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추진본부에 ‘소년비행대책과장회의’¹¹⁾를 설치하여 청소년육성 관계부처의 연계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나. 중앙과 지방 관계기관 등의 연대에 의한 청소년지원체제 구축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심각화, 복잡화,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민의 연대에 의한 청소년지원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¹²⁾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정령지정시 청소년관계 주관과장회의’를 개최하여 내각부 및 관계부처의 시책·사업의 설명, 지방에서의 청소년행정의 소개, 국가·지방간 상호정보교환을 행하는 등 국가와 지방, 지방 상호간의 연계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가) 일상적인 연대의 추진

각 지역(주로 市町村)에서는 학교, 교육위원회, 경찰서, 소년지원센터,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보건소,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센터 등

있다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suisin/yhonbu/yhonbu.html> 참조.

11)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추진본부장 결정으로 설치된 ‘소년비행대책과장회의’는 내각부정책통관(공생사회정책담당)부참사관(청소년육성제2담당)을 의장으로 하여, 내각관방 내각참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년과장, 법무성 형사국 형사과장, 법무성 교정국 교육과장, 법무성 보호국 갱생보호진흥과장,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소년국 청소년과장, 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제2과장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 <http://www8.cao.go.jp/youth/suisin/kacho/20040910/setti.html> 참조.

12) 이에 대하여는 <http://www8.cao.go.jp/youth/suisin/kacho/20040910/0910.html> 참조.

의 관계기관과 학부모회(PTA), 경찰자원봉사자, 주임아동위원, 민생아동위원, 보호사 및 소년보호위원 등 지역의 인재를 구성원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역의 기관·인재를 활용한 조직적인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도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적인 필요성에 입각하여 설치한 교육시책중심의 네트워크, 시정촌 복지부국이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방지네트워크, 경찰이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비행대책중심네트워크 등 다양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지만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직적인 체제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나) 지원팀에 의한 연대

지원팀은 문제행동 등을 일으키는 개개 소년의 지도·지원과 관련하여 구성되는 팀을 말한다.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기능으로서는 종합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제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관계기관 간에 당해 소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공동목적 하에 각 관계기관의 권한에 기초한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지원팀은 1인의 소년에 대하여 하나의 팀이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성원에는 문제행동 소년이나 그 가정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이나 상황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기관·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원팀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각 관계기관 등이 갖고 있는 정보나 문제의식을 집약하여 공유한 위에 사안에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도·지원실시가 가능하게 되고, 복수의 관계기관 등이 같은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동이해에 기초하여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지도·지원이 필요하다.

다) 일상적인 연대への 피드백

하나의 기관에 의한 대응이 가능한 경우나 지원팀에 의한 지도·지원으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원팀은 일상적인 연대로 흡수되지만, 이 경우 지원팀의 활동으로 인한 성과는 소년비행대책과 관련된 일상적인 시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 청소년대책에서 청소년육성정책으로의 전환

이상과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 상황이 오늘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보편화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종래의 비행방지와 범죄를 행한 소년 등의 보호, 교정,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의 대응에 계속 중점을 두어야한다. 이는 청소년 전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 정비를 중시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전개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그동안 청소년을 육성보호정책의 대상 내지 객체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던 청소년대책에서 탈피하고 자기실현을 꾀하는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자율적 자기확립·자기실현을 중점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가 발표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2003.12.9. 추진본부결정)’도 모든 청소년이 사회와의 관계를 자각하면서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을 확립하고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 가정이나 학교는 물론 직장, 지역, 민간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이 각자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청소년행정의 기본방침으로 천명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 대책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심적인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의 전개라고 할 수 있는데, 2005년도에는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1) 알

기 쉬운 수업·즐거운 학교의 실현과 인성교육의 충실, 2) 학생지도체제의 강화를 위한 교원의 자질 능력 향상, 3) 교육상담 체제의 충실, 4) 학교·가정·지역·관계기관의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해 학교폭력의 조기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학교·가정·지역·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문부과학성 뿐 아니라 후생성,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일원화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학생 개개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 교육위원회, 관계기관으로 이루어진 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역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전국 47도도부현에 4개씩), 학생지도 종합연계 추진지역을 지정하여 학교, 가정, 지역주민, 기업, 민간단체, 관계기관이 일체가 되어 각 지역의 학생 지도에 대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3)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대책현황

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청소년육성조례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일본에서는 도도부현의 조례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즉 나가노(長野)현¹³⁾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도부현은 청소년건전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진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관련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전국의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중의 음행처벌조항을 법률로 입법화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각 조례상의 음행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그 처벌대상도 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13) 나가노현에도 텔레폰클럽(전화방)규제조례는 존재한다. 일본 도도부현의 청소년건전육성조례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園田寿, 解説兒童賣春・兒童ポルノ處罰法, 日本評論社, 1999, 78면 이하 참조.

일례로 동경도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1964.8.1. 제정, 2005.3.31. 개정)’는 청소년의 환경정비를 조장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 조례 제1조). 동 조례가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하여 성품속관련특수영업소에서接客업무에 종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동 조례 제15조의3), 청소년으로부터 사용한 속옷 등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15조의2), 보호자의 동의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야(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에 청소년과 외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15조의4).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 현저한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잔혹성을 조장하거나 자살 또는 범죄를 유발시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도서류¹⁴⁾의 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제8조 및 제9조), 잡지·비디오 등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자동판매기마다 관리자를 두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3조의3), 자동판매기업자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지 주위 100미터 구역 내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류 또는 특정 완구류를 수납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제13조의6).

나. 소년법의 일부개정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헌법개정에 의해 법률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소년법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초 일본의 사법당국은 소규모의 개정만 그치려 했지만, 미군정당국(GHQ)의 전면개정의 제안에 따라 미국의 전미보호관찰협회가 제안한 표준소년법원 법안을 모델로 한 소년법원 법안이 사법당국에 교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소년법

¹⁴⁾ 불건전도서류에는 서적, 잡지, 사진, 비디오테이프, DVD, 컴퓨터용 프로그램, CD-ROM 등이 포함된다.

의 전면개정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개정작업의 결과 1948년 7월 15일에 새로운 소년법이 공포되어, 194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것이 현행 일본의 소년법이다.

1949년부터 시행된 소년법에 대하여 꾸준히 법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제2차 소년법 등의 일부개정을 하는 법률안이 2000년 11월 국회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으며 개정 소년법은 200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소년법의 주요 내용은 형벌적용범위의 확대, 소년심판절차의 개선 등이다.

가) 형벌적용범위의 확대

개정 소년법에서는 형벌적용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인하하였다.¹⁵⁾ 형벌적용 연령의 인하는 14세·15세의 연소소년의 범죄사건도 검사에게 송치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형벌로서는 징역 또는 금고를 예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소년교도소의 처우체제에서 보면, 의무교육연령의 소년에게 충분한 교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교도작업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서, 형의 집행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거기서 개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 받은 소년을 16세에 달할 때까지 소년원에 수용해서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중대사건을 범한 소년에 대한 처분의 방법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즉, 16세 이상의 소년이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등 형사처분이외의 조치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에게 송치하고 있다. 결국, 개정 전의 규정(제

15)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도 논의되었으나 이는 보류되었다. 이는 소년법 적용연령을 낮추는 것은 선거권 적용연령 등을 포함하여 20세를 성인으로 하는 법제도 전체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第2版), 有斐閣, 2003, 240면.

20조)에서도 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16세 이상의 소년 사건에 대해서, 죄질 및 정황에 따라서 형벌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법관에게 의무 지워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조문해석상으로는 그 차이가 명료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용 전체가 가정법원의 판단에 위임되어져 있다. 더욱이 개정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의 무기형은 필요적으로 유기형으로 감경되도록 한 지금까지의 규정을 개정해서, 법관의 판단으로 경감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거나, 사형을 경감해서 무기형으로 한 경우의 가석방 가능기간 7년을 성인과 같이 10년으로 환원하는 등, 형벌강화의 의도가 표명되고 있다.

나) 소년심판절차의 개선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행사실 인정 절차에 대한 개선이다. 여기에는 절차상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가되었다. ①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죄 및 그 외로 사망·무기 혹은 단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의 사실인정의 절차에 검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심판에 출석시킬 수 있다. 그 때 소년에게 변호사인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관호조치기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1주년을 원칙으로 1회만 갱신이 인정되고 있지만, 개정에 의해 사형·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비행사실인정을 위한 증인신문·감정·검증이 행해지는 경우, 심판의 필요상 2회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최장 8주간). ③ 심판에 관여한 검사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실인정에 관한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고를 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④ 소년심판에 재정합의제를 도입, ⑤ 보호처분 종료 후에도 비행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처분을 한 가정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소년심판의 교육적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① 심판은 친절하고 온화하게 행해져야 하고, 비행한 소년에 대해 자기의 비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조사, 심판에서 보호자에 대해 견책, 지도 기타의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서 피해자에의 배려를 위한 것으로 ① 가정법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취할 수 있다. 단, 사건의 성질, 조사, 심판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등에게 소년심판 결과 등을 통지한다. 단, 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피해자등에 대해 심판 중 및 심판확정 후, 일정한 범위에서 비행사실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 경우에도 소년의 건전육성에의 배려, 엄격한 비밀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¹⁶⁾

이상에서 살펴 본 일본 개정소년법의 특징은 강한 엄벌화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반영으로서 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점도 역시 엄벌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소년법은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년법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개정소년법에 따르면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소년법과 근접하게 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전체적으로는 법원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비행소년에 대한 검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검사는 소년의 형사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16) 제2차 개정법에 관한 국회의 심의과정은 개정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기간이 매우 단기로 한정되어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 부칙 제3조에 정부는 규정의 시행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함과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에 근거해서 법제의 정비 기타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향후의 검토를 촉구하는 취지의 부대결의를 했다. 그것은 다음의 8가지이다. ① 소년심판에서의 사실인정절차 및 검사 송치 ② 교정처우의 인적, 물적 체제의 충실, 개선 ③ 관호 조치기간의 상한 ④ 공공대리인제도 ⑤ 소년법의 적용연령, ⑥ 흉악소년범죄의 방지책(소년법 제61조) ⑦ 가정법원의 조사체제의 충실, 소년문제에 관한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⑧ 피해자보호시책의 추진, 회복적 사법의 검토 : 澤登俊雄, 前掲書 243면.

서는 소년심판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항고까지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소년법이 의도하는 것처럼 엄벌화를 통해 소년흉악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지, 또한 검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일본 소년사법의 운용 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비행소년의 처리절차

(가) 경찰에서의 처리

대부분의 비행소년이 처음 대면하는 사법단계는 경찰이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본부 및 경찰서에 청소년범죄를 담당하는 과(課) 및 계(係)를 두고 소년경찰에게 이를 전달시킨다. 일본의 소년경찰은 대상소년과 비행의 종류에 따라 처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14세부터 19세 사이의 우범소년과 14세 미만의 촉범소년은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비행이 보다 중한 소년 즉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수사사건의 서류 증거물 등을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예외적으로 검찰관송치의 특례를 두어 사법경찰관이 소년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검찰¹⁷⁾에서의 처리

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류대신에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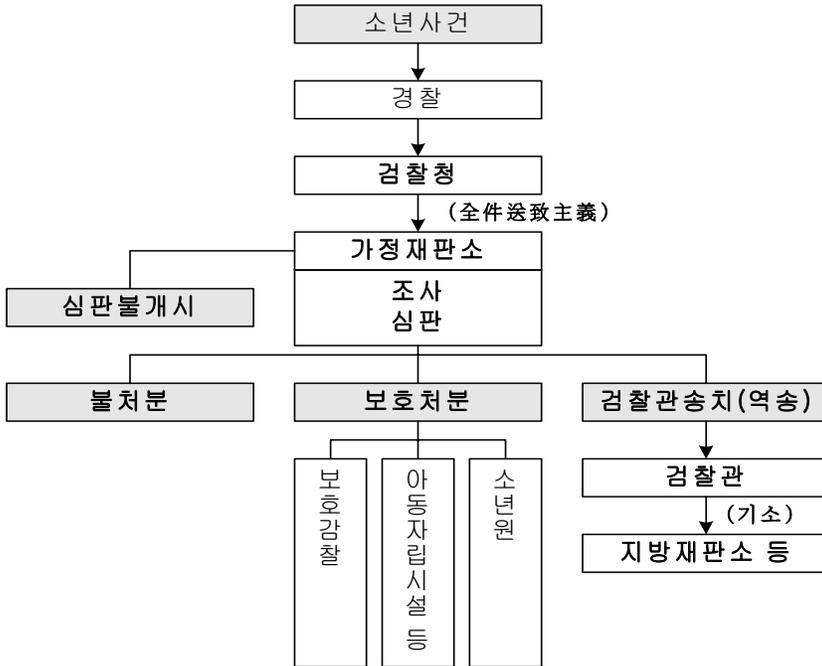
17) 일본 검찰의 조직과 기구에서 특별히 ‘소년검찰’이라고 할 만한 독자적 기구는 없다. 이는 전후 소년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선의주의가 법원선의주의로 바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년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의 관여도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중요도도 낮아진 결과의 하나라 할 것이다. 김승구, 외국의 소년범죄처리태도와 실태 -일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54쪽.

청구하고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검사가 갖는 기소유예처분권한을 가정재판소재판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재판소가 조사 또는 심판의 결과 그 죄질 및 정상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관할 지방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역송을 받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 기소한다. 검사는 가정재판소로부터 송치된 소년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에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정상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송치 후 정황에 의하여 기소가 상당하지 않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불기소할 수 있다(소년법 제 45조 5항). 형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5조).

(다) 소년법원(가정재판소)의 처리

보호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사는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가정재판소가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하여 검찰관에게 송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소년사건은 가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소년심판의 대상은 20세 미만으로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한다. 소년이 가정재판소에 송치되면 신병확보를 위해 불위탁(가정)이나 소년감별소예의 위탁 처분을 내리며, 특히 소년감별소에서의 조사결과와 분류심사결과를 참작·종합하여 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그림 II-1> 소년사건의 처리 과정



가정재판소는 스스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외에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따른 조사의 결과도 함께 참조해서 심판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소년법원은 보호절차에 따라 심리불개시(일본 소년법 제19조), 불처분(동법 제23조 제2항), 보호처분(동법 제24조) 등을 하거나 아동상담소에 송치(동법 제18조 및 제23조 제1항)하거나 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심판을 개시한 경우에는, 비공개로서 심판을 하고, 비행사실이 인정되든 안 되든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한다.

한편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송치, 보호감호 등의 처분을 하지만, 죄질이나 정황에 비추어 보호처분으로는 안 되고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검찰관에 송치하는 결정(역송결정)을 한다.

라. 소년범죄에 대한 시책

이상과 같은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리와 적절한 처우는 소년비행의 대책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나, 소년비행의 증가 혹은 흉포화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가정환경이나 교육의 문제, 지역사회 비행 억제력의 저하, 사회 환경의 악화, 소년 자신의 규범의식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치는 것이므로, 그 제거는 관계 모든 기관이 협력해, 정부의 의지를 촉구해야 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일본은 2003.7. 나가사키(長崎)시내에서 발생한 12세 소년에 의한 4세 아동유괴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여 소년비행 대책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동년 9월에 코우노이케 요시타 국무대신(당시 청소년 담당)에 의해 「소년비행대책을 위한 제안」을 정리, 그 구체적인 지침내용을 포함시킨 「청소년 육성시책 개요」가 동년 12월 정부의 시책으로 발표되었다.

동 개요는, 소년비행 예방대책을 위한 시책으로서, 보호활동의 충실, 비행소년의 가족에게로의 관심 등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치는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그중에서도, 제도 면에 관한 검토 과제로 법무성과 관련 깊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실 해명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사안에 대해서, 경찰 기관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 하기 위한 법정비를 검토 할 것.

이 점에 대해서는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른바 촉법소년의 사안에 대해서는 범인(행위자)이 촉법소년으로 판명된 이상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 수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경찰에게는 사안 해명을 위한 조사의 권한은 있다고 유추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한

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안의 진상 해명이 충분하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도 아동상담소가정법원의 각 단계에서 조사 등의 절차 등이 있지만, 감호조치의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면, 보다 빠른 단계에서 사안이 보다 빨리 해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되고 있다.

나) 개개의 소년의 상황에 따라 그 교화개선에 필요한 처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으로부터,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조기의 교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년원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

이 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14 세 미만의 소년을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에 송치할 수 있지만, 소년원법의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비행을 일으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년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므로, 소년원 수용이라고 하는 선택사항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다) 보호관찰중인 소년에 대해서, 그 준수사항의 준수를 확보해 지도를 한층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제도는 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공적 기관의 보호·원호에 의해 소년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소년은 범죄자에방갱생법에 의해 선행유치, 불량교우와 교제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소년의 행동이 좋지 않은 경우, 현행의 범죄자에방갱생법에서는, 소년이 소년법상의 우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소장이 가정법원에 통고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준수사항의 예방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사항은 타 부처의 소관사항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재 법무성 형사국은 다른 부서국이나 관계부처와 제휴하면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면에서의 필요한 검토가 소년비행 사안의 적절한 처리와 함께 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Ⅲ. 설문조사 결과분석

1. 분석틀
2. 조사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Ⅲ. 설문조사 결과분석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단일하지도 않으며, 또한 명백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적 패턴을 발견하고 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인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해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려는 인내심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규범위반행동¹⁸⁾은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정과 학교의 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또 이 모든 것에 상황적 맥락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특성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이같이 청소년의 비행이라는 행위를 낳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 영향력의 크기와 상대적 중요성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해왔으나, 그 분석의 범위와 변수의 설정에 있어 제한적이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비행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을 시도하기 보다는 각각의 수준에서 어떠한 이론적 입장이 설명력에 있어 우월한지를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특정이론의 검증은 이루어져왔으나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층위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의 한 두 이론적 시각에 기초한 가설의 검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된 사례들을 잘 설명하는 요인들이 각각의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18) 본 연구에서 청소년규범위반행동의 의미는 법률위반을 포함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비행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뿐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지위비행)를 포함한다.

1. 분석틀

이 연구는 개인적 수준, 가정수준의 환경, 학교여건,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규범위반행동을 얼마나 설명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데 그 타당성이 입증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개인적 수준에서 자아통제론과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논의, 가정과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유대이론, 그리고 지역 환경의 특성과 비행을 관련시키는 논의들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① 자아통제 :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있어서 가장 그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는 요인은 Gottfredson and Hirschi(1990)가 주장한 자아통제력(self-control)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통제력이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며, 따라서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아통제력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행위의 개인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합리적 인간관의 연장성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외에 여러 상황적, 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행위의 실행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개별 인간의 선택이며, 그 선택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자아통제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아통제력은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민수홍, 1997; 백혜정·황혜정, 2005),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정도에 있어서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피해경험도 낮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고(민수홍, 2004), 청소년비행의 상습화를 설명하는 데도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경상·이순래·박철현, 2005).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교도소 내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자아통제력의 효과는 입증되었다(민수홍, 2005). 이처럼 개인의 자아통제력은 많은 연구에서 규범위반 행

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②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아개념의 한 부분으로 자아개념이 자아에 관한 다양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백혜정·황혜정, 2005). 자신이 기대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신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들은 이 둘 사이에 부적인 관계를 주장한다. 유아나 아동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비행이나 우울, 약물남용 등 다양한 부적응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백혜정·황혜정, 2005).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부적인 관계가 설정된다.

한편 사회학적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비행/범죄의 관련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먼저 비행하위문화론에서는 하류계층 출신의 청소년들이 계층적 문화차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위좌절과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훼손을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행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하여 전도된 가치체계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새로이 평가함으로써 저하된 자아존중감의 회복을 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Cohen, 1955). 이와 유사하게 Kaplan(1978)도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데, 이것은 비행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박철현, 2004). 이러한 개념화를 따르자면 자아존중감은 비행과 부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비행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화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낙인이론에서도 자아존중감과 범죄/비행 간에는 부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먼저 낙인이론에서 부정적인 자아존중

감은 이차적 일탈을 부르는 원인으로 간주된다(Lemert, 1951). 우연적이던 고의든 일단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낙인)을 부여받게 되면 범죄자의 자아개념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데 그것이 범죄적 자아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의 행동은 부정적이고 범죄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낙인이론에서의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경험적으로 완전히 확증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발달이론이나 하위문화이론, 낙인이론 등은 모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③ 사회유대 : Hirschi(1969)가 1990년에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을 주창하면서 취했던 입장이 사회통제론이다. 이 이론의 기본전제는 앞서 소개했던 자아통제이론과 동일하다. 즉 인간은 원래 쾌락을 추구하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욕구의 충족을 갈망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능적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다. 이것은 내면화된 규범의식 또는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내면화된 규범의식의 형성은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즉 “비행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어질 때 일어난다.” (Hirschi, 1969).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는 애착과 수용(또는 관여로 해석되기도 한다), 참여와 신념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습적인 사회와의 결속의 강도에 따라서 규범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규범위반행동을 할 것인지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부모, 어른, 학교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가 긍정적이면 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관계에 문제가 포착되면 행위에 대한 타인들의, 나아가 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1958년부터 1998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연구에서 사회통제이론, 또는 사회유대이론에 이론적 기반으로 두고 있는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만 보더라도(136개의 연구 중 58개로 약 43%를 차지)(이동원, 김지선, 1999.) 이 이론의 이론적, 경험적 공헌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명시적으로 사회유대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는 많은 연구에서도 사회유대 변수들(부모-자녀관계, 부모와의 애착, 학교와의 애착, 학교만족도나 친구관계)을 모델에 포함함으로써 사회유대론을 직접, 간접으로 검증하고 있다(예, 김문조·윤옥경, 2001; 박철현, 2004; 노성호, 2004; 박순진, 2004; 이순래, 2004).

④ 지역사회환경 :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인 지역사회의 환경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서는 이같이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비행을 관련시키고 있는데, 인구이동이 높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며 결혼가정이 많은 도심의 빈곤지역은 문화갈등의 소지가 많고 사회가 통합되지 못해 그만큼 범죄율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집합적 규범과 결속력이 개별 구성원의 행위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역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일시적이고 익명적인 상태를 지니게 되어 결속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공통의 가치가 부족하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와 비행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이성식, 1998). 이러한 개념화를 따르면, 비공식적 통제의 결핍은 비행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는 비공식통제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면서 동시에 비공식통제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에서는 특정 지역의 사회적 특성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Cohen & Felson, 1979). 일상생활이론은 범죄라는 하나의 사건(event)

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범죄대상(suitable target),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대상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해요인의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라는 세 가지 요소를 범죄라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라는 사건은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이 논리에 따르면 범죄대상은 많이 있으면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적은 지역은 잠재적 범죄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이론적 입장에서는 유흥, 오락업소가 많은 상업지역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론들로부터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사회환경적 특성이 개인적, 가정적, 학교관련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으로 유인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교 재학생 1,122명이다. 무응답을 제외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III-1>과 같다.¹⁹⁾

19) 보다 자세한 표집과정과 조사시행 날짜 등에 관해서는 세부과제인 ‘김은경·홍영오,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2006년 12월 이 보고서와 함께 발간)’을 참조할 것.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학생 여학생 합 계	571(50.9%) 550(49.1%) 1,121(100%)	거주형태	자가	533(48.9%)
				전세	341(31.3%)
				월세	139(12.8%)
				무상	14(1.3%)
				기타	62(5.7%)
			합계	1,089(100%)	
교급	중학생 인문고교생 실업고교생 합 계	530(47.3%) 462(41.3%) 128(11.4%) 1120(100%)	한달용돈	없다	140(12.6%)
				1-5만원	650(58.3%)
				5-10만원	204(18.3%)
				10-20만원	65(5.8%)
				20-30만원	23(2.1%)
				그 이상	33(3.0%)
				합계	1,115(100%)
가정형편	상 중 하 합계	200(18.0%) 662(59.4%) 251(22.6%) 1,113(100%)			

2) 변수의 조작화

(1) 청소년비행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비행이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설문문항은 18가지의 다양한 비행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데, 이것을 다시 5개의 요목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지위비행'으로서 흡연, 음주, 성인용 술집출입, 커닝, 무단결석, 가출 등의 6개 항목이 포함된다. 둘째는 '폭력비행'으로서 폭행, 집단패싸움, 금품강탈, 친구따돌림, 환각성 약물흡입/복용, 및 채팅/게시판 통한 욕설/폭언 등이다. 세 번째는 '재산비행'으로서 상점절도 및 대인절도가 포함된다. 네 번째는 '성비행'으로서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인터넷을 통한 음란/포르노물열람 및 채팅/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자살범주로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1문항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2)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측정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였다. 설문지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항들을 골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항목들의 단일차원성과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나는 위험한 일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도 한다’, ‘아무리 신나는 일이 있어도 위험이 따른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의 네 항목이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네 항목을 합한 점수를 자아통제 점수로 이용하였다.²⁰⁾ 이 네 문항간의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값은 .63 이었다.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네 항목을 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Cronbach's alpha값은 .76이다.

(3) 사회유대요인의 측정I: 가정적 유대

가정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문항 중에서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는 가족통합과 부부갈등 두 가지이다.²¹⁾ 먼저 가족통합은 가족구성원간의 친밀성, 유대감등을 측정하는 여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집

20) 척도문항의 방향에 일관성을 주기 위해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 중 필요한 경우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역코딩(inverse-coding)하였다.

21) 가정적 요인으로 묶여질 수 있는 문항들은 이외에도 부모에 대한 감정적 유대, 자녀에 대한 감독정도, 그리고 자녀훈육방법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다수 있다. 각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예비분석(preliminary analysis)의 성격을 가진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변수들은 최종선택에서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이 유의미한 요인들을 찾아내어 그것에 기반을 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석의 간결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식구들은 서로 잘 돕는다',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믿지 못한다',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우리 집 식구들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한다'의 6개의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4이다.

부부갈등은 '부모님은 서로 대화를 자주 하신다', '부모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부모님은 말다툼이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신다',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때리기도 하신다',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욕을 하기도 하신다'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4이다.

(4) 사회유대요인의 측정II: 학교와의 유대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항 중에서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문항과 학교만족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학교에 가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 할 것 같다'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은 별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공부를 왜 하는지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공부하기가 싫다'의 여섯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값은 .84이다. 이 변수는 특정학교에 대한 호감도나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학교교육(공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만족도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구체적인 학교와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지의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다섯 문항, '우리학교가 자랑스럽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유능하다', '갈수만 있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인 것이 좋다', '이 학교에서는 공부하는데 흥미를 느낀다.'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81이다.

(5) 지역사회요인: 무질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유흥업소의 범람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와 비공식적 규제력의 활성화정도, 그리고 유흥업소의 수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11개의 행위유형의 합계를 이용하였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사름들끼리 싸우는 것, 운전자끼리 싸우는 것, 술 취한 사람, 고성방가로 떠드는 사람, 노숙자, 거리에 침 뺏는 사람, 무단횡단 등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사람, 담배꽂초 버리는 사람, 휴대전화 큰 소리로 받는 사람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보는 지의 질문을 합산해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값은 .89이다.

비공식적 사회통제(규제력)이란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의 행동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지역자체적인 규제력이 발휘되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9개의 문항점수를 합산해서 비공식통제라는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값은 .89이다.

지역사회요인으로 선정된 마지막 변인은 동네가 있는 유흥업소의 수이다. 여기서 유흥업소의 수는 실제 유흥업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유흥업소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전자오락실,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나이트클럽, 복권방, 당구장, 술집, 러브호텔, 사창가가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한 5점척도(전혀없다를 1점, 아주 많다를 5점)를 합산한 값이다.

3. 분석결과

1) 기초분석

<표 III-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N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위비행	1111	20.00	5.00	25.00	6.8956	3.14684
폭력비행	1117	24.00	6.00	30.00	7.3832	3.18683
재산비행	1122	8.00	2.00	10.00	2.3396	1.11499
성비행	1114	16.00	4.00	20.00	5.8878	2.98799
자살	1122	4.00	1.00	5.00	1.1551	.58147
자아통제	1101	16.00	4.00	20.00	12.9428	3.00899
자아존중	1113	16.00	4.00	20.00	12.9155	3.42836
가족통합	1089	24.00	6.00	30.00	24.1129	4.25358
부부갈등	1098	24.00	6.00	30.00	11.4872	4.57952
학교불신	1109	20.00	5.00	25.00	11.4995	4.42764
학교만족	1105	20.00	5.00	25.00	14.6145	4.18176
유흥업소	1103	44.00	11.00	55.00	28.8087	8.13468
거리무질서	1105	44.00	11.00	55.00	30.6244	7.82503
비공식통제	1104	36.00	9.00	45.00	27.4275	7.29872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우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관찰사례의 범위,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III-2>에 제시되어 있다. 자살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복수의 문항점수를 합해서 만든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범위가 대부분 넓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표<표III-3>를 보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부부갈등과 가족통합사이의 관계로($r=-.61$)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다 이론적인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즉 자아통제, 자아존중, 가족통합, 학교만족, 비공식통제의 경우는 각 비행유형과 부적(negative)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부부갈등, 학교불신, 유흥업소와 거리무질서는 정적(positive)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III-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자아 통제	자아 존중	가족 통합	부부 갈등	학교 불신	학교 만족	유흥 업소	거리 무질서	비공식 통제
자아통제	1								
자아존중	.090**	1							
가족통합	.210**	.361**	1						
부부갈등	-.148**	-.244**	-.614**	1					
학교불신	-.230**	-.305**	-.267**	.148*	1				
학교만족	.157**	.215**	.200**	-.117**	-.492**	1			
유흥업소	-.114**	-.019	-.029	.099*	.009	-.010	1		
거리무질서	-.175**	-.152**	-.183**	.180**	.140**	-.151*	.332*	1	
비공식통제	.073*	.164**	.226**	-.144**	-.166**	.240**	-.050	-.148**	1
폭력비행	-.113**	-.072*	-.141**	.149**	.159**	-.073*	.209*	.195**	-.075*
재산비행	-.132**	-.061*	-.162**	.164**	.164**	-.105*	.165*	.217**	-.098*
지위비행	-.225**	-.053	-.166**	.155**	.191**	-.170*	.175*	.178**	-.013
성비행	-.129**	-.024	-.127**	.141**	.117**	-.093*	.158*	.172**	-.093*
자살	-.108**	-.159**	-.195**	.171**	.146**	-.063*	.122*	.150**	-.066*

* p<.05 , ** p< .01

2) 주요 분석결과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들을 모두 하나의 모델에 넣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이다. 이러한 full model을 구하기 전에 개인적, 가정적,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지표로 선정된 각각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비행유형에 따라 4개의

model이 설정되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 통제변수(성별과 교급)를 포함하여 설정한 full model이 측정되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각의 측면들이 4개의 비행유형과 그 총합에 대해 기대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1) 조사대상 학생 전체의 비행

<표 III-4>는 조사대상 학생 전체의 각종 비행유형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변수 중 자아통제는 성비행을 제외한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비행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이론적 기대 뿐 아니라 많은 선행 경험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개인적 수준의 변수로 그 효과가 기대된 자아존중감은 자살에만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비행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대와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수준의 변수를 보면, 먼저 가족통합 정도는 지위비행과 자살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도 엄격한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족의 화목과 애정은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시도를 막는 억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으면 그 속에서 청소년들은 안정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기 쉽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부부갈등의 영향을 측정하였는데, 관계의 방향은 기대하던 대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각종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얻는 데는 실패하여 그 관계를 확신 있게 결론짓기는 어렵다.

²²⁾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측정한 회귀분석결과는 여기에 따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별도로 요청을 할 수 있다.

<표 III-4> 조사대상 학생 전체에 대한 비행관련 요인들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지위비행	자살
		β	β	β	β	β
개인	자아통제	-.064***	-.065***	-.044	-.138*	-.067***
	자아존중	.016	.035	.060 [†]	.043	-.073***
가정	가족통합	-.066 [†]	-.079 [†]	-.037	-.090***	-.088***
	부부갈등	.020	.029	.032	.022	.064
학교	학교불신	.135*	.124**	.043	.070***	.101**
	학교만족	.019	.008	-.034	-.082***	.045
지역 사회	유흥업소 수	.126*	.075***	.031	.102**	.073***
	거리무질 서	.100**	.146*	.101**	.067***	.041
	비공식통 제	-.047	-.051	-.029	.049	-.028
성별	남성	.157*	.107**	.374*	.067***	-.002
교급	중학교	.021	.073	-.202*	-.341*	.074
	고등학교	-.070	.015	-.121***	-.258*	-.009
r-square		.12	.11	.23	.17	.08
F-ratio		11.266*	9.567*	23.345*	15.684*	6.629*

* p < .001; ** p < .01; ***p < .05; † p < .10

학교환경을 위해 선정된 변수 중 학교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느끼지 못할수록(학교불신이 높을수록)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자살의 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행의 정도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불신은 폭력비행의 경우, 통제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 중에서 그 상대적 영향력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학급에 대한 만족도는 지위비행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환경을 포착하기 위해 선정된 변수 중 유흥업소의 수와 거리무질서 정도는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을 모두 증가시키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거주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에 대한 인식은 비행유형

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환경의 물리적 질서와 상업성의 정도가 지역 환경 수준에서 청소년의 비행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변수가 모든 경우에 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수준, 가정적 환경, 학교의 환경과 지역사회의 환경이 모두 일정정도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비행에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유형별로 보면, 독립변수들이 가장 많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경우는 지위비행(6개의 독립변수가 유의미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 학생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한 표본 내에 있지만 다른 특성을 가진 내집단들의 특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조사대상 학생을 교급과 성별에 따른 집단으로 분리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에서는 중학생집단, 인문고등학교 학생집단, 실업고등학생 집단, 남학생집단, 여학생집단의 비행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중학생

<표 III-5>는 조사대상 중 중학생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포함된 독립변수의 수는 이전과 동일하며, 성별을 통제하였다.

중학생들의 비행에 비행유형을 포괄하는 원인은 자아존중, 가족통합, 학교불신, 그리고 거리무질서이다. 자아통제는 단지 지위비행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비공식통제는 재산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학교만족도와 유흥업소 수는 어느 비행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5〉 중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지위비행	자살
		β	β	β	β	β
개인	자아통제	-.044	-.013	-.042	-.113***	-.059
	자아존중	.089 [†]	.098 [†]	.162**	.092 [†]	-.088 [†]
가정	가족통합	-.114 [†]	-.129***	-.101 [†]	-.107 [†]	-.104 [†]
	부부갈등	-.043	-.053	.007	-.037	-.021
학교	학교불신	.165**	.122***	.143**	.143***	.154**
	학교만족	-.027	.005	-.077	.000	.069
지역사회	유흥업소수	.056	.052	.070	.038	.041
	거리무질서	.185*	.210*	.108***	.141**	.070
	비공식통제	-.054	-.116***	.009	-.046	-.076
성별	남성	.200*	.170*	.323*	.130**	.022
r-square		.18	.17	.20	.13	.11
F-ratio		9.412*	8.794*	11.109*	6.344*	5.173*

* p < .001; ** p < .01; ***p < .05; † p < .10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비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대한 방향과는 반대이다.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도 통계적인 엄밀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반대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예, 박철현, 2004)와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하나의 가능한 추론은 성적으로 조숙한 중학생들은 자신의 성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성적인 조숙성을 행위로 나타내려는 경향을 더 가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성급한 결론을 맺기는 상당히 무리라 하겠다.

가정적인 변수들은 예상과는 달리 중학생 집단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학교차원의 변수 중 학

교불신, 즉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학교의 존재이유나 교육의 필요성, 학교교육의 정당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비행을 설명하는 데 더 일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특정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비행을 의미 있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초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형사정책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교육정책, 청소년육성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 유흥업소의 수는 중학생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비공식적 통제는 재산비행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사회규제에 대한 인식이 중학생의 재산관련 비행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중학생의 비행을 설명하는 강력한 지역사회 환경은 거리무질서이다. 거리무질서 정도는 자살을 제외한 모든 비행유형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독립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 이것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개인적, 가정적, 학교의 여건과 독립적으로 중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비행별로 정리해보면, 중학생의 폭력비행은 학교불신과 거리무질서가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지며, 재산비행은 가족통합, 학교불신, 거리무질서와 비공식적 통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 지위비행에는 자아통제와 학교불신, 거리무질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자살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²³⁾

23) 자아통제론(self-control theory)의 기본적인 주장은 자아통제력이 ‘모든 범죄를 어느 시점에서나 설명하고, 국가에 의하여 제재되지 않는 많은 형태의 행위까지도 설명하는 것’ (Akers and Sellers, 2005 : 193-1944)이며 이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a general theory)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자아통제가 중학생의 지위비행만을 설명한다는 이러한 발견은 같은 중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연구한 민수홍(2005)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물론 고려된 변수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의 연구에서는 자아통제력이 지위비행뿐만 아니라 폭행, 절도, 협박 등의 비행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3) 인문고등학생

고등학생 집단의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표 III-6>을 보면 고등학생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아통제력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자아통제력의 증가는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비행과 자살은 통계적인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자아통제력의 영향이 고등학생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가족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지위비행은 감소한다. 또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재산비행과 자살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비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의 경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반면에 자기가 속한 학교에 대한 만족정도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의 지표는 중학생의 경우와 달리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학교와 관련된 변수보다 부모의 갈등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살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입시중압감 뿐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도 큰 원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실업고등학생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 비교적 일관되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흥업소의 수이다. 오락과 상업시설이 많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 지위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 중 유흥오락시설이 많은 곳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음을 시

<표 III-6> 고등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지위비행	자살
		β	β	β	β	β
개인	자아통제	-.119***	-.136**	-.062	-.178*	-.034
	자아존중	-.060	-.029	-.024	.023	-.047
가정	가족통합	.027	-.037	.004	-.136***	-.055
	부부갈등	.112 [†]	.118***	.047	.071	.150***
학교	학교불신	.132***	.134***	.015	.063	.082
	학교만족	.098 [†]	.027	-.015	-.093 [†]	.079
지역사회	유흥업소수	.087 [†]	.053	.002	.048	.099 [†]
	거리무질서	.046	.085	.056	.011	.042
	비공식통제	-.044	-.008	-.059	.088 [†]	.044
성별	남성	.190*	.094 [†]	.458*	.110***	-.012
r-square		.11	.10	.23	.12	.07
F-ratio		4.820*	4.587*	11.969*	5.427*	3.109**

* p < .001; ** p < .01; ***p < .05; † p < .10

사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유흥오락시설의 만연이 비행의 대상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보호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폭력, 절도 등 범죄/비행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상생활이론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at the same time in the same place) 가능성을 높인다.

실업고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신이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규범위반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못하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수록 지위비행(커닝이나 무단결석, 음주, 흡연, 가출, 성인업소 출입 등)을 많이 하는 것은 확인되었다.

<표 III-7> 실업계고등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지위비행	자살
		β	β	β	β	β
개인	자아통제	.083	.048	-.005	-.081	-.100
	자아존중	-.025	-.045	.043	-.067	-.099
가정	가족통합	-.113	.028	.062	.006	-.043
	부부갈등	-.008	.068	.149	-.038	.120
학교	학교불신	.063	.068	-.075	-.102	-.041
	학교만족	-.093	-.115	.055	-.312**	-.109
지역 사회	유흥업소수	.438*	.214***	.097	.397*	.134
	거리무질서	-.019	.024	.183 [†]	.051	-.107
	비공식통제	.033	.098	-.039	.159 [†]	-.010
성별	남성	.040	-.054	.362*	-.117	-.128
r-square		.21	.09	.19	.29	.11
F-ratio		2.639**	1.007	2.330***	3.823*	1.140

* p< .001; ** p< .01; ***p< .05; † p< .10

(5)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관련 요인

다음은 조사대상학생을 남녀 성별로 집단화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같이 성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성별에 따른 비행요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남학생

교급을 통제하고 난 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변수들이 남학생들의 비행에 주는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가 <표 III-8>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별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보자면, 자아통제력이 높으면 지위비행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가족통합도도 지위비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폭력비행, 재산

〈표 III-8〉 남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지위비행	자살
		β	β	β	β	β
개인	자아통제	-.025	-.058	-.039	-.116***	-.009
	자아존중	.005	.049	.067	.075	-.042
가정	가족통합	-.080	-.075	-.071	-.121***	-.090
	부부갈등	.025	.047	.042	-.003	.036
학교	학교불신	.144**	.144**	.034	.083 [†]	.091 [†]
	학교만족	.026	.001	-.038	-.082	.019
지역사회	유흥업소수	.151**	.080 [†]	.020	.094***	.095***
	거리무질서	.150**	.192*	.134**	.116***	.092 [†]
	비공식통제	-.083 [†]	-.083 [†]	-.080 [†]	.036	-.037
교급	중학교	.053	.140***	-.219**	-.223**	.107
	고등학교	-.033	.033	-.091	-.171**	.011
r-square		.12	.13	.10	.13	.07
F-ratio		5.903*	6.606*	4.779*	6.650*	3.351*

* p < .001; ** p < .01; ***p < .05; † p < .10

비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흥업소의 수는 폭력비행, 지위비행과 자살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무질서는 자살을 제외한 모든 비행유형에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비행에 거리무질서가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비행별로 다시 보면,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 대해서는 가족통합 정도, 학교불신, 유흥업소 수와 거리 무질서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방향도 모두 이론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족통합이 높을수록,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낮을수록, 유흥업소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거리무질서 정도가 낮을수록 비행수준은 감소한다. 성비행에 대해서는 거리무질서가 영향을 주고 있고,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자아통제, 가족통합, 유흥업소 수와 거리무질서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해보면 남학생들에게 있어서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은 폭력이나 절도 등의 비행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음주나 흡연, 무단결석 등을 포함하는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력이나 절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 가정적 요인보다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유해환경이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나. 여학생

여학생의 비행관련 요인 분석결과는 <표 III-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아통제력의 영향력은 폭력비행, 지위비행, 자살까지 이어져서 그 영향이 남학생보다 상당히 광범위한 행위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여학생 집단의 비행관련 요인들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지위비행	자살
		β	β	β	β	β
개인	자아통제	-.128**	-.067	-.093 [†]	-.167*	-.128**
	자아존중	.007	-.006	.018	-.012	-.109***
가정	가족통합	-.049	-.102 [†]	.036	-.052	-.088
	부부갈등	.008	-.018	.040	.047	.097 [†]
학교	학교불신	.136***	.074	.076	.034	.111***
	학교만족	.011	-.001	-.024	-.111***	.069
지역사회	유흥업소수	.114***	.083 [†]	.127***	.118***	.038
	거리무질서	.018	.065	.063	-.015	-.019
	비공식통제	-.005	-.016	.062	.070	-.020
교급	중학교	-.132	-.132	-.236***	-.610*	-.011
	고등학교	-.221***	-.099	-.219***	-.487*	-.083
r-square		.09	.07	.08	.22	.11
F-ratio		3.986*	3.093*	3.481*	12.047*	5.045*

* p< .001; ** p< .01; ***p< .05; † p< .10

한편 가정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것은 여성주의적 범죄논의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주의적 범죄학자들은 여성의 관계 지향적인 특성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에 따라 비행수준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Chesney-Lind, 1989). 이러한 기대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며,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학교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도 여학생의 경우,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폭력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지위비행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은 감소하고 있다.

여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환경은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흥업소의 수는 폭력비행, 성비행, 지위비행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나머지 두 변수, 거리무질서와 비공식통제는 여학생들의 비행을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자아통제의 비행억제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상업성 정도가 여학생들의 전체비행에 약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및 시사점

청소년비행에 대한 다양한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전반적 수준에서 볼 때,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모두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자아통제는 개인적 수준에서 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불

신은 청소년비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학교나 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던지, 학교에 가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등)이라고 할 때, 공교육의 존재이유와 의미에 대한 어른들의 성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비행에 주는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는 것 또한 확인이 되었다. 유흥업소의 범람이나 거리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는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비행과의 관계는 사회해체론과 일상생활이론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기존의 연구들도 유흥업소,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와 폭력,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 발생률 간의 관계를 증명한 바 있고, 유흥업소의 범람이 청소년의 가출, 폭력, 성비행을 부추긴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김영한, 이명진, 2005). 지역사회차원의 정화나 감시의 노력이 현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청소년을 교급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본 결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에 따라, 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에 따라 비행원인의 중요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학교요인은 학교불신이고 지역사회 환경은 거리무질서이다. 반면 자아통제는 중학생의 비행에 대해서는 단지 지위비행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학생에 대한 결과와는 대조를 보인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 대한 무의미성과 불신은 청소년비행의 주요 결정인자이다. 또 중학생이 생각하는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 개인적, 가정적 요인보다 그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중학생의 비행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인문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생과는 달리 자아통제의 비행억제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도 고등학생의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을 설명하는 학교환경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가정적인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적었다. 중학생의 경우와는 반대로 환경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통제력이 비행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이 사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예방 프로그램 등에 자아통제력²⁴⁾의 강화를 위한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는 인문등학생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환경의 하나로서 유흥업소의 수가 그들의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적인 변수나, 가정, 학교변수는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실업고 학생들이 유흥·오락지역의 환경으로부터 탈선의 유혹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녀학생을 분리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시도한 결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자아통제력은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 다만 차이점은 남학생에게 있어서 자아통제력은 지위비행을 막는 요인에 한정되고 있지만,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지위비행과 함께 폭력비행과 자살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아통제의 효과가 여학생에게 있어 더 많은 행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정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거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한 가지 예외는 가족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남학생의 지위비행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지역사회환경 중 유흥업소의 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거리무질서는 남학생의 비행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비행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4) 칸프레드슨과 허쉬의 자아통제론에서는 자아통제력은 어린 나이에 형성되어 일생을 거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등학생들에게 자아통제력의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적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개인적 수준, 가정적 수준,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요인이 비공식적 통제이다. 비공식적 통제의 효과는 단지 중학교 여학생의 재산비행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력이 개인적 수준의 내적인 통제(internal control)로 작용하는 반면, 비공식통제는 외적인 통제(external control)로 개인의 행위를 조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그 검증에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비공식적 통제(지역사회 또는 주변사람의 자발적 감시나 통제)의 영향력이 주어지는 공간은 매우 좁은 지역에 한정되지만 비행을 부추기는 환경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으므로, 비공식적 통제의 비행억제력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이 유흥업소와 거리무질서의 비행 증가효과이다. 즉 유흥오락업소 지역은 비공식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이며, 이런 지역의 거리무질서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비공식적 통제력의 절대적 부재이다.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이 서울 지역이고, 서울지역 주택의 대부분은 아파트라고 할 때, 주민상호간의 신뢰와 결속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반사회나 입주자회의 등을 통한 모임은 존재하지만 우리의식(we-feeling)을 고양하고 서로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압력을 줄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 분석에서 비공식적 통제의 비행 억제 기능이 증명되지 않은 것을 바로 비공식적 통제의 억제효과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비공식적 통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비공식적 통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비공식적 통제력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

는 것이라고 볼 때,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faith-based group) 집단 활동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종교단체들의 개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비공식통제력의 존재여부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각종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그것을 예방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 크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개인통제력의 확립을 강조하거나, 가정의 화목과 통합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s)을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의미를 찾고 교육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과제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율적인 교육의 수용은 타율적인 학습의 강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철학적 자기성찰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아무런 의미 없이 타율적으로 대학입학을 위한 로봇처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찾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으며, 치열함이 없기에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될 수도 있다.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불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한 축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으로 삼은 것은 이같이 지역사회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지정이나 청소년통행제한, 금지구역의

지정도 모두 지역사회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환경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이 연구의 결과대로라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통행을 막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전반적인 거리질서의 회복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거리질서의 회복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목표이기도 하다(최선우, 2003).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예방적인(proactive) 범죄통제정책으로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계도하고 관리함으로써 일탈과 범죄를 억제하려는 정책이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 즉 개인과 단체와의 협조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예방과 범죄자 교정은 이제 형사사법기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무질서와 유흥업소의 범람 등의 지역적 환경이 비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경찰과 지역의 기관, 단체, 개별 구성원들이 이러한 지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경찰도 이제는 사후적인 범죄통제정책(reactive crime control policy)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행/범죄의 원인을 미리 찾아 근절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의 결과 지역사회 요인의 비행 유발효과가 검증된 바,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비행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본 연구는 중학생과 인문등학생, 실업고등학생으로 교급을 나누어서, 또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서 비행원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은 지역의 사회 물리적 환경의 영향이 크고, 고등학생은 자아통제의 영향이 크며, 실업고 학생은 유흥업소의 존재가 영향을 주며, 여학생의 경우 자아통제가, 남학생의 경우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의 발견은 교급과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측면과, 각 집단에 특수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비행예방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성인범죄자 교정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보아도, 최근의 추세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요소(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충동조절 등)와 더불어 범죄유형에 맞는 (crime-specific, 예를 들어 성범죄자, 절도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성별 특성에 맞는 성인지적(gender-specific) 요소(여성의 관계의존성, 양육기술 등)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비행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정 프로그램도 청소년시기라는 공통된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비행유형별 위험 요소와 성별 차이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결과가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효과를 측정해 본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전제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독립변수들 간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이 개인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매개과정을 거쳐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예컨대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며 추후의 분석으로 이 부분이 명쾌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는 점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임을 밝혀둔다.

IV. 세부과제 연구결과

1.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2.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IV. 세부과제 연구결과

1.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1)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가정해체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학습중단 청소년 발생이 증가하는 등 공정한 학습기회 박탈로 인한 빈곤 세습화가 우려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정책과 맞물려, 방과 후 가정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 학습결손 및 비행노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약 50% 이상의 청소년이 가정 및 학교의 보호에서 무방비한 상태이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맞벌이 부부증가, 학교 밖 활동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학습중단, 성비행과 가출, 학교폭력을 비롯한 폭력행동, 약물오남용 등 청소년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문제행동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간의 유기적 통합사회안전망 구축 및 대응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및 시도가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의 특징 중의 하나인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비롯하여, 전 국민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또는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 가정 관련요인 및 학교 관련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차사회화 기관인 가정 및 학교가 청소년 문제행동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현행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가정과 학교의 기능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주요한 정책동향 및 프로그램 사례들의 검토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과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 관련 쟁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청소년 범죄현황과 청소년 범죄이외의 문제 행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가정과 부모, 학교와 교사의 기능과 역할 및 문제점 등 가정과 학교의 연계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넷째, 가정 및 학교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정책과 사례분석을 위해, 현행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의 문제점과 한계 및 각국의 주요 정책방안과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조사결과에 나타난 정책 시사점, 가정과 학교의 기능 강화방안 및 청소년 참여를 통한 문제행동 예방대책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첫째,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가정·학교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둘째,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청소년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하였고, 통계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집계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범죄 이외의 문제행동의 현황 및 징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서울소재 중·고등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정·학교관련 요인에 대한 청소년문제 행동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였고, 아울러 가정·학교 연계교육 및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기존 대책과 문제점 분석 및 새로운 대책 제안을 위해 정부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먼저 가족의 구조적 측면으로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가정형편 및 결손가정 여부를 들 수 있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부분의 사회학적 이론(아노미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하위문화이론, 고전적인 해체이론 및 사회통제이론 등)은 이론의 출발점으로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시도와 더불어 출발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김준호·김순형, 1995), 거의 모든 이론들은 가난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해답으로서 아노미, 학습, 하위문화, 사회해체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김준호·김순형, 1995; 김준호·안호용·김선애·김선엽, 2002; Braithwaite, 1981; Tittle, Villemez, & Smith, 1978; Tittle & Meiyer, 1991). 다만, 객관적인 가족의 월수입을 통한 김준호와 김순형(1995) 및 김준호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월수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인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수입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정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형편은 지위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기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느낀 자녀가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인 생활형편과는 관계없이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지위비행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족의 결손여부로서 결손가족과 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 역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김준호 등, 2002). Nye(1958)는 문제가 없는 결손가족보다는 문제가 있는 일반 가족이 비행소년을 만든다고 지적하고, 문제 있는 가족이 비행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결손가족과 비행 간의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결손이전에 이미 많은 긴장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준호 등, 2002). 김준호와 김순형(1995) 및 김준호 등(2002)의 연구에서는 결손유형(결손가족은 부모 중 하나만 있는 편부모가족과 부모가 둘 다 없는 소년소녀가장 가족)은 비행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모가 없는 결손가족의 자녀가 비결손가족 자녀에 비해 지위비행을 다소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것이 부모의 부재 자체가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즉 결손가정 자녀의 비행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가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일 수 있다(김준호 등, 2002).

가족의 기능적 측면은 가족의 친밀감, 부모의 감독 또는 통제, 가정 내 부모와의 의사소통 형태, 부부 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분위기 및 신체적·언어적 폭력 또는 학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비행과 관련하여 가족의 친밀감을 살펴보면, 가족의 친밀감이 문제행동을 억제한다는 결과는 많은 학자들(기광도·이희길, 2002; 강영자·김운희, 1999; 전영실, 2002; 정기선·민수홍·이희길, 2001; Glueck & Glueck, 1950; Rankin & Kern, 1994; Rankin & Wells, 1990)이 보고하고 있는

데, 이동원(1997)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성적 긴장이 비행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부모의 감독 또는 통제가 문제행동을 억제한다는 결과 역시 많은 연구에서 보고 되고 있다(김준호· 김은경, 1995; 최영신, 2005; Hirschi, 1969; Patterson, 1982, 1986; Rutter & Giller, 1984).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또한 청소년기 특징 중의 하나가 부모로부터의 독립 또는 자율성 추구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감독 또는 통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행이 부모의 감독 또는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부모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내 부모와의 의사소통 형태와 부모의 관계 정도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기광도· 이희길, 2002; 김준호·김순형, 1995; 김준호 외, 1989). 비행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들이 일반 가족보다 가족 내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로 의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김순형, 1995). 이명숙·김영미(199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이 가족구조의 형태보다는 부모간의 불화 정도의 예측력이 더 높았다.

부부 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분위기와 관련 있는 변인으로 언어적 폭력 또는 언어적 학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언어적 폭력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의 빈도가 높았고, 비행시기도 빨랐다(김준호 등, 1989; 김준호·이동원, 1996).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도 청소년 비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상해 위험이 높은 폭력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준호· 이동원, 1996; 민수홍, 1998).

청소년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경우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며,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처벌을 하면서 적절한 상담과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 청소년 비행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준호 외, 1989; Barnes & Farrell, 1992).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위험요인(risk factor)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개인적·환경적 요인이고,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요인들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외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위기와 관련된 위험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정불화, 부모의 비밀관적 이거나 학대적 양육태도, 비행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부모-자녀간 불안정한 애착,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감독 소홀, 부모의 위험 행동, 가족해체, 부모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격차의 심화, 및 가족의 비행경력을 들 수 있다. 가족 관련 보호요인으로는 가족 내 정서적 유대, 부모, 형제자매의 지지, 자녀학습에 관여하는 정도, 가족에 의한 분명한 행동기준제공, 긍정적 부모관계/부부간 만족,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의 많은 대화, 및 자녀의 발달에 대한 적절한 기대 등이 있다.

다양한 위험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부적응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들 요인이 서로 독립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단일한 특정의 위험요인보다도 위험요인의 누적된 효과가 청소년의 성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Fraser, Richman, & Galinsky, 1999, 구본용 등, 2005에서 재인용).

유성경 등(1999)이 탈비행에 성공한 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비행화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였는데, 가정관련 위험요인은 가정불화, 가족구조의 결손 및 경제적 빈곤, 가족들의 비행과 정신적 문제,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이었고, 보호요인으로는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 및 올바른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전달과 약속지키기였다.

메타분석이란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이란 의미로, 낱낱의 연구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적 연구나 결과들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오성삼, 2002). 청소년 문제행동 또는 비행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메타분석한 권지은(1998)은 1988년부터 1998년 2월까지 발행된 석·박사학위 논문 250편중에서 청소년비행을 종속 비행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경험적 연구가 아닌 문헌고찰 중심이거나 단순빈도분석만 하였거나 각종 통계자료만을 활용하여 동향만을 비교한 논문을 제외한 89편을 분석하여 개인변인 13, 가정변인 12, 학교 및 사회변인 9개를 추출하고 이를 메타 분석하였다. 가정 관련 비행유발요인은 구조적 결손, 가정에 대한 불만, 가정불화, 비합리적 양육태도 및 부적절한 역할 모델링이었으며, 비행억제요인 중 가정 관련 변인은 가정생활 만족도, 가족 적응력, 가족의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관계의 친밀도, 가족 응집력, 합리적 양육태도 및 형제간 우애였다. 비행유발요인 중 가정 변인에서는 가정 불화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비행억제요인 중 가정 변인에서는 가정생활 만족도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전체 변인 중에서는 가정생활 만족도의 효과크기 평균이 가장 컸다.

(2)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을 내면화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청소년에게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써, 그리고 자아개념, 사회관 및 청소년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기능한다(김준호 외, 2003). 따라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경험이나 행동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교사에 대한 애착과 제도로서의 학교에 대한 인식 및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를 밝혔다(Hirschi, 1969; Kelly & Pink, 1973

등). 청소년이 학교에 대해 느끼는 애착과 비행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Hirschi(1969)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학교에 대한 애착이 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는 학교에 대한 애착을 학교에 대한 동일시,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등으로 측정하였는데,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애착은 학생들에게 동조에의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비행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유대감은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 및 학생개개인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신념이다(Blum & Libbey, 2004). 학교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connectedness)의 중요성²⁵⁾을 강조한 Resnick과 그의 동료들(1997)은 청소년의 삶에서 가정, 친구,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들은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미국의 132개 학교(80개의 고등학교와 나머지는 중학교)의 7학년에서 12학년의 90,000명이상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다시 추후에 조사연구를 수행한 20,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연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이 청소년의 삶에 보호요소로 작용함을 밝혔다. 즉 학교에 유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음주나 불법적인 약물복용이 적었고, 폭력행동이나 일탈행동에 덜 개입되어 있으며,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덜 경험하고 있고, 자살생각이나 시도도 적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Blum, McNeely 및 Rinehart(2002)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학교의 구성원의 하나라고 느낄 때, 문제행동에 개입할 여지가 적었으며, 정서적 안정감 수준이 높았음을 밝혔다. 또한 학교에 대한 유대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힌 Klem & Connell(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유대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에 대한 강력한 예측치였다. 즉 학교에 유대감을 느낄수록 학업성적이 더 높았다.

25) 긍정적인 유대감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Bowlby의 애착이론, 두 번째는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세 번째는 사회발달이론이다.

학교에 대한 유대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달적 요구수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청소년의 발달적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 청소년이 학교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으로, 사회적 환경과 핵심적인 발달적 요구수준이 충족될 때 학교유대감은 최대가 될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주요한 발달적 요구수준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유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성인들로부터의 관심과 지지, 발달수준에 맞는 적절한 감독 및 동료들의 수용이다(Blum & McNeely, 2002).

비행과 가장 일관된 관계를 보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인 중의 하나가 학교성적으로써, 학업성취는 측정방식에 상관없이 비행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lliot & Voss, 1974; Hirschi, 1969; Lawrence, 1985; Polk & Schafer, 1972; 김준호·노성호, 1993; 김준호·김은경, 1995),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성적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외, 1989, 김준호·노성호, 1993)

김준호 외(1989)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변인과 공부압력, 부모의 불인정, 비행친구와 접촉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을 한 결과, 공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불인정은 지위비행과 폭력비행, 재산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한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직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과 연관해서 볼 때, 공부 또는 성적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게 되는 불만족 또는 불인정은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유성경·안희정·이소래·오익수(1999)의 연구에서도 학교관련 요인 중 성적하락 또는 낮은 성적이 청소년비행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열망과 자녀의 현재 성적으로 정의되는 공부압력은 중학생의 비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의 비행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노성호, 1993).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학교 요인들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하여 보면, 먼저 위험요인으로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낮은 학업성취도/낮은 학습의욕, 학교에서의 지지부족, 또래친구의 비행(비행유대), 또래친구의 위험행동 수용, 잦은 결석 또는 전학, 교사들의 낙인/무관심, 및 학습긴장 등이 있다. 보호요인으로는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가치, 높은 성적과 학업에 대한 욕구, 교사의 관심과 지지, 책임감, 건전한 친구관계, 긍정적 학교생활, 교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가까운 친구의 존재 등이 있다.

유성경 등(1999)은 탈비행에 성공한 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한 학교관련 위험요인은 나쁜 성적과 성적의 하락, ‘노는 아이들’과의 어울림, 교사들의 낙인 및 무관심이었고, 보호요인은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 성취경험 및 진로계획, 올바른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전달 및 약속지키기 등 이었다. 특히, 부모들이 제공할 수 없었던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갖게 되는 것이 청소년들을 가족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다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은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비행을 촉발하는 환경적 위험요인들이 청소년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의 보호요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지은(1998)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비행유발요인 중 학교 및 사회 관련 변인은 비행유대, 낮은 학업성취도, 사회활동참여, 및 유해환경 접촉이었으며, 비행억제요인 중 학교 및 사회 관련 변인은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도, 교사의 지지, 사회적 유대 및 교사에 대한 애착이었다.

비행유발요인 중 학교 및 사회변인에서는 비행유대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비행억제요인 중 학교 및 사회변인에서는 학교에 대한 애착의 효

과가 가장 컸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 유발요인에서 학교 및 사회변인의 효과크기가 다른 변인군보다 크게 나타났다. 권지은(1998)은 이를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정의 사회화 기능은 상당부분 상실되었고, 이를 학교와 매스컴이 많은 부분을 대신하게 되어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3) 조사결과

(1)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 분석

가. 조사방법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을 이용하였고, 범죄이외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청소년통계’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청소년 범죄 실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2004년까지의 소년범의 발생 동향을 살펴 보았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년범죄는 2000년에 전체 범죄의 7.2%를 차지했으나, 2001년 6.4%, 2002년, 5.6%, 2003년 4.9%, 그리고 2004년 3.7%를 차지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인구 10,000명당 소년범죄자를 분석해도 감소추세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2000년 인구 10,000명당 소년범죄자수가 251명이었으나, 2002년 219명, 2003년 186명, 그리고 2004년 142명으로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2000년 이후에 전체 소

년범죄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범의 전체 범죄자에 대한 비율 중 형법범 역시 2000년 7.1%, 2001년 6.1%, 2002년 7.6%, 2003년 6.5%, 2004년 5.4%로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주요 죄명별로 보면, 2003년에는 절도 37.4%, 강도 25.8%, 공갈 14.8%,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절도 33.7%, 강도 21.6%, 공갈 16.8%의 순으로 전체 범죄자에 대한 소년범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전체 소년범죄자 중 24.5%를 차지하는데, 재학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2004년에 전체 소년범죄자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퇴자 6.4%, 졸업자 5.1%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은 전체소년범죄자 중 53.2%를 차지하는데, 고등학교 재학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전체 소년범죄자의 31.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퇴자 9.7%, 졸업자 11.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범행동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비율은 2000년 27.5%, 2001년 28%, 2002년 25.8%, 2003년 25.2%, 그리고 2004년 27.5%를 차지에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연도에 상관없이 부주의(2004년에는 11.1%), 호기심(2004년에는 1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욕 중에서는 유희비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비율이 연도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다(2004년에는 전체 소년범죄자의 4%).

다. 청소년 범죄이외의 문제행동의 실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중학생은 남녀 모두 2005년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0년 27.6%에서 2005년 15.7%까지 계속 감소하였고, 여자 고등학생도 2004년을 제외하고 2000년 10.7%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6.5%로 나타났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음주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적어도 한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평생음주율은 63%에 이르고, 그 중 중학생은 53.6%, 일반계 고등학생은 79.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때 마시는 경우나 어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한 평생음주율은 전체 47.1%, 중학생 28.5%, 일반계 고등학생은 70.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때 마시는 경우나 어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중학생은 거의 1/3정도가 음주 경험이 있으며, 고등학생은 2/3이상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때 마시는 경우나 어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한 연간음주율도 중학생의 25.1%, 일반계 고등학생 61.9%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1%에 이르러 고등학생은 거의 2/3정도가 매년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9세에서 20세미만의 가출 청소년은 18,442명에서 2003년 13,374명에 이르기까지 감소하다가 2004년 16,8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3,294명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가출 청소년은 전체 가출자 46,149명의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6,195명(46.6%), 여자 7,099명(53.4%)으로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범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노력으로 2000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구속 또는 검거되는 학생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학교폭력사범으로 검거한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불량서클 또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검찰청의 학교폭력사범검거 학생은 2003년 12,559명에서 2004년 9,923명으로,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검거 구속학생은 2003년 11,440명에서 2004년 7,880명으로 감소하였다.

라.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인한 징계 현황

절도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중 2003년 남학생 2,323명, 여학생 804명, 2004년 남학생 2,563명, 여학생 1,059명, 2005년 남학생 2,841명, 여학생 832명으로 남학생은 2003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징계 받은 학생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증가했다가 2005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은 2004년 488명에서 2005년 57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자 중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으로 징계 받은 학생 중 남학생은 2003년 106명에서 2004년 134명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 9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로 징계 받은 학생 중 남학생은 2003년 1,224명, 2004년 884명, 2005년 656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학생 역시 2003년 1,181명, 2004년 1,121명, 2005년 946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가출실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여학생의 가출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해 징계 받은 중·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2003년 1,510명, 2004년 1,445명, 2005년 1,181명으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학생은 2003년 1,175명, 2004년 1,194명, 2005년 877명으로 2003년과 2004년에는 차이가 없다가 2005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음주에 의한 징계율이 높은 편이다.

흡연에 의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03년 21,677명, 2004년 16,726명, 2005년 14,679명으로 이 역시 감소 추세에 있고, 여학생 역시 2003년 7,870명, 2004년 6,643명, 2005년 4,867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흡연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 징계 받은 학생의 수도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흡연으로 징계 받은 학생이 많으므로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매체물 소지로 인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03년 124명, 2004년 280명, 2005년 201명으로 2003년 비해 2004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2003년 177명, 2004년 191명, 2005년 223명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3년에는 중학생 4,591명, 일반계 고등학생 1,484명, 실업계 고등학생 1,694명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6,374명이 징계를 받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1,114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5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 6,301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의 수는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결과

가. 조사방법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조사에 대한 협조의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표집을 하였으며, 각 표집집단별로 중·고등학교를 각각 2~4개교씩 총 22개 학교가 무작위로 선정하여 2006년 5월 8일에서 5월 30일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집단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된 전체 표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122명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이 중 중학교는 11개 학교에서 532명이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8개 학교에서 462명이 조사되었고, 실업계 고등학교 3학교에서 128명이 조사되었다.

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먼저 지위비행 관련 문제행동을 살펴보면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94명 중 83.2%는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1,121명 중 51.2%는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1,118명 중 78.8%는 지난 1년 동안 술집출입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1,120명 중 73.7%는 지난 1년 동안 시험볼 때 커닝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1,118명 중 80.3%는 지난 1년 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1,119명 중 89.7%는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폭력비행은 1,121명 중 84.2%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1,121명 중 90.1%는 지난 1년 동안 집단패싸움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1,120명 중 94.1%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빼앗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집단 괴롭힘/따돌림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0명 중 91.0%는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1,132명 중 96.2%는 지난 1년 동안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1,122명 중 70.8%는 지난 1년 동안 채팅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재산비행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2명 중 88.7%는 지난 1년 동안 백화점이나 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1,122명 중 91.4%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성비행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17명 중 54.1%는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을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1,120명 중 91.3%는 지난 1년 동안 이성친구와 성관계의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1,119명 중 65%는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이

없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2명 중 90.9%는 지난 1년 동안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다. 가정·학교 관련 요인과 청소년 문제행동

가정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비행의 정도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에 따라 모든 비행유형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비행 경험이 많았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형편은 지위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기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느낀 자녀가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뿐만 아니라 폭력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에서도 스스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형편이 낮을수록 비행정도가 많았다. 또한 부친의 교육수준 및 모친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행이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의 비행이 적었다.

가정의 기능적 요인에 따른 비행의 정도는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정도, 및 부모 상호간의 관계에 따른 비행의 차이가 모든 유형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각각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았다. 또한 언어적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모든 유형의 비행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언어적 폭력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의 빈도가 높았다는 기존 연구(김준호 등, 1989; 김준호·이동원,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신체적 학대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당한 학생들이 지위비행의 경험만이 많았다. 이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상해 위험이 높은 폭력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들(김준호, 이동원, 1996; 민수홍, 1998)과는 달리 지위비행의 경험만 더 많았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에서는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재산비행을 제외한 지위비행, 폭력비행 및 성비행이 많았다.

학교관련 요인에 따른 비행정도는 먼저 교사에 대한 인식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폭력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에서 교사에 대한 인식점수가 낮을수록 비행이 많았다. 학교에서의 친구변인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친구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지위비행을 제외한 폭력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이 많았다. 학교에 대한 적합성에서는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모든 유형의 비행이 많았다. 부모님의 기대격차에 따라 비행에 차이는 부모님의 기대격차가 클수록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유대감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학교유대감이 낮을수록 폭력비행을 제외한 지위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 경험이 많았다.

개인관련 요인에 따른 비행정도에서 자기통제력에 따른 차이는 모든 유형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 경험이 많았다.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비행 경험이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높은 학생들보다 많았다.

다음은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 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및 학교관련 변인 중 연속변인을 통합하여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행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많았다. 앞서 각 변인별로 변량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부친의 교육수준, 모친의 교육수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 부모의 감독 및 통제, 가정통합도, 부모간의 관계, 언어적, 신체적 학대경험,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학교유대감, 자기통제력, 및 자기존중감에 따라 지위비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을 한번에 넣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자기통제력,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및 부모간의 관계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인들을 통제하면서 분석한 결과는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기통제력,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및 부모간의 관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만이 지위비행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 다른 비행 역시 변인별로 분석한 변량분석결과와 모든 변인을 모두 고려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이후에는 회귀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겠다. 폭력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재산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많았고, 성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모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 많았다.

중학생 특히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인식이 문제행동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부모 상호간의 관계 및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성별로는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은 자기통제력, 일반계 여자고등학생은 가정친밀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변인이었다. 실업계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주관적 가정형편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특히 중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함하고,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가정친밀도와 더불어 부모의 통제 및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실업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라. 가정·학교 연계교육과 요구조사 결과

평소 부모님과과의 대화는 학교급별로 모두 반 이상이 피상적으로 겉도는 이야기만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이 부모님에 가장 원하는 것으로 중학생들은 ‘신뢰와 이해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신뢰와 이해심’을 가장 원했으나,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유’를 꼽았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경제적 여유’를 가장 원했고, 다음이 ‘신뢰와 이해심’이었다. 중학생 학부모들의 13.1%, 일반계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22.7%, 실업계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34.9%가 자신들의 담임교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는 학생들이 52.7%에 이르고, 심지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무려 73.2%가 학생들의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과 학교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녀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많은 학생들이 존재하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부모님과 교사 간에 학생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 역시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중학생 60.3%, 일반계 고등학생 56%였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8.6%에 달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은 61.7%, 일반계 고등학생 55.8%, 실업계 고등학생의 44.9%는 부모님과 학교 교사간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10%내외에 그쳤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60%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78.1%,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에 79.6%가 필요하고 특히 51.4%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바, 이 결과는 학생들이 부모들과 갈등이 많다는 것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프로그램들 중에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앞의 결과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과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을 선택하였다.

학교에서 느끼는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에 대해 절반이상의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겪게 되는 문제 또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로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와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정규프로그램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 자기통제력, 갈등해결방법, 자기효능감, 효과적 의사소통방법, 효과적 문제해결방법, 효과적 의사결정방법, 공감능력증진방안, 및 스트레스대처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에 상관없이 80%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8.2%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단지 범죄에 대한 법 교육만이 전체 평균 37%정도가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이를 교육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

는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교육'에 대해 전체 학생의 77.4%,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6.6%, 일반계 고등학생의 78.3%, 실업계 고등학생의 78%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눈앞의 만족을 참을 수 있는 자기통제력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2.3%,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8.9%, 일반계 고등학생의 85.2%, 실업계 고등학생의 85.8%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5.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3.4%, 일반계 고등학생의 87.6%, 실업계 고등학생의 82.7%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77.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7.3%, 일반계 고등학생의 76.5%, 실업계 고등학생의 82.7%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0.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9.6%, 일반계 고등학생의 80.4%, 실업계 고등학생의 85.0%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1.9%,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9.0%, 일반계 고등학생의 85.9%, 실업계 고등학생의 79.5%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다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79.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8.3%, 일반계 고등학생의 80.2%, 실업계 고등학생의 82.7%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범죄란 무엇인가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63.0%,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60.2%, 일반계 고등학생의 65.4%, 실업계 고등학생의 66.1%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 증진방안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5.9%,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4.2%, 일반

계 고등학생의 89.3%, 실업계 고등학생의 80.3%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8.2%,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6.3%, 일반계 고등학생의 91.1%, 실업계 고등학생의 85.8%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빈도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급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은 학과 공부이외에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엄격하고 획일적인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3점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엄격한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입시위주학교교육, 경쟁적 인간관계, 학교상담실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엄격한 학교교칙,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학교상담실, 진로교육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엄격한 학교교칙, 학생인권보장, 학생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활동별로 살펴보면, 입시위주학교교육, 폭력서클 처리방법, 학교상담실, 경쟁적 인간관계 및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학교급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간에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엄격한 학교 교칙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면 중학생의 만족도가 유의미하였다. 특기/적성교육, 학생인권보장, 진로교육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간의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학교에서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가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Likert형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몇 가지 역할에 대한 중학생의 평가를 제외하고는 3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학생 개인의 장점을 알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생들 평가 평균은 2.45,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2.47 그리고 중학생들은 2.74점으로 나타나 매우 낮았다. 특히 각 역할에 대한 차이검증을 해 본 결과 모든 역할에 대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학교에서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학교급을 불문하고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반별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와 부모 간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교 홈페이지 및 반별 홈페이지가 있으나 이를 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이용하는 학교는 드물었다. 여전히 학교의 일방형적인 가정통신문이 주로 이용될 뿐 학교와 가정의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의 활용도는 아직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요컨대, 청소년 비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 및 개인 관련 요인들을 밝히고 이들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가족의 정서적 지지 등 지지적 가정분위기,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통제 및 감독, 그리고 학교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 및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의 탈피, 학교를 공부만을 강요하는 불쾌한 장소가 아닌 청소년기를 유익하고 폭넓게 보내며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쾌한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가정 내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처전략 훈련이나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 등을 제시하였고, 정책적으로는 사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과 지원, 청소년업무의 소관부처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이런 대책은 학교현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났다.

(3) 현행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국내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가) 국가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의 현실과 한계

전반적으로 볼 때,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과편화되면서, 정작 청소년 문제행동이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체계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청소년 정책과 연관된 국가 행정시스템은 매우 광범위하게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법체계 및 대응정책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시류에 영향을 받으면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분히 짜깁기식 또는 대증요법식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에 기인한 바 크다.

첫째,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철학과 패러다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본철학의 부재는 여러 영역 및 기관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적절한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입법적 방향(a clear legislative direction)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원칙의 명확성 부족은 국가책임의 중요성, 청소년 보호와 육성, 청소년의 특별한 요구 및 권리 등 다양한 관점과 원칙들이 상쟁할 경우, 우선성의 관점에서 실질적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최근 ‘학교폭력대책’을 둘러싼 각 기관간의

이해관계 상충 및 접근방식의 상이성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행정부처의 기능과 업무성격에 따라 정책목표가 각기 재해석되고, 관련 입법들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와 원칙들 간에 순위가 없음으로 인하여, 때론 각 부처간 관련정책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갈등적인 양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을 둘러싼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관련 NGO등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정책방안을 보면, 시각차이가 너무 커서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다기관간 실무규약(protocols)]조차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기본철학 부재의 논리적 귀결로서, 통합적인 행정조직체계 및 업무전문성의 미비가 정책추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기구의 분리, 잦은 조직개편 등으로 18개 부처에 산재한 아동·청소년 정책추진체간의 유기적 연계협력 및 체계적 정책수립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통합적인 행정조직체계의 부재는 다기관 협력 및 연계체계의 구축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업무가 중구난방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동시에 전문직 간 업무협조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지방차원에서는 전담부서의 미비 및 집행체계와의 불일치, 특히 지방의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타 분야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수행을 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 등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책을 집행할 조직이나 실무인력을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참여가 결여된 정책결정과정 및 프로그램 성격상의 한계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책결정자의 중심으로 단편적·시혜적 성격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청소년 개인에게만 초점을 둔 보호·지원프로그램은 가정 및 학교 등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시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가정 및 학교 중심의 정책방안 또는 각 영역 간 연계체계 구축방안은 상대적으로 덜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주된 이유로는 첫째, 가정과 학교라는 생활영역은 각기 전통적으로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일차적 사회화기관으로서 그 내재적 기능성과 고유한 책무 때문에, 두 영역은 이미 개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다루는 핵심기관이라는 선행적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통합적인 법체계 및 조직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관련정책 개발이 단위행정기구(국가청소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현재 ‘가정’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리고 ‘학교’ 관련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목적사업과 고유기능에 비추어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은 다소 주변적 사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가정과 학교가 예전만큼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가정과 학교 등 일차적 생활영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만들기’ 운동이 새로운 정책적 아젠다가 되었고, 또한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대한관한법률] 및 2005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5개년계획수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가정과 학교는 국가정책의 대상이자 실천의 주체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나) 가정 중심의 관련 정책의 현실과 한계

(가) 부모교육 현실과 한계 : 정책시사점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도된 대부분의 공식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이유는 청소년 비행이 부모, 또래나 친구, 학교와 교사 및 지역사회 등과의 오랜 시간에 걸친 반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일 수 있다(Ziegler, Taussig, & Black, 1992). 이에 비해 가족,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조기개입프로그램은 비행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llivan & Wilson, 1995).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행해왔던 가정·학교 연계방법은 부모와 학교간의 관계형성이나 의사소통 또는 가족에 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방문프로그램이었으나, 이 방법은 취업모나 저소득층 가정과 같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능성이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정으로 아웃리치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구조화하기 어렵고 부모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박현선·이상균, 1998).

이에 비해, 학교 내 전문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및 자녀 양육방법이나 대화방법,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 부부갈등해결 방법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되고, 자녀를 위한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가정의 교육적 기능강화를 통한 청소년기 문제예방에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가정과 학교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가정의 교육력을 지원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다(정현희 등, 1998). 즉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자녀간의 관계 역시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Clabby & Elias(1986)의 '자녀의 의사결정지도'와 같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가정의 기능적 특성을 기초로 할 때, 무엇보다도 기능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훈육방법과 의사소통방법, 문제관리 능력의 신장 및 부부갈등의 해소와 가족응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포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부모교육은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고위험군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및 위기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부모교육이 시급히 요구되는 비행 및 문제청소년의 부모들은 현재 열악한 경제상황 또는 자신도 학대의 대상이었거나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여, 부모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의 동기부여가 어려운 부모들을 어떻게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최근 영미권의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 제도를 통해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현희 등(1998)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이 개발한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의 이해, 바람직한 자녀교육관,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방법 및 기술, 문제해결방법, 자녀의 교우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지도·해결하는 방법,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대처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통제집단의 자녀들보다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 아울러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지도 뿐만 아니라 인성지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인성지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을 수 있다. 프로그램진행방법과 관련해서 볼 때, 정현희 등(1998)은 학

부모소식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학부모소식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정현희 등(1998)이 거의 10여 년 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아직도 대규모 학급, 대단위 학교가 불가피하고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정신건강을 전담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과 같이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음주, 흡연, 학교중퇴, 가출, 자살, 및 절도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학교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학교라는 장에서 이루어질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더 동질적일 수 있다. 동일한 발달단계, 동일한 학교환경, 동일한 지역사회라는 동질성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감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교라는 장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대상의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 아동학대 개입정책의 한계 : 정책시사점

제도적 상징성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위기개입 실천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정책은 주로 이미 노출된 요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되어있어, 사전예방적 대책에는 소홀하며, UN아동권리협약과 기준에 배치되는 국내 법규들의 개정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가정폭력 발생율과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높은 중복현상(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복현상이 50~6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구분하여 다루는 현행 법제도(가정폭력관련법과 아동복지

법)는 매우 행정편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증충성을 감안할 때, 아내구타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 또 다른 유형의 학대(아동학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는 개입전략과 실천과정들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 법률을 유기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형사실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가정에서 학대, 방임 또는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하여 친권을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일시 격리가 필요할 때, 이를 신속하게 강제할 규정이 없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법원에 친권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시급하게 청소년과 그 가족을 일시 격리하여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할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법원의 선고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다) 새로운 가족문화형성 정책

건강가정기본법이 2003년 12월에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 2006년 8월 현재 전국에 3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를 배치하여 아동양육, 노인부양, 부부관계, 의식주생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부모교육 및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에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새로마지플랜2010)]에서 제시된 가족정책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을 중요한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가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표명하였다. 그 주된 방향은 첫째,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완화 지원정책, 둘째, 친밀하고 평등한 가

족생활문화의 조성, 셋째, 방과 후 아카데미(공부방) 등 일과 가정 양립의 환경조성에 있다. 전반적으로 그 방향은 ‘가정’의 약화된 보호기능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가족단위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가족단위 여가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친밀한 가족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가족유형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가족문제 유형별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인력 양성과 서비스를 연계 구축한다. 둘째, 가족단위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형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문화예술체험, 생태체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여가 활성화를 지원한다. 셋째,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의 도서관, 학교, 박물관 등을 부모와 자녀, 이웃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가족친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마을 인증체계 마련 및 홍보를 강화한다.

(3) 학교 중심의 관련 정책의 현실과 한계

가.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현실과 한계 : 정책 시사점

새로운 법제와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폭력 문제의 실체나 대응방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²⁶⁾

26) 현행 학교폭력 대응정책에 관한 주요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2004), 학교폭력대책국민운동추진을 위한 단체위크샷 자료집;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및 국회좋은교육연구회(2005),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자료집;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2005),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100인 토론회 자료집;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2005), 학교폭력 위기관리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박효정(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5),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 세미나 자료집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①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사건처리보다는 학교의 이미지를 걱정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폭력책임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직함뿐이며, 기존의 학생 선도업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전문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법 시행이후 2004년도에 학생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 통계(교육인적자원부 국회자료 통계)를 보면, 총 7,488건이 발생하였는데,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건수는 6,374건이고, 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한 건수는 1,114건이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시행한 건수는 224건(조정성공 199건, 실패 27건)에 불과했다.

② 또한 새로운 법에 의해 마련된 자치위원회 역시 제대로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거나 폭력사고 뒷수습 위주로 운영되어 그 효과성이 의심스럽다. 학교별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권이 교장에게 있고,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교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위원선정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가급적 지역사회로의 열린 자치이념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학생대표의 참여 및 지역사회의 전문가 개입이 실질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예방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 현행법에는 학교폭력을 위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규교과와 같이 연령별 또는 교급별로 그 수업시수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고, 전교생을 한 강당에 모아놓고 반기에 한번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종례시간에 TV모니터를 통한 교장선생님의 훈화나 지역경찰관의 1시간짜리 교육으로 실시한 사례가 많다. 2004년 하반기 전국의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 실시 현황(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회의 예방교육만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학교가 경기도(국정감사 시 불법적 징계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가장 심한 지역)의 경우가 1,768학교 중 827개(46.8%)나 되고, 서울은 1,210개 학교 중 526(43.4%)개를 비롯하여 전국 10,580개중 4952개(46.8%)가 일회성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④ 경찰의 대처에 있어서도 피해자 신변안전 보장 없이 훈방조치하거나

또는 무리한 기획수사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등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는 등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⑤ 사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현행법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기대하고 수사착수를 미뤘다가 극장대응 혹은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당초 사실관계는 사소한 사건이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되면서, 커다란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물론 수사가 개시된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증거나 증언이 분명치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폭력’으로 사법 처리되기도 하고, 증거나 증언이 없는 경우엔 가해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사건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학교폭력의 성격상 왕따나 집단괴롭힘과 같이 장기지속적 속성 때문에 사실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심각하지만, 현행법상 당해사건 중심의 사법과정에서는 특징화된 외상(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다소 경미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보복위험 등 신변안전이 고려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⑥ 현행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연계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할 각 부처들이 각기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과 이해방식이 달라, 청소년인권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협조와 공동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 문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한 한국청소년상담원(2005)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 연계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정부부처만도 8개 부처가 있지만, 활동내용과 목표가 상이하며 산발적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안처리에 불필요한 중복과정을 발생시키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학교폭력 현상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각 차이는 예방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

지는 않았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각 부모,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교장, 교육청 장학사, 상담자, 시민단체 등 각자의 입장에서 매우 다른 접근을 보였으며, 때로는 침례하게 대답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특히 학교의 자율적 조사부분에서 침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었다. 사건발생시 학교와 교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지게 되어 있는 현 구조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간극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폭력대책법에 의해, 사안처리를 위한 자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기획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곳은 각 지역사회이다. 실제 정책수행과정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학교폭력은 신체적·심리적·환경적·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시급하지만, 현재 각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 차이,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차이 때문에 연계가 미약하며, 연계기관 간의 정보교류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셋째, 설사 연계되었다고 해도, 연계관련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할이나 연계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형식적 연계에 그치고 있다. 각 기관들은 연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연계방법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에서 예산과 인력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간 연계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⑦ 현행 학교폭력 대응과정에서 실효적 조치를 가로막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바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내재한 입법구조상의 딜레마와 한계에 기인한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입법구조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원칙과 패러다임의 불명확성과 혼란이다. 학교폭력의 문제영역은 단순한 사법모델이나 교육모델 또는 복지모델 중 어느 하나로 선택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미묘한 쟁점들이 얽혀 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은 예전과는 달리 교육과 사법, 그리고 복지행정의 다차원적인 연계협력망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접근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새로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다기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막연한 공감대만 있었을 뿐,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철학과 입법원칙(패러다임)을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하여, 새로이 마련된 법은 여러 영역 및 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정책의 적절한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입법방향(a clear legislative direction)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법원칙의 명확성 부족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 특별한 요구 및 권리 등 다양한 관점과 원칙들이 상충할 경우, 우선성의 관점에서 실질적 안내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선진 각국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community)의 열린 기반으로서 '학교'라는 공론의 장에서 지역민 및 학생(이해관련자)의 '참여와 자치의 원리'로 접근하도록 법제도적 바탕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현행 법 및 시행령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치'라는 대원칙들은 사라지고, 각급 교육행정 기관장들의 책무만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마치 기존에 사법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는 폭력사안들을 잠시 유예, 먼저 학교교육의 영역에서 해결해보도록 학교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절차화 되면서, 오히려 사법모델과 교육모델간의 긴장과 딜레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²⁷⁾

27) 어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교육영역의 확장' 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내용은 조병인 외(200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이나 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칙에 따라서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하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학교에 부여된 책임을 다 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됨으로써 교육당국과 일선학교들이 학교폭력의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교육당국과 일선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늘어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당국의 영역확장이 형사정책이나 사법기관의 관

둘째, 입법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부재이다. 학교폭력 입법목적은 제1조에 제시되어 있듯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제1조)’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i) 피해자 보호, ii) 가해학생 선도교육, iii)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인권보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패러다임 부재, 그리고 관련 시행령 및 유효수단 결여 등으로 시행단계에서는 본 법이 실제적인 힘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피해학생 보호의 목표에서 볼 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는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단 한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하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실제 2004년 하반기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심리상담 조언이 4,158건, 일시보호 111건, 치료요양 85건, 학급교체 10건, 전학권고 119건, 기타조치 227건 등으로 나타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국회요구자료). 이 가운데, ‘전학’이 가해자조치라기 보다는 피해자보호조치로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정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왜 피해자가 환경변화 및 새로운 적응의 부담을 져야 하는가? 또한 현행 법 및 시행령의 규정으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의 조치는 유명무실한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다. 이 이유는 현재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비의 확보문제가 큰 걸림돌이

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을 교육차원에서 처리하더라도 사법권(국가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을 교육정책으로 다루더라도 ‘폭력행위’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상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폭력으로 규정된 포함된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사입건 및 처리의무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 처리과정에서 만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소년사법이 이중적으로 다루게 될 경우, 복잡한 법률적·현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되고 있다.²⁸⁾ 따라서 바람직한 방안으로서 일단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추후 가해학생 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규정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일시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시보호시설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박병식, 2005).

ii)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목표에서 볼 때, 앞서 피해학생 보호목표와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시행절차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으며, 이와 더불어 법에 제시된 조치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선도 및 교육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 최근, 기본계획은 일부 지방검찰에서 실시 중인 [소년분류심사원 특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나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 조건부 선고유예제도]의 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러한 교육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더욱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제공기관과의 실질적 연계협력체계가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어서, 학교중심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인권 보호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분쟁조정을 이끄는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규정들이 과연 학생인권 보호라는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일단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이 맡도록 규정된 것도 어색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정(대안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담당하기에 현행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도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자치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의 기본원칙과 절차에 관한 지침서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설부른 조정이나 개입은 오히려 문제양상을

28) 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거덜난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학교에 비용부담 책임이 넘어갈 경우, 학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치료요양’ 프로그램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헌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권(국가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을 교육정책으로 다루더라도 ‘폭력행위’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상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학교폭력으로 규정된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사입건 및 처리의무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우선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여러 조항들을 비롯하여,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소년법상의 여러 규정들로 접근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의무교육자는 제외)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간주하면, 이들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 9(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현행법에는 중앙과 단위학교에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기획위원회와 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중앙과 개별 단위학교 및 단위학교들 사이를 매

개하거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관련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가 없다. 학교폭력은 단지 가정과 학교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및 사법체계가 공동으로 대응협력을 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현행법에는 전문기관의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시행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기획위원회나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법실무가들의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 장치가 미약하고 지역단체의 책임이 없어, 실효성 있는 개입이 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대응하기 위한 연계체계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열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갖추으로써, 지역사회와 학생의 참여와 자치 패러다임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²⁹⁾

나. 학교 상담제도 정책의 현실과 한계: 정책 시사점

가) 우리나라 학교상담제도의 도입과 좌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학생상담은 지나치게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보다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상담실로 불러 해결하려는 문제학생 위주의 상담이 주된 활동이다. 그러다보니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학생은 상담실이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²⁹⁾ 이 방안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대해 시장 및 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지우고 있으며, 여성부장관의 권한을 상담부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법률과의 연계 및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구성에 교육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관련 청소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위원장에는 교육감이 아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주호, 2005:24).

선생님에게 혼나는 곳 또는 훈계 듣는 곳으로 인식되어 상담실 방문을 극히 꺼리는 실정이며, 상담실 출입경험은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제도상으로도 교육현장에 학교상담제도가 도입된 지 약 50년이 되었고, 상담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개선에 따라 교육정책 입안자나 학교운영책임자들은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학교상담 역사의 시작점인 1950년대 후반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교도교사제도가 학교상담제도로 발전되지 못하고, 1997년 IMF위기에 직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이유를 연문희(200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교도교사 연수에 추천되는 교사들의 적성과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교도교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천되는 교사들은 진급에 관련된 50대중후반의 나이 많은 교사들이거나, 적성에 관계없이 추천받은 교사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둘째, 교도교사 연수교육 과정의 문제점이다. 240시간 연수 중에서 상담과 생활지도에 관한 것은 180시간이었는데, 연수내용은 상담과 생활지도에 관한 단편적 교과목의 나열이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 상담교사가 양성되지 못하였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시행하는 연수과정에 우수한 강사자원 확보가 어려웠다. 넷째, 학교행정책임자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주지주의 교육, 상급학교 입학시험 준비로 점수경쟁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점수에만 집중하여 학생들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조장하는 생활지도와 상담에는 소홀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아중심으로 생활지도와 상담을 해왔으므로, 교도교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훈육지도에 그치는 예가 많았다(황순길 외, 2005. 재인용; 연문희, 2003).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중심 상담망 구축사업의 한계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비등해지면서, 학교상담제도의 활성화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상 [학교중심 상담망 구축]은 중요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지역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각급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의거, 2005년 현재 182개 지역교육청에 308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두 충원하지 못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 201명과 기간제 교사 107명으로 충원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또한 임용되더라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담당해야 할 학교 수가 평균 40개가량 되는 상황이어서, 전문적인 학교상담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을 보면, 상담인력으로 전문순회상담교사 이외에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학교 순회 청소년상담사 활용과 더불어 청소년 또래상담의 활성화까지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다양한 지역자원들이 학교상담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교육부 차원의 한계를 인식한 일각에서는 외부의 상담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1991년 제정 후 2004년 2월에 대폭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2005년 2월부터 시행될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은 청소년상담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청소년관련 시설에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24조에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청

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청소년상담사들이 학교 및 청소년 상담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는 ‘각급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학교상담사를 채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청소년상담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근거한 전문상담순회교사와는 차이점이 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담당지역의 학교를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에 비해, 학교청소년상담사는 단일학교에만 배속되어 있어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용이하고 학생의 인성계발과 문제예방이라는 폭넓은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학교청소년상담사제도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제도를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상담전문가인 청소년상담사를 배치, 활용하되 학교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교사(진로상담부장, 학생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및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공동 활동을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황순길 외, 2005).

학교사회복지사의 활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8년 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을 지원받아 학교에 상담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고,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16개 시·도에 초·중·고교 1개교씩 48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98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5).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개발한 [학교청소년상담사 활동모형]을 토대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에 걸쳐 [학교청소년상담사 시범운영사업]은 전국 5개 지역 10개 중학교에서 시행된 바 있다. 이 활동모형이 개발된 배경은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업중단, 자살 등 청소년 문제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하여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상담 틀로는 학생 문제행동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학교상담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학교상담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다) 반성과 시사점

(가) 상담 전문인력의 확충 :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행정 담당자와 학생 지도 담당자의 업무가 일반교과담당교사와 구분되어 상담전문인력이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일반교과담당교사가 담임교사도 겸하며, 교과지도와 더불어 학생지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상담전문인력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부실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상담인력이 학생지도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체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지속적인 학생관리체제의 구축 : 미국의 경우 1학년 때 담당 상담자가 3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을 담당하고,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생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체계적인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년별로 상담자가 담당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정보와 지도권한을 담임에게 부탁해서 얻는 수준이 아니라, 교사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학교상담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학교폭력 및 부등교 예방을 위해 스쿨카운슬러 연구위탁사업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스쿨카운슬러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가에서는 연구사업이 종료된 2001년 이후에도 스쿨카운슬러 사업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가 학생상담활동의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 국

가적으로 스쿨카운슬러 제도가 확대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상담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보다는 학교 밖(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학교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청소년상담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의 성공적 제도 정착을 참고하여 국가차원의 비용보조를 통해, 학교상담정책이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학교상담활동의 체계적 기준 마련 : 스쿨카운슬러의 실제 활동에 있어서 교사, 학생, 보호자뿐만 아니라 타기관 및 지역자원에 대해 신뢰관계 형성에서부터 위기개입에 이르기까지 각 활동별 요강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스쿨카운슬러 부임이전에서부터 협의단계, 부임초기, 안정기, 발전기 등의 모든 활동단계별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학교상담이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학교에서의 상담전문가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학교 안에서의 전문적 활동 또한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매우 가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기준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다. 교칙 및 규율체계와 학생인권정책의 현실과 한계

현재 학생인권의 주요 쟁점들은 학생체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학습자율결정권 등이 있다. 학생의 학교운영참여 및 정치활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UN등 국내외적 비판이 잇따르자, 2003년 2월 교육부는 '인권존중, 자율, 책임 풍토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계획', '2004 공교육 내실화 대책' 등을 통해 학생생활규정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일선학교의 교칙이 청소년인권기준

에 맞게 변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들 인권을 제약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도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학교폭력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 중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중 인권침해가능 부분 등에 대한 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인권침해 가능부분을 민주적으로 개정한 학교는 2003년 54.8%, 2004년에는 67.3%, 그리고 2005년에는 전체학교의 90%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나, 실제 교칙개정이 학생인권 신장에 얼마나 개선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은 체벌을 하나의 징계수단으로서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항(「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유보단서를 근거로 체벌 인정)과 그에 따라 교칙 및 학생생활지도 규칙에 합법적 체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규율체계이다. 1998년 8월 초·중등교육법 제정당시 한국의 입법 및 행정적 입장은 「체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제정하였고, 체벌의 정당성 문제를 「적정절차」 논쟁으로 귀결시켰다. 이러한 타협적 결론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체벌을 처벌(징계)의 한 범주로 제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다른 하나는 그 정당화 기초를 사실적 준거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사회윤리적 척도에 근거함으로써, 인권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치환시켰다.

체벌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보장」, 「의사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체벌은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이 보장하고 있는 제반 권리, 즉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2조),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제12조),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6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제19조),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8조 2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의 정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29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37조)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는 ‘교육’의 이름 아래에서 은폐되거나 조작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체벌 불가피론’에는 교육상 ‘필요악’ 또는 ‘교권 존중론’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여기에서 ‘교권’은 ‘교사의 권위’ 또는 ‘교사의 권한’ 또는 ‘교사의 권리’ 등 매우 다양한 함의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체벌불가피론 전면에 드러난 ‘교권’의 쟁점은 ‘그렇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 교사 권위의 실추’였다. 교사입장에서 보면, 체벌은 적어도 학생들에게 권위존중을 위한 궁극적인 위협요소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권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체벌권이었다는 비(반)교육적 역설이 성립된다. 결국 권위의 원천을 너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체벌을 여전히 ‘교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또 다른 한편에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잘못된 대립구도에서 비롯된다. 체벌을 교사와 학생간의 권리상충 또는 권리대립으로 파악하는 것은 교사의 권한을 교사의 권리 또는 특권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 즉, 체벌불가피성을 교권수호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위험적 발상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마치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반인권적 사고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학교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사회제도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평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현실은 학교규모의 거대화, 교실의 과밀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등 제 변수 간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학교라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을 주입식 교육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체벌은 불가피하고 효과적인 교육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통념’은 스스로 한국의 비인권적, 비인

간적 교육현실을 인정하는 역설에 빠진다. 명목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적인 교육내용(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상호작용 및 제도운영 등 교육형식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조영달, 1998 참조), 학교현장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폭력이 일상화되는 반인권적 현상이 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현상의 심층실태를 보면, ‘교사체벌’이 학교폭력 발생기제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체벌의 일차적인 목적은 ‘교육’보다는 ‘통제’에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체벌은 오늘날 더 이상 교육적 효과를 지니지 않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그것은 오히려 권위주의적 통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으로 간주된다(김은경, 2000). 오늘날 체벌의 실상은 결코 허용여부의 원리적 쟁점에서 보아서도 안 되고, 더욱이 ‘교권 논쟁’과 연결시켜서도 안 된다. 또한 체벌의 실체는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전통’의 문제도 아니며 또한 교사집단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자들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 교육자는 국민으로부터 교육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것이다. 이제는 학생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즉 ‘교육자의 때릴 권한’보다 ‘아동의 안 맞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진 각국의 노력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자치법』의 제정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자치법이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006년 3월 8일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명칭으로 ‘초·중·등교육법’의 인권·자치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다. 학생인권·자치법의 법제화는 학생들이 인권과 자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학생회법제화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부당함을 알리고, 학생인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자치법』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2006년 8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2006년 9월 18일자 한겨레신문).

(2) 외국의 주요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가. 회복적 소년사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1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년사법체계의 철학적 배경은 응보적인 형사사법(punitive criminal justice)으로부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으로 일대 전환을 이루고 있다. 소년사법의 역사를 볼 때, 형사법 체계에서 ‘청소년보호이념’에 따라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다루는 ‘소년사법’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소년사법체계를 둘러싸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 ‘복지모델(welfare model)’³⁰⁾과 ‘사법모델(justice model)’³¹⁾이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원칙이지만 이를 종합하고 절충하여, ‘복지와 사법사이의 균형(welfare-justice balance)’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Walgrave, 1998).³²⁾

30) 일반형사제도와 구분되는 소년사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관점이 바로 ‘복지모델’로서, ‘청소년보호’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미성년자의 특성을 감안,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 견지에서 형벌보다는 필요(needs)에 부응한 처우에 초점을 둠으로써 청소년범죄자들을 교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러한 접근모델에서는 응보적(처벌적) 성격은 사라져 버리고, 도구주의적인 재활적 접근이 우세하게 된다.

31) ‘사법모델’의 기본 관점은 소년범죄자들을 처우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와 비례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모델’은 첫째로 비행은 저지른 청소년들을 다룸에 있어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범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범죄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도 소홀하다는 것이다.

32) 사실상 두 가지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타협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처벌’은 과거의 사실(범죄)에 관련된 것이며, 범죄란 개입과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근거이고, 합법성과 비례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교육적 ‘처우’란 미래의 대상, 즉 독립적이고 동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처우는 위반행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needs)에 연결되며, 이것은 법률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결

오늘날 선진 각국은 ‘회복적 사법’이념이 제시한 새로운 대응모델에서 ‘복지-사법 균형’의 딜레마로부터 탈출가능성을 모색하는 추세이다. 많은 범죄학 연구결과 및 미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형벌의 양과 강도를 늘려서 범죄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비효과적이다. 최근 등장한 ‘회복적 사법’모델은 전통적 제재 그 자체에 비해 처벌목적 및 피해자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제3의 길’로서 제시된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처벌모델로의 회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지역사회제재(community punishment)’,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 각종 ‘서클(circles)’등이 그것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미,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등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제도적 실천방향과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공통적인 주요 특징과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작동기반으로서 지역사회 ‘위탁(referral)’중심으로 제도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패러다임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교정철학으로 등장한 치료법리학(therapeutic jurisprudence)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한 단순하고 획일적 처우(treatment)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needs)에 맞게 적절한 처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소년범죄자 처우의 원칙과 철학을 내세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처우(treatment)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법적으로 감독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결망 속에서 해당문제에 관한 해결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에게 비행·일탈청소년을 위탁, 재활치료를 전담케 하는 지역사회 다이버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제도화는 추세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 일반적으로 형법과 교육적 원칙간의 조합은 두 시스템의 단점만을 혼합한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은 후퇴하였고, 교육적 질과 효과 역시 의심스럽다. 지난 세기동안 이와 같은 비판들은 ‘처우와 처벌’ 선택에 다양한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과연, 민주적 헌법국가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복지적 이익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www.afk.dk/eng98/juvenile.htm 참조).

비행청소년들을 주로 보안중심으로 단순감독이나 수용처우로 접근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최근 개혁된 선진 각국의 소년사법정책은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다기관 협력체계(multi 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1980년 후반부터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청소년 범죄에 작용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역사회내의 여러 관계기관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여가시설,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하고, 서비스전달 능력향상을 위한 체계적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의 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은 ‘상황적 전략’ 또는 ‘통합적 예방전략’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가정요인을 강조하지만, 직접 개입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요인, 학업, 또래요인 등 일상적 삶의 연결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중시하여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존중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소수집단의 결손을 보완하고 상황적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지원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각국은 비행범죄청소년에 대한 종합전략을 구성, 각 개인의 문제 행동 정도와 필요(needs)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처우가 개발되고 있다. 종합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과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그리고 사후관리(After Care)를 목표로 구조화되어 있다. 즉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적 복지 지원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비행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프

로그래밍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지는 방식으로 누진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부모책임법제’의 등장

서구에서는 최근 학교총기난사사건 등 청소년 문제행동 양상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법, 그리고 새로운 개입전략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law)’을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입법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모책임법’은 문제아이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론 및 경험연구결과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비행과 가족(특히 부적절한 양육)의 상관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모책임법은 자녀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심리과정에 부모의 의무적 참여, 심리비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 피해배상을 위한 금전적 책임, 처우비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 및 기타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부모의 의무적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의 의무적 참여, 사회봉사명령, 벌금이나 구금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 흔히 ‘부모교육(자녀양육)명령(parenting order)’이라고 부르는 제도이다. 부모교육명령은 비행청소년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서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에 참가할 의무를 부여하는 일종의 사법명령이다.

미국은 가장 포괄적인 영역에서 부모책임법을 시행하는 국가로서 자녀의 비행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소년법원에서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처분집행과정

에 의무적인 부모참여를 규정하는 법제가 있다.

영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부모책임이 화두가 된 것은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을 통해서이다. 새로 제정된 ‘범죄 및 질서위반법’ 중 직접적으로 비행청소년의 부모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자녀양육협약(parenting contract)’와 ‘자녀양육명령(parenting order)’은 비행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무현장에서도 강제적인 부모교육명령의 법제화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4년 7월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소년가정보호분과에서는 새로운 보호처분유형으로서 ‘부모교육명령’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비록 부모교육명령이 좋은 의도와 목표를 지향한다고 해도, 강제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그 좋은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고, 부모책임법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론적, 법리적,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³³⁾ 따라서 부모를 위한 양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예방적 성격으로 ‘의무’가 아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제도도입의 형식과 절차,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다. 부모가정 상담 및 교육지원의 강화

청소년 문제행동 및 비행과 관련하여 가정 및 학교요인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처방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특히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33) 법리적으로 볼 때, 부모책임법제는 자녀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부모를 처벌하는 것은 개별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자녀의 비행 자체를 부모의 유죄인정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며, 광범위한 법규정은 자의적 또는 차별적 법시행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비관론자들은 이 법제들이 복지예산이 감축되면서 범죄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상징입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소년 비행 또는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도덕적·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효율적인 선도와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도 사회사업적 개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중심프로그램이나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과 범죄에 대한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위기청소년 관련 지원책을 보면 위기결과 단계에 있는 범죄,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3차적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시켜 가고, 가출과 같은 위기행동 수준에 있는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건전한 생활습관 길들이기 프로그램, 취업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청소년이 심각한 문제와 범죄로 들어가기 전에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생활기술, 가치관 함양 등을 도모함으로써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 학교폭력 대응정책 및 방안의 시사점

각국(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대처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박효정 외, 2005). 첫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의 처리보다 사전예방활동 및 예방교육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준이 명확하고, 다기관 연계를 위한 실무지침과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회복적 사법실천(가령 가족집단회의 혹은 피해

자-가해자조정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활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4) 정책제언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통제라는 정책목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 환경의 조성,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지원 체계구성 등을 통하여 적절한 개입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가정 및 학교 중심의 문제행동 예방과 억제를 위한 효과적 정책방향과 개선방안들을 정리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소년사법에 대한 기본 철학의 확립

범국가적 차원에서 소년사법의 기본철학과 패러다임을 공유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은 국가의 ‘소년사법(juvenile justice)’의 원칙과 목표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정하는 일과 직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대응모델이 상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법모델(justice model)’과 ‘복지모델(welfare model)’, 그리고 ‘교육모델(educational model)’ 간의 대립이다. 각 모델 모두 ‘소년보호이념’이란 개념 자체는 공유하고 있지만, 각 행정영역별 기능과 성격에 따라 ‘보호’의 원칙과 목표는 전혀 달리 해석되고 있다. 그 결과, ‘소년보호이념’하에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은 후퇴하였고, 청소년의 필요(needs)에 부응한 처우와 지원을 강조하지만, 실제 처분의 교육적 질이나 지원개입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필요에 대응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최근 ‘학교폭력’대응을 위한 다기관 연계체계 형성의 어려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복지모델과 사법모델간의 긴장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가이념과 철학을 세우고, 우선성의 관점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각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입법

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우리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모델 속에서 비행청소년 재화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주요 원칙들의 상징적인 재통합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21세기 이후 선진 각국은 소년사법체계내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 특히 「사법외적 조치들(Extrajudicial Measures)」³⁴⁾을 중요한 ‘소년사법’ 절차과정으로 제도화시키는 개혁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김은경, 2004) 선진 각국들의 경험은 「사법외적 조치들」이 덜 심각한 청소년범죄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새로운 소년사법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는 덜 심각한 청소년비행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비사법적 대응(non-court response)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s)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다양한 다이버전 조치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대안적 조치의 적절한 이용, 유형(type) 및 각각의 적절한 대상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각 영역별로 다양한 조직과 시설들이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다루는 데 활동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기관이 수행주체가 되어,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법적 근거 하에 어떠한 방식(강제적 처우 또는 임의적 지원)으로 개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구체화된 입법지침이 없다. 외국의 경험들에 따르면, 만일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이 사법절차 밖에서 이루어질 때는, 보다 강력한 입법적 지침(stronger legislative direction)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34) ‘사법외적 조치들’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① 피해자 및 공동체에게 야기된 해악의 회복, ② 피해자에게 결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③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한 조치 ④ 가족,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다른 성원들의 참여 등 ‘회복적 사법’이라는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부각시키고 있다.

(2) 가정 및 학교에서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관련법·제도의 개선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위기개입을 위해서는 부모역할 및 가정기능, 학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개입이 적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소년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과 관련된 근거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통합법률 또는 유기적인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수혜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 이기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예산정책 및 평가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단위에서 청소년보호 및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①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 : 기본적으로 소년법은 입법원칙과 가치우선성을 분명히 하고, 회복적 사법 실행을 위한 이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요구된다.³⁵⁾ 새로운 소년사법모델을 위한 통일적 원칙과 철학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균형적·회복적 사법(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개념들과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은 소년사법담당자만으로 기능할 수 없고,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지원체계와의 파트너십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요구한다. 회복적 가치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학교, 기업 및 변호사, 청소년육성관련그룹과 같은 사회화기관에게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⁶⁾

35) 현행법에서도 회복적 사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토대일 뿐이다. 현행 법규정 하에서 회복적 실천은 내재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화해중재’ 해결책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처벌(처우)의 기능에 종속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적 사법철학이 형사사법담당자에게 잘못 전달될 위험성도 높다. 즉 현행법 하에서 회복적 실천은 마치 형사사법담당자들을 위한 ‘도구’ 처럼 인지하도록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필요성 : 이 법률은 이미 위기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발달 경로로 들어선 비행청소년 보다는 위기전조나 위기표식 단계 및 위험행동을 하고 있는 위기청소년(특별청소년)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일종의 예방적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의 필요에 대응한 지원으로 주로 상담, 교육,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수행주체는 국가 및 지자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 단체가 위탁받아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세부조항이 없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6조)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제15조 ‘교육적 선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은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체계간의 연결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위탁(referral)’³⁷⁾을 통하여 사법외적 제재(Extrajudicial Sanctions)의 실질적 시행이 가능토록 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 및 민간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제5장 ‘교육적 선도’의 전면개정이 요구된다. 청소년 인권과 복지가 강조되는 21세기 정책 비전과 목표에 비추어 볼

36)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중년 소년법의 주요 개정방향 소년사법 기본방향으로서 균형·회복적 사법 도입 전제하고 있다. 균형·회복적(the balanced and restorative) 사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간청소년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의 법제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37) ‘위탁(referral)’이란 사법기관이 소년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가령 캐나다 소년사법(YCJA) 제6조 제1항 사법경찰은 청소년을 사법처리하는 대신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년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됨. 위탁은 오락프로그램, 상담기관, 아동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경찰조사단계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강제된 위탁동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을 이용하기 전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 변호인 선임권 및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때, ‘교육적 선도’라는 용어규정은 새로운 시대적 이념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안적 용어(개념)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³⁸⁾ 그 대안으로서 21세기 소년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염두에 두어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과의 연관성을 담아 ‘회복적 보호지원’이라는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복적 보호지원’의 장은 바로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전환처우 또는 중간처우를 위한 실행 인프라(infra)를 규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는 12세미만의 아동범죄자 및 조발 비행자를 적절하게 처우할 수 없는 현행 소년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행 소년법 처우시스템이 소위 ‘위기개입과 관리’라는 이념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비행.범죄청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처우의 차별화와 누적적 제재의 원칙하에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복지지원 네트워크가 종합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게 제도적인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아동복지법의 개정 : 아동학대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 친권이 제한되어야 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일시 격리가 필요할 때, 이를 신속하게 강제할 규정이 없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법원에 친권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시급하게 청소년과 그 가족을 일시 격리하여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할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법원의 선고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

38) ‘교육적 선도’는 기본적으로 어의상 동어반복적이다. 또한 ‘선도(先導)’란 용어는 오늘날 어느 법령이나 규칙에서도 그 개념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관행적으로 실무에서 통용된 용어에 불과하다. 즉 선도조건부 다이버전 혹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어원이 일제시대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잔재로서 인식됨에 따라, 지난 90년대 중반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선도위원’이란 제도의 명칭을 바꾸어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바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 학생인권 원칙에 부응하여 최소한 직접적 체벌(물리적 체벌)의 금지원칙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근대적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체벌(때리는 행위)을 정당한 교육행위로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리적 차원에서 볼 때,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교사의 폭행이나 상해는 허용될 수 없다(이재상, 1999; 김일수, 1998). 체벌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교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 장이다. 따라서 학교의 규율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원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비합리적 규율 및 재량권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판례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판례들은 ‘학교가 학생권리를 제한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규율의 내용이 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에 주목한다.³⁹⁾ 학교라고 해서 전체주의의 아성이 될 수 없으며, 학생도 헌법상의 권리주체임을 확인하는 법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훈계와 벌, 지도와 징계 등을 통한 규율과정은 필수적이다. 훈육과 학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하며, 규율의 형식과 내용은 시대정신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벌 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이 근대적·헌법적 인간의 형성에 있다면, 교사의 징

39) 즉 ‘① 교문 앞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 특히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보호권, 자의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유보할 수 없으며, ②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학습분위기와 다른 학생들의 안정을 방해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 하에서만 가능하다. 'Massie v. Henry(1972)', 'Ferrell v. Dahas Independent School', 'People v. Bowers(1973)', 'New Jersey v. T.L.O(1985)', 'Tinker v. Desminon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1969)' 등이 학생권리와 규율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계방법도 역시 근대적 교육목적과 가치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 『학생인권·자치법』 제정 필요성: 『학생인권·자치법』 제정이 지니는 의미는 학교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폐쇄성을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학급회가 법적 기구가 되면 학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학교자치의 기초단위로서의 학급 자치가 안정되면 학생들이 자치와 협동의 원리를 익히면서 민주적 시민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이 공개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길은 학급에서부터 학년(학급간)-학교로 이어지는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다. 체벌문제나, 학교폭력, 금전비리, 파행적 입시교육 등 교육문화나 정책, 체제에 이르기까지 이 구조 안에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도 갖게 된다. 이것은 헌법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러 가지 권고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구조를 비판하고 법률이 지니는 의미를 새롭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계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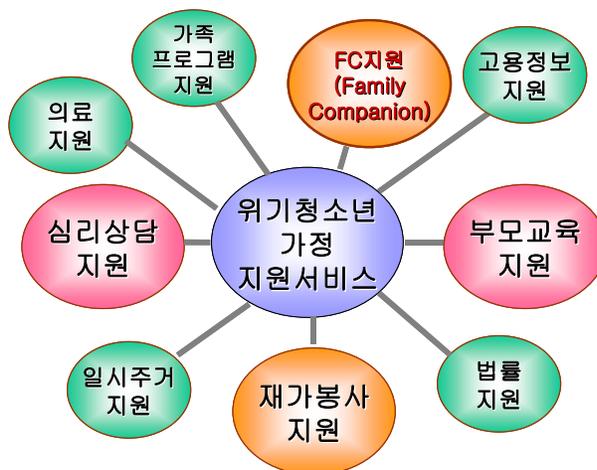
셋째, 구조화된 입시체제를 해체하고 진정한 교육권을 실현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과 교사의 진정한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학교 밖의 청소년 복지 등 제도·정책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진정한 의미의 인권교육이 학교에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인권교육은 개정 법률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실질적 인권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복지·학교환경과 입시환경의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3) 부모·가정에 대한 개입방향과 전달체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가족 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원내용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이혼이나 경제적 갈등에 의한 가정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 부적절한 양육방식 및 부부갈등이 청소년을 위기에 몰아넣는 데 기여하는 가정적 요인들이다. 이러한 가정적 요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지원이 바로 가정·부모중심의 지원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약화된 가정기능을 회복시키는 지원, 어려운 가정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의 자문과 지원, 부모들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교정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부부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상담과 같은 지원들이 포함된다. 즉 심리·정서적 지지와 심리상담, 부모교육, 경제적 지원 및 가사도우미 등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V-1과 같다. 주황과 붉은 색으로 그려진 지원들은 가정에서 우선 요구되는 지원들이고 초록은 2차적 지원에 속한다. 붉은 색은 지역의 상담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가정동반자와 재가자원봉사자 지원은 지역의 사회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구분용 외, 2005참조).



<그림 IV-1>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의 종류

①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 문제청소년 가정의 부모는 우선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들은 현재의 열악한 경제 상황 뿐 아니라 자신도 어릴 때부터 학대의 대상이거나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이고 건강한, 생산적인 부모역할을 관찰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들에게 인간의 심리적 특성, 발달 특성을 비롯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서적 교류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은 각각 해결해야 할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응집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실제 학교폭력 문제해결방안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부모교육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부모들에게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가정기능을 정상화하고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 부모들의 교육기회 및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 등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나 경제적 빈곤이 주요인이라기보다는 가정의 무관심,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방식 및 폭력 등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그 예방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연1회라도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서 부모들이 관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 부모교육은 의사소통 훈련, 훈육 및 부모-자녀 관계개선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문제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특별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및 사법기관(경찰, 법원 및 보호관찰소) 등의 연계망 속에서 지역관련기관이 찾아가는 부모특별교육, 또는 호출하여 상담실에서 개별적,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부모교육명령’과 같은 제도를 우리의 법제도속에서 어떻게 절차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모특별교육에는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 개선교육, 이혼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이 있고, 청소년의 위기문제에 따라 가출 청소년 가정, 인터넷 중독 청소년 가정, 폭력 청소년 가정, 따돌림 청

소년 가정 부모교육,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등이 포함된다.

② 가정동반자(FC: family Companion) 지원: 가정지원을 할 때에는 가족 안의 중심인물을 찾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기 청소년 가정은 가정이 해체되어 있거나 가정이 유지되더라도 갈등적이고 응집력이 부족하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원조차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심리적 지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살림을 하는 도우미의 손길도 더 필요하다. 민감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민감한 관찰과 지원은 가정의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바로 ‘가정동반자’이다.

③ 경제적 자문 및 지원: 청소년의 위기청소년화에 있어 가장 분명한 변인은 가정의 빈곤이다. 빈곤의 문제는 청소년 연구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이 최소한의 발달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부모의 고용은 청소년의 가정이 안전망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기술 교육 지원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④ 의료적 자문 및 지원 :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알코올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집중입원 치료가 요망되는 문제 가족이 있는 가정이다.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조손가정이 많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부부들이 도회지로 나가 경제활동을 하고 조부모가 어린 자녀를 맡아 양육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손가족의 어려움 중 하나는 조부모의 노환에 의한 건강 문제이다. 혹은 치매로 인하여 맡겨진 아이가 양육은 커녕 학대와 방임되기 일쑤이다. 앞에서 언급한 가정동반자에 의해 이러한 가정이 발견되었을 때 의료지원은 필수적이다. 한편 알코올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학대와 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문제 가족을 입원 치료 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미리 다양한 연계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법률적 자문 및 지원 : 위기청소년의 경우, 절도, 폭력 등으로 인해 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법률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이 떨어질 때, 합리적 해결이 어렵게 된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당황한 나머지 청소년 자녀를 바르게 안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나가 법률적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하고, 적어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률 지원에 있어서 가정 폭력법,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혼, 사별, 재혼 등의 가족구조의 변경과정에서 법적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제공도 중요하다. 특히, 이혼 시 친권·양육권·면접권 등에 관련한 결정사항과 이행수준을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가정의 법적 상황을 분석하여 법률의 부지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위기청소년가정의 부모가 법률적 지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요소로서 법률적 지원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⑥ 재가 자원봉사 지원: 가정의 중요한 기능은 정서적 지지와 휴식이다. 위기 가정의 특징은 가난이나 가족의 갈등에 의해 휴식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먹고, 쉬고, 잘 수 있는 생물학적 욕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재가 자원봉사지원이다. 지원방법은 가정의 일반적 생활을 점검(빨래, 청소, 식사와 반찬, 옷이나 이불, 난방 등)하여 필요한 재가봉사 내용을 결정한다. 활용연계기관으로는 지역의 재가자원봉사단이나 일반 주부가정봉사단을 연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한국노인복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여성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재가자원봉사단과 연계한다.

⑦ 여가 및 문화 지원 : 가족의 응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종 캠프와 주말 집단 프로그램 등을 가족이 활용하게 하는 지원이다. 열악한 환경과 황폐되어 있는 가정의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여행 등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다. 활용연계기관으로는 문화관광부의 문화마우처 사

업을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에 마련된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관 및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시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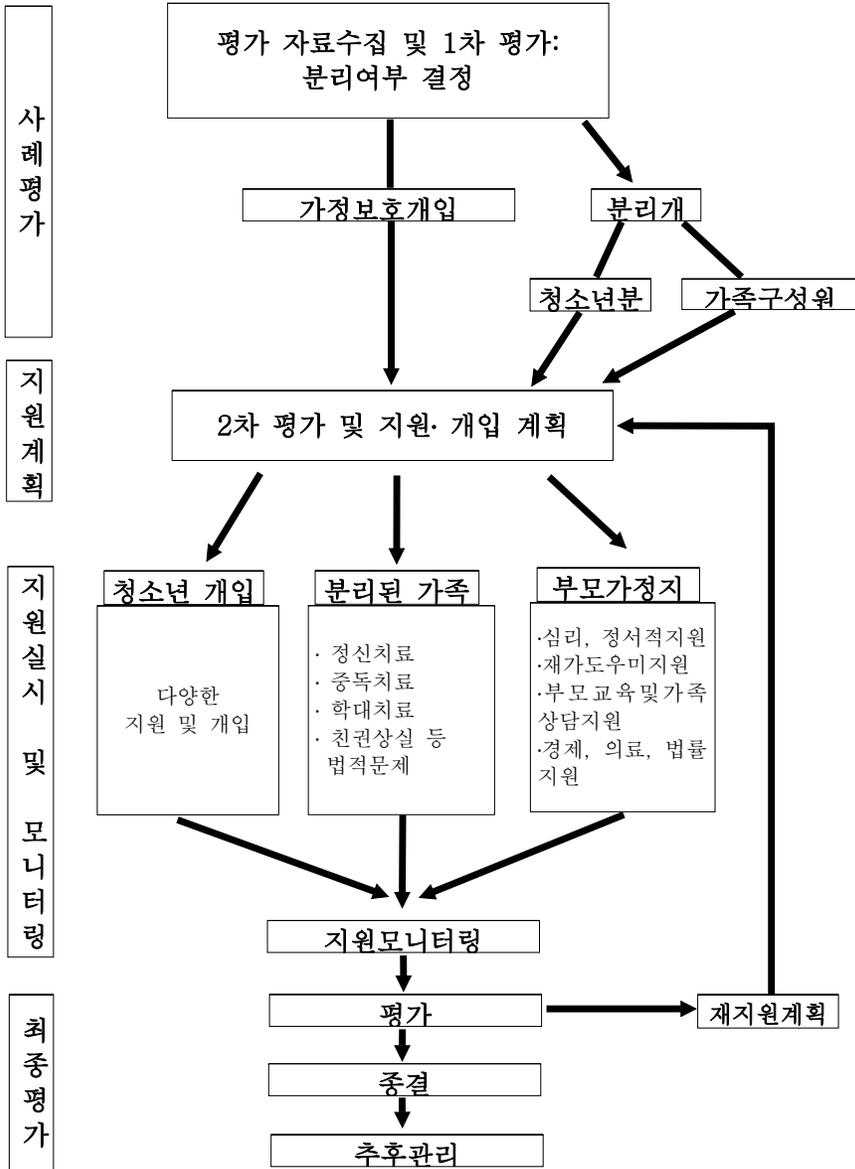
위기청소년 부모·가족 지원체계 안에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위기(가능)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상태에 따른 지원내용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자원봉사기관, 산업체 혹은 상담기관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여 대상 가정이나 부모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을 위한 평가는 가정방문 등의 현장성과 청소년과 가족이 동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동의성 등의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을 위한 평가 원칙의 내용들이다.

-
- 현장성: 평가는 가정 및 직장 방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체성: 평가는 청소년 외의 가족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동의성: 평가는 의뢰 청소년의 동의와 가족의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위와 같은 평가원칙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 자료 수집 - 1차 평가를 통한 분리 지원 여부 결정 - 2차 평가를 통한 지원 계획 수립 - 지원 실시 - 지원 모니터링 - 종결 평가 - 추수 평가 및 재 지원으로 전달된다.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며 이는 가정방문과 직장방문 등 현장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가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계획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하나는 청소년과 가정 혹은 지원핵심 가족 구성원을 분리해서 개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함께 가정을 유지한 채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개의 경우 위기 청소년의 가정을 위한 지원들은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원이 요구된다. <그림 IV-2>은 이러한 과정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 IV-2>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 전달체계

(4)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의 개선

①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다기관간 실무규약(protocols)] 마련 : 관련대응기관 간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교육청, 경찰·검찰, 법원, 민간청소년단체 및 의료기관 등 상호간의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간의 통합적·협력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그리고 전문 서비스기관의 특성화·전문성 강화, 각급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DB체계와 실무협의회의 정례화, 기관연계를 위한 실무적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이고 기관 중심이 아닌 수혜자중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가 얽혀 있으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외부의 개입이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사건조사나 처리과정에 좀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려면,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이들이 좀더 외부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 학부모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여 학교에 입학 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키며, 학교폭력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부모에게 벌금과 양육명령(parenting order)과 제도를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②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 앞서 제시한 미국 **【교육부의 Chapter 19】**와 같이 [학생비행에 대한 학교처리절차규정] 등을 마련하여, 위반의 심각성 등급에 따라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사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 조사, 교장, 교육감 및 교육 각급기관의 담당자들의 책무와 면책권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③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입법원칙과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세우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법처분이 내려진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다시 징계처분을 행하거나, 가해학생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법리적 복잡한 쟁점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④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라는 정책목표에 합당하도록 세부적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치료비 구상권 등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가해학생 처분조치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그리고 ‘자치위원회’성격과 임무 등이 과연 헌법적 권리와 적법절차라는 대원칙 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민사조정이 아닌 범죄문제와 관련된 ‘분쟁조정’이란 일반적으로 대안적분쟁해결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자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⑤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실천모델의 도입: 우리의 소년법이 강제적·처벌 지향적 모델로부터 참여적·예방 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바로 갈등을 다루는 새로운 영역(회복적 사법실천)의 발전과 연관된다. 회복적 사법은 본질상 입법적 변화 자체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없다. 각국에서 비-입법적 요인들(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증가, 대중적 및 전문적 교육, 다기관 파트너십, 지방정부의 적절한 이행조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폭넓은 범정부적 접근전략을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견고하고 유효한 회복적 실천을 발전시키는 국가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지역사회 사법센터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역시 새로운 회복적 사법 실천의 하나로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제3의 조정센터⁴⁰⁾를

40) 우리의 경우에도, 입법적 개혁조치와 더불어 지역사회연결망과 다기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대안적 분쟁해결센터(가령, 미국식의 Community Justice Centre나 영국의 Mediation Center, 네덜란드의 Real Justice, 프랑스의 Maisons de Justice

설치하고, 분쟁조정 또는 화해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은 학교 또는 경찰에서 사건의 '위탁(referral)'하여, 회복적 실천기술을 훈련받은 전문조정자(facilitator)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미권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학교들은 이미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접근법들은 교육적 성과를 지원하고 행위개선을 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방법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형태로는 Peer Monitoring, Mediation, Circle Time 등을 참조해 볼 수 있다.

⑥ 학교 전문상담제도의 확립 :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행정 담당자와 학생지도 담당자의 업무가 일반교과담당교사와 구분되어 상담전문인력이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소한 교과담당과 교육행정담당을 분리하여 지속적인 학생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인력이 학생지도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체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성공적 제도정착을 참고하여 국가차원의 비용보조를 통해, 학교상담정책이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상담활동의 국가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학교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자살, 우울, 불안,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와 청소년 비행이나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이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다양한 정서장애를 지니기 쉽다. 하지만, 정신적 문제에 대한 부모 및 교사들의 이해부족과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마땅히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전문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고 있

등)와 같은 기관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사법체계 외부에서, 회복적 개입을 위한 접근문턱이 보다 낮아질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사회 분쟁해결 문화가 형사사법체계를 대체할 수도, 대체해서도 안 되지만, 대안적인 분쟁해결(ADR)의 수평적 체계는 실제 자기조직화된 시민영역의 규율기제와 질적 및 양적으로 과부화가 걸린 사법체계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보건교육에서는 정신건강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각종 정신건강서비스와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거점 구실을 해야 한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에 66.5%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충남, 전남 등 농어촌 지역에선 보건교사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학교에 소정의 전문적인 정신건강교육을 이수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다양한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집단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역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학교 신체검사는 건강검사로 바뀌는데, 학교보건차원에서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경준 외, 2005).

⑧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태도교육은 상당시간을 요하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시행 시기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대인관계 대처능력 증진 및 심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시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⑨ 대안학교 설립 등 가·피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은 데 비해 중학교는 의무교육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폭력이 확산되는 기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제도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의 확대가 필요하다.

⑩ 학교폭력은 아동인권침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은 불가능하여, 이를 위해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학생교육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그 자체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권교육과 학생들의 평화적인 감수성 및 갈등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예를 들어 ‘책임감 있는 시민형성 프로그램 (Responsible Citizenship Program) -호주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10시간짜리 프로그램-’ 과 같은 회복적 사법이념(Restorative Justice principles)에 근거한 체계적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2.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1) 개요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03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의 4차년도(종결 단계) 과제로서, 3년 동안 진행된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연구의 흐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청소년의 일상 생활 공간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중에서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3년 동안의 연구 제언과 올해 진행되는 유사 연구와의 차별성을 고려하고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과 근본적인 예방대책 제시가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를 통해, 지역단위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개선과제와 지역사회 중심의 근본적인 문제행동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대책의 중요성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첫째, 지역사회와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 및 지역사회 환경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중심 문제행동 대책 마련의 이론적 근거로서 지역사회 내 협력이론과 문제행동 대책 유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과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지역사회의 무질서나 유해환경 등 부정적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내의 교제와 친밀도 및 참여정도

를 나타내는 집합효율성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대책 마련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운영현황과 지역중심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가출 예방 및 선도 종합대책,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청소년폭력 예방 및 선도 종합대책,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의 관계자 면접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 실태와 향후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에 관한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문제행동 대책과 유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Comprehensive Community Prevention, Community That Care, Children First Initiative 등 지역중심 문제행동과 대책과 Child and Youth Friendly City, Growing Up in Cities 등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사례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검토, 설문조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현황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추출된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지역사회 중심의 근본적인 문제행동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사업의 실험적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Cities)’ 프로젝트의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실천전략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먼저,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이론적 틀 구성 및 현황파악을 위해 청소년 문제행동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논의와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관련 정책 및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청소년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 5. 11(목)부터 5. 31(수)까지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170부의 설문지를 회수·분석하였다. 설문지 개발 및 조사는 협동연구 공동수행 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연구’ 팀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사례조사와 면접조사이다.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관련 정책과 사업프로그램 관련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담당자 면접을 통해 실태와 어려움,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폭력, 가출, 성보호, 학업중단, 유해환경 등 문제행동 대책별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1개 기관·단체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6. 5. 23(화)부터 6. 7(수)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외국의 지역중심 문제행동 대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국내의 지역중심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관계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 아이디어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는 8. 8(화)부터 8. 31(목)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환경과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 왔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주로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상의 결함 또는 가족이나 친구관계의 결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분석하였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주로 사회의 구조나 문화 또는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문제행동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지역사회⁴¹⁾라는 거시적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초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는 사회해체를 겪게 되고 이것이 특정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Burgess, 1925; Shaw and McKay, 1942; Wirth, 1938). 그러나 지역사회연구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의 연구는 소위 생태학적 오류에 대한 지적(Robinson, 1950)과 함께 차츰 쇠퇴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관계적 특성이나 학습과정, 긴장상태 등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으로 전환되었다(Hirschi, 1969; Akers, 1985; Messner and Rosenfeld, 2001).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와해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Kasarda 와 Janowitz(1974), Janowitz(1976), Suttles(1968) 등은 일견 와해된 듯한 지역사회 연구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 학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었으며 이들의 노력은 Bursik(1988), Sampson(1988), Coleman(1988) 등의 연구를

41) 엄격하게 보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는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 개념을 상호교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이들은 소위 사회자본, 집합효율성 등의 개념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또한 보다 최근에는 거버넌스⁴²⁾라는 개념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임혁백, 2005). 이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일견 공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 연구에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더 이상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란 용어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공동체란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 다양한 화두를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의 개념규정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개념은 세 가지의 패러다임을 거쳐 발전되어져 왔다(Wellman, 1979). 그것은 각각 공동체 실종, 공동체 부활, 공동체 자유화의 패러다임이다. 첫 번째로 공동체 실종이란 과거의 공동체 중심적 지역사회가 도시화·산업화되면서 개인화·분절화 과정을 겪으며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의식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이 실종된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공동체 구성원 간의 잦고 친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튀니스(F.Tönnies)의 공동사회(Gemeinschaft), 이익사회(Gesellschaft) 구분은 실종된 공동체의식이 가져온 변화를 잘 대변해준다. Wirth(1938)도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이라는 글을 통해 도시사회는 공간상으로는 거대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밀도 있게 집중되어 있으며 더욱이 그 사람들은 이질성과 독특성 및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시성은 비인격적인 특성을 띄게 되고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관계는 물론 가족생활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⁴²⁾ 거버넌스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정부 이외의 시장과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통치개념이다.

이에 비해 공동체 부활은 도시화 및 산업화의 부정적인 주장을 부인한다. 오히려 이들은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라는 글귀처럼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사실 1960년대에 서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민속방법론적 도시연구에 따르면 삭막하게 여겨지는 거대도시에서조차 혈연과 학연, 지연 등으로 엮히고 설킨 지역사회 또는 소수민족 집단거주지가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주민들 간의 관계가 친밀한 지역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Jacobs(1961)나 Gans(1962) 등은 이를 Urban Village 즉, ‘도시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Fischer(1982)의 연구에서 보듯이, 비록 차별성과 이질성이 도시사회를 특징짓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혈연이나 학연 등을 통한 연줄망을 잘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볼 때 도시란 항상 사회적으로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패러다임은 항진 명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공동체 자유화이다. 이 패러다임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지리적 한계를 부정한다. 즉 공동체란 지리적이나 공간적으로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사회적 관계가 지속되는 무제한의 공간인 셈이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시군구의 영역은 물론 타국 심지어는 우주공간에서의 통신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의 확산은 각종 매체를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의사교환을 원활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공동체는 더 이상 지역적·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초공간적 사회관계가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갖는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관통하면서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오

늘날의 공동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내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교환하는 제한된 의미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처럼 제한된 책임만을 지는 공동체가 오늘날의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는 에너지는 개인 간의 친밀한 교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무적 참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와 공동체의 목표가 서로 조응하고 부합할 때만 작용하는 제한된 의미로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와 범죄와의 관계는 주로 경제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 경제자본과 관련된 셈이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범죄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해체이론에서도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이동과 인종다양성과 함께 범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Shaw and McKay, 1942).

그러나 지역사회와 범죄와의 관계는 경제자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과도 밀접하게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으며 사회자본 확충의 관건은 사회통제에 달려있다. 사회통제는 지역사회 연구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이다. Janowitz(1976)는 사회통제를 공식적인 사회통제와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로 구분하고 양자 가운데 후자가 활성화된 곳을 이상적 형태로 생각하였다. 특히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억압적 또는 강제적 순종과는 병행할 수 없는 개념으로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사회통제가 이루어진 사회는 집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한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이다. 스스로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는 사회 해체적 상태가 된다. 따라서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이 강조하는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도 사회통제의 부재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위 지역사회 조직화(community social organization)는 지역사회의 구조가 주민들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고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주민들의 공동목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이다. 그 외에도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며 교육환경과 거주환경이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자본이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그 기능에 따라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이란 사람들 간의 관계의 구조 즉, 사회구조가 사회자본이 없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 특정목표의 달성을 가능케 해주는 활동을 용이하게 해줄 때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집된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자본을 쉽게 관찰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한 사람 개개인에게 내재한 자본이 아니라 사회 집단 또는 사회 조직의 차원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사회는 공동의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사회통제도 쉽게 유지할 수 있다. Sampson 외(1997)은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아이들의 양육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어른들을 연결해주는 맞춤형 사회적 네트워크, 그에 따른 확장된 의무감과 기대감 등으로 특징지어진 지역사회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네트워크만으로는 효율적인 사회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Sampson, 1999). 왜냐하면 밀도 있고 탄탄하게 짜여진 네트워크가 도당이나 파벌로 발전하여 고립되거나 전체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사회조직의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Sampson(1999)은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발전해가는 사회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품 또는 물건과 같이 하나의 정태적인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ampson 외(1997)은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말은 개인효율성과 지역사회효율성이란 말에서 유추된 것으로 두 용어 모두 정체된 상태보다는 동태적 진행과정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거주민들이 자기가 속한 마을의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주민들 상호간의 신뢰와 응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믿지 못하는 마을에서 지역사회효율성을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거주민 개개인이 마을의 공동선을 위해 개입하고 참여하려면 먼저 개개인의 참여가 마을의 공동선 실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은 개개인으로서 공동선에 참여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참여가 공동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기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공동선 실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개인효율성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효율성 낮은 사람의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효율성을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ampson은 지역사회효율성과 개인효율성을 합하여 집합효율성이라 명명하였다. 집합효율성이란 주민들 상호간의 신뢰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흔쾌히 그리고 기꺼이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집합효율성의 핵심요소는 교제와 참여의 두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Sampson 외, 1997). 최소한 서구사회에서는 도시지역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의 집합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달려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집합효율성 논의는 청소년 문제행동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주민들 간의 상호신뢰와 응집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공동선 가운데 범죄의 예방 특히,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마치 한 동네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키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자연스러울 때 그 동네의 분위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며 이는

곤 지역주민들 간의 교제나 참여로 이어져 범죄와 문제행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대체로 구조적인 영향과 과정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거 시카고학파의 대표적 이론가들인 Shaw and Mckay는 시카고의 77개의 지역사회들 가운데 빈곤하고 인구가 이동이 많으며 인종 다양성이 높은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종종 생태학적 오류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지역사회 영향력과 범죄율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소위 매개효과의 발견이다. 매개효과는 사회의 구조나 문화와 같은 거시적이면서도 정태적인 특성들이 범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가정 대신에 두 변인군 사이에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추가함으로써 인과적 설명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개효과란 두 변인간의 사이에 위치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³⁾. 이와 같은 전제로 볼 때,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을 매개해 주는 과정적 요인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야말로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과정의 역할을 철저히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구조와 행위간의 매개적 과정요인을 찾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다.

(2)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과 문제행동 예방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43) 두 변수간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을 경우 때때로 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정(moderation)이고 다른 하나가 해석(interpretation)이다. 해석의 경우 제3의 변인을 고려함으로써 두 변수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매개효과로서 이는 X가 Y에 주는 직접효과 외에 제3의 변인 Z를 통한 간접효과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

www.public.asu.edu/~davidpm/ripl/mediate.htm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청소년과 주민들이 공동의 가치체제와 유대의식을 공유하고 상호교류하며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의 하나이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지역사회에서 범람하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던 본래의 교육적 기능은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나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행 등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환경들은 긍정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과 부정적인 기능인 위험요인(risk factor)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지역사회의 빈곤, 근린지역사회와의 결합도 및 지역사회의 조직화 정도, 매스컴의 폭력에 대한 묘사, 지역사회의 이동성, 지역사회의 법규나 규범, 지역사회에서 약물이나 무기 등의 구입 용이도 등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owell & Bilchik, 1995,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4에서 재인용). 지역사회에서 약물이나 술, 무기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을수록 약물남용이 더 많아지고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가 증가하며, 약물남용이나 폭력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법규, 세금부과율, 지역사회의 기준 등이 우호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비행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매스컴에서의 폭력이 지역사회의 폭력 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폭력적·공격적 행동의 발생률을 높이며, 지역사회 거주자의 이동이 빈번할수록 범죄행동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친밀도가 낮거나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낮은 경우에 청소년 비행 비율이 높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감독이 적은 경우에 기물파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청소년은 10대 임신이나 학교중퇴, 폭력 문

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현장 참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을 지표목록화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기 좋은 장소의 특징을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으로서 사회통합, 또래 모임 장소, 다양한 활동 환경, 이동의 안전과 자유, 응집력 있는 문화적 정체성, 나무가 많은 녹색 지역, 보장된 주택 보유, 음식·물·전기·의료보호 및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소외를 느끼는 부정적 지역 특성으로는 빈곤과 차별이 연상되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 수치심을 느끼는 낙인, 사회적 소외, 지루함, 괴롭힘과 범죄의 두려움, 인종적 갈등, 다양한 활동 환경의 부족, 깨끗한 물과 위생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부족,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지나치게 복잡한 교통, 지리적 소외, 불안한 주택 보유, 정치적 무력감 등을 제시하였다(Driskell, 2002). 즉, 청소년들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서로 기호에 맞게 어울릴 수 있고, 친구들이 함께 모일 수 있으며, 청소년이 활동하는데 있어 안전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고, 지역사회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자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공통된 목적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건강한 아동·청소년 개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사회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개입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처하는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줄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 접합도(bonding)와 복원력(resilience) 및 청소년 역량 증진, 자기결정 능력의 고양, 자기효능감의 증진, 미래에 대한 신념 확장, 친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윤철경 외, 2005). 접합도란 청소년이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또는 문화체계 내의 사회적 관계에 부여하는 감정적 애착과 책무의 정도로서, 긍정적인 접합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한 기술을 개발시키는 프로그램이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개입방

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원력은 변화와 긴장을 동반한 상황에 대해 건강하고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성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위험요소에 청소년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사회적 역량, 정서적 역량, 인지적 역량, 행동적 역량, 도덕적 역량 등이다.

한편,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구축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적인 사회적 개입의 한 방법으로 대중동원, 사회행동, 시민참여, 대중지지, 대중교육, 지역서비스 개발이라는 여섯 가지 전략을 가진다(정지웅 외, 2000).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는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장에서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개선을 도모하는 복지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의 전체적 문제, 지역적 차이의 존중, 서비스의 접근성, 주민의 주체성, 참여와 협동성을 강조하며 계획·실천·평가의 세 단계로 전개된다.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은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발견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주민의 욕구와 참여, 지역사회의 이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최일섭·류진석, 2006:).

지역사회구축(Community Building)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발·강화·유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확장시키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접근방법으로, 경제개발, 지역사회개발, 가족지원서비스, 청소년개발, 공공의료사업 등 수많은 지역사회에 적용되고 있다(김성준·김찬동·김용운, 2004).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단순히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심을 없애고 자기의지, 자신감 및 책임감을 길러줌으로써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자립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특징이 큰 성과를 나타내면서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빈곤, 열악한 교육환경, 범죄,

취약한 보건, 실업 및 가정불화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들로서 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조건들을 향상시키려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구축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 협력·파트너십 강화, 지역사회 자산의 활용, 주민참여 강화, 공동체문화 강화 등의 원칙을 가진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구축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지역사회구축은 사회자본의 건설,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강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결합, 지역사회 주민들의 진정한 대화와 이해, 의사소통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사회개발은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실현하고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하며, 인권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짐 아이프 저류혜정 역, 2005).

최근, 우리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 실천운동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구축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지역을 풍요롭고 매력 있게 변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하성규 외, 2003).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사회개발 과정에 청소년의 관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청소년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청소년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참여를 통해 새로운 해결전략을 모색할 수 있으며

성인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이미 많은 국제적 권고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듯이 청소년 참여는 많은 이점을 갖는다.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더 효과적이며 청소년의 독창적인 관점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의 욕구에 가장 근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청소년은 참여를 통해 자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보다 건강한 도시의 창출을 위해 창의성, 에너지, 생활경험, 그리고 지역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활기찬 청소년들은 참여를 통해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문제해결 기술을 개발하며 비평적 의식을 개발하게 되고 보다 높은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며 보다 큰 목적의식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Ragan & McNulty, 2006).

지역사회 개발과정에 청소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국제적인 흐름을 통해 촉진되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 생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선언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주요그룹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해 하나의 장(chapter)을 할애하고 있다. 의제 21은 정부가 환경 친화적 개발과 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적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995년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성명서에서는 인간이 개발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세대 간 평등과 환경 보전이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지켜져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해비타트 회의에서 서명된 해비타트 의제는 자신들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고

정부가 환경 친화적인 인간 거주지에 대한 참여적 접근을 제도화하며 아동·청소년과 기타 취약한 그룹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세대 상호간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사업(Child Friendly City)’에서 말하는 청소년 친화도시는 자기효능감, 교육, 여가, 문화적 조화에 대한 경험, 도시환경에 대한 연계감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는 데 관련된 모든 면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친화적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효과적인 도구로써,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및 지역정부가 청소년들이 도시 개발에 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할 때 그 이익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사회를 개선한다(Ragan-McNulty, 2006). 청소년친화도시는 회복력 있고(resilient) 안전하고(secure) 역량이 있으며(capable) 살만한(livable) 도시로서, 아동·청소년이 스트레스와 억압, 역경을 유연하게 이겨내고 쉽게 회복할 수 있으며 위협이 없는 안전한 도시,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고 촉진되며 물, 교통, 음식 안전과 공간, 환경 친화적 기술, 혁신 등의 요소가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Cities: GUIC)’ 프로젝트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의제 21의 원칙을 실현하는 실제 프로젝트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려는 비전에 의해 동기부여 되었다. 이는 어린이들이 지역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역의 자원과 제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록하고 여기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도시환경이 어린이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민감한 도시정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친화적인 도시가 잘 계획된다면 도시는 어린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획득하는 데 많은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로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될수록 지역사회의 질은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해지며 이들에게 보다 넓은 사회적 지지의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점과 생각에 대한 것으로, 실행 결과, 연구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아동 옹호자, 도시계획가 및 설계자, 가족들이 청소년과 협력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진취적인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공동체적 확신을 쌓아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문제와 자원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이 종종 어른들의 그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청소년이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많은 경우 정부당국은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청소년의 의견을 구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이 프로젝트는 밝혀내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는 지역사회 개선과 청소년에 민감한 정책 개발이라는 목적과 함께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획득하는 목적도 함께 달성되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지역의 위기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력을 최대화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며, 이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자원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연구결과

(1) 국내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현황과 과제

가. 조사개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중심 문제행동 대책 현황과 향후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가출 예방 및 선도 종합대책,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청소년폭력 예방 및 선도 종합대책,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지역사회 위

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의 관계자 면접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11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관련분야 전문가(학계 연구자, 공무원, 현장 실무자) 20인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기간은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인터넷 의견조사 기간은 8월 8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례연구는 연구대상 기관에서 수행한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관련 사업의 실태와 효과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자 혹은 실무감독자와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차적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문제행동 대책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9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적으로 문제행동 예방차원의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전화면접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은 청소년 문제행동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여 그 동안 추진된 다양한 문제행동 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문제행동 대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자치단체 공무원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메일로 이루어졌다.

면접조사 연구대상 기관은 청소년보호시설(쉼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등) 2곳과 청소년보호단체(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폭력관련단체,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단체 등) 7곳, 인문등학교 1곳, 일반시민단체 1곳이다.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실시한 관련사업의 내용과 사업을 하게 된 배경, 관련사업의 성과 및 운영상의 어려운 점,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은 학계전문가(10인), 공무원(4인), 현장실무

자(6인) 등이며, 이들에게는 지역사회중심의 문제행동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의 장애요인과 한계 및 개선방안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나. 조사결과 및 시사점

먼저, 조사결과에 따른 청소년 문제유형별 대책 과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청소년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는 문제해결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한다(먼저 국가적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데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이 전제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이 중복되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의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셋째, 중앙-지방, 공공-민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허브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준전문인으로 양성한다. 즉,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관련 담당자들은 모두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특히 담당부서 공무원 채용 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준전문가로 양성한다.

다섯째, 청소년문제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연구토대 위에 정책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를 심층 조사 연구하여 지역에 맞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공모사업 선정과정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문제행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을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구별하여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관련기관이 공모사업 선정과정(신청시)에 소모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감독과 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사업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고 기관편의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체계적 평가를 통한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여덟째,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사업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공약이 일시적·정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청소년, 청소년단체,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에 참여하는 행정기관과 정치집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 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와 과제들을 종합·분석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이 전국단위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 수립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들 유관기관들의 중심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이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정한 중심기관으로서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허브기관으로서의 마인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허브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들은 학업중단청소년과 관련한 문제, 가출과 성매매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비행문제, 가족기능 약화와 학업수행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와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발생 청소년들의 연령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이 지역에 따라 지역 현상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장·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다 이른 연령부터의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실태조사, 상담업무, 계몽업무, 자원봉사자 교육, 보호시설 운영, 심리치료, 가족치료, 캠프, 학교지원 출장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실무자 보수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기관들은 재정상의 곤란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청소년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앙·지방정부의 인식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청소년 관련부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예산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달라져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기관 관련자의 직업세계도 안정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

회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이 올바르게 인식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안정되게 추진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자체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역 관련기관들은 매년 단기간에 계획서를 마련하고 신청하는데 인적·시간적 소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가 사업선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적절하지만, 장기적이고 기관의 성격에 맞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데에는 비생산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는 단기사업(1년 내)과 중장기 사업(2~10년 이상)을 구별하여 선정하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 후의 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는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을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은 충분한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통한 정책검토와 지역사회에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이 없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행정적·기능적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청소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겪게 되므로 사업의 효과가 감소됨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들 모두 지역사회 내에 필요한 유관 기관들을 충분히 마련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관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

어져서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행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제도를 재정비하여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는 재정이나 인적 자원 등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정책 효과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가출청소년이나 청소년성문제, 학업중단청소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의 경우, 대상은 주로 특별지원 청소년들이나 관련제도가 다르고 이를 관장하는 해당 중앙부서가 달라 예산이나 인적 자원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관련 법규가 다르고 국가 예산이 부처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집행됨으로써(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동일한 대상을 놓고 양질의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부실한 사업만 반복 전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는 반감되며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제도들을 재정비하고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근래 관심을 끌고 있는 ‘청소년 친화적 마을만들기’도 추진체계와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의제 21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만들기 운동은 마을의제 21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건설’,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지원 ONE-STOP 지원체계구축’ 등과 형식이나 과정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용면에서는 거의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인간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추구하는 과정이 추진체계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중앙·지방정부에서는 각 해당 부처별로 예산과 인적자원을 배정하고 부처별로 지역사회에 전달기구를 설립하면서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위의 여섯 번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도 지역사회 전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친화

적이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개되는 것으로서 중앙·지방단위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여덟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적자원은 전달체계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제도는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제도나 예산 배정보다는 청소년에게 투입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만을 배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문제 관련 청소년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이러한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문제 영역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에서의 진로를 안정되게 보장하며,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사회에서 종사할 때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모든 지역사회에서 문제영역 관련 청소년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선거 때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이 이슈가 되는가 하면 법률을 제정하거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임기 내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형식적·일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문적·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청소년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로서 정치인들의 몰지

각한 정치적 이용은 살기 좋은 마을을 추구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전환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과 관련한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지속적·종합적으로 추진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모니터링제도나 사업실적 평가제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2) 외국의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사례

세계 각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하면서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공동협력과 제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행동 대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외국사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문제행동 대책과 유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관련 사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사례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핀란드, 호주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의 금연, 금주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 종합 청소년 문제예방 접근법(Comprehensive community prevention),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영국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주목 전략(Community That Care: CTC)의 시범적용 사례,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제일 전략(Children First Initiative: CFI)의 구체적 실행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영국의 CTC와 미국의 CFI에 대해서는 그 성공요인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중심 종합 문제행동 예방접근법’은 80년대 초 흡연 관련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성과가 확산되어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전략으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핀란드 등 주요 국

가들에서 심장계 질환 위험 감소,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 약물오남용 및 청소년 성문제 예방 등을 위해 많이 도입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관련 기관·단체·시민은 물론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를 활용한 시민과 청소년 대상 계몽교육, 언론을 활용한 홍보 강화, 지역사회 조직화,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변화 및 정책 집행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한다. 의료 검사와 치료, 음주와 흡연 관련 상품의 이용가격 인상 및 법집행 확대, 금주·금연 및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제공 등도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주목전략(CTC)’은 90년대 초 미국에서 청소년 비행, 약물, 10대 임신, 학업중단 등의 감소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연구·개발되어 확산되었다. 이는 청소년 건강문제와 문제행동의 원인변수 등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예방전략으로 이론적으로는 사회개발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에 토대를 두고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측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을 증대시킴으로써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를 동원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즉, 이 전략은 청소년의 긍정적 사회발전을 증진하고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이끌어준다. CTC의 운영체제는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및비행보호국(OJJDP)의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분석틀로 채택되어 미국 전역의 500여 지역사회에서 실행되었으며, 90년대 후반부터는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도 시범적용되었다. 원보고서 IV장 1절에서는 CTC가 영국에 도입되어 시범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아동·청소년 체일전략(CFI)’은 미국 서치연구소(Search Institute)의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 연구에 기초한 Healthy Community·Healthy Youth(HC-HY) 대책의 대표사례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다부문간 노력을 중요시하는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개발운동이다. CFI는 서치연구소에서 청소년 발달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에 지역사회 주민과 기관·단체들이 노력을 집중하게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기업,

시청, 교육, 종교 및 보건 등 5개 부문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발달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과 조치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조장하는 위험요인의 생성을 방지하는 적극적 예방대책으로써,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Child and youth friendly city: CFC)와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cities: GUIC)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두 프로젝트는 각각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전세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다양하고 오랜 경험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청소년친화도시 구축(CFC)’ 사업은 지역사회를 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청소년친화도시는 회복력 있고(resilient) 안전하고(secure) 역량이 있으며(capable) 살만한(livable) 도시로서, 청소년 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며 가족·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이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 교육, 보호소, 안전한 물과 위생 등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보장하며 아동·청소년을 착취, 폭력, 밀매 및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사회화와 건전한 놀이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장소를 유지하며 녹색공간(나무와 풀이 있는 공간)과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염과 교통을 통제하며 문화 및 사회 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연령, 성, 소득, 피부색깔, 인종, 문화적 기원, 종교,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 받고 자신들의 필요와 견해를 밝히며 또 이 필요와 견해가 지역 기획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하고 의사 결정자들과의 접촉과 관계가 가능한, 보다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GUIC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대한 아동·청소년의 아

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일반 사람들과 도시 관리들에게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도시 이슈들을 교육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연구,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한다. 원보고서 IV장에서는 GUIC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하였으며, 실행과정과 실천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원보고서 VI장에서 소개하였다.

이러한 외국에서의 지역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을 한국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이기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성공요인들은 지역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실제적·정책적 노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민간 청소년단체, 학교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종교기관 및 보건복지 기관 등의 연계협력은 매우 긴요하다. 사례로 제시된 모든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들이 이론적 틀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에 입각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실행 후에는 평가를 통해 그 성공요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부문별 관계기관과 전문가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일반주민들의 참여는 지역중심 청소년 대책 프로그램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중요한 참가자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발적이며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욱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지지적인 지역주민, 재정적·행정적 지원,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전담인력 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시된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는데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있는지(community readiness)를 파악하는 일이다.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는 지역사회 진단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친화도시 구축사례와 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를 청소년이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관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서 청소년과 성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와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인식과 실태

가. 조사개요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이다. 조사를 위한 표본은 서울지역에 재학중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각각 600명씩 모두 1,200명으로 설정하였고 나이의 불일치에 따른 교란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2학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배포된 1,204부의 설문지 가운데 모두 1,170부가 회수되어 설문지의 회수율은 97.18%로 나타났으나 이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분석이 여의치 않은 설문지 24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수는 1,146부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6. 5. 11(목)에서 동월 31(수)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수행되었고 설문지 개발 및 설문조사의 실시는 협동연구 공동수행자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집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재정자립도와 최근 3년간 재산세 현황을 기준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실업고등학교를 표집대상에 포함시켰다.

나. 조사결과 요약

① 지역사회의 특성 요약

본 연구에서는 소위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기간, 이사

횃수,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 거주지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거주기간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한 곳에서 줄곧 자랐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1,116명 가운데 201명인 18.0%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때부터 현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사횃수에 있어서는 이사빈도의 최빈치 4~6번으로 나타나 자주 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국가들의 국민들에 비해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사결과도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사를 간 곳도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다녔다는 응답은 전체의 34.4%에 불과해 대부분은 다른 동네 심지어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소위 한 곳에 오래 거주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지역주민들 간의 교제 및 정은 상대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도를 지역사회경계에 대한 인지,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인지,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체로 사회사의 경계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까지가 동네의 경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는 등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돋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누가 우리 동네의 어른이고 누가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인지 등 사회사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이해도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네에 대한 애정이나 동네일에 대한 참여의지는 다소 약해보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동네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등 간혹 이중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 응답자의 특성을 살려 통학방법과 통학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여학생들은 도보나 버스를 남학생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고 남학생들은 지하철이나 자전거, 그 밖에 2개 이상의 통학방법에서 여학생들보다 높은 응답율이 나왔다. 통학시간에서는 11분에서 20분 사이라는 다

소 짧은 시간의 응답율이 전체의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인 35.0%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약 9.9%는 통학시간에 30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 학생도 0.7%인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에서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나(75.6%), 상가지역 또는 복합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각각 10.4 또는 10.5%로 나타나 공장지역이나 기타지역의 응답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거주형태는 아파트였고(38.0%),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37.6%). 이에 비해 단독주택은 19.9%, 그 외의 주거형태 응답은 전체의 4.4%에 불과하였다.

한편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가장 빈한한 I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IV 지역으로 구분한 뒤에 4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경계인지와 주민인지도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경계인식에 있어서는 II 지역 학생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주민인지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지역인 IV 지역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IV 지역은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대체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 좋은 인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I 지역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긍정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IV 지역과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유해업소의 경우 경제적 수준에 따라 4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해업소의 정도가 달랐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I 지역에서 유해업소의 경중에 관계없이 두 유형 모두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응답되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있는 IV 지역의 경우 경유해업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뒤에서 세 번째 수준이었으나 중유해업소는 앞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지역사회의 무질서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도의 유형에 관계없이 무질서도는 경제적 수준과 유사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IV 지역이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무질서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 예외가 있다면 그곳은 노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한 물리적 무질서도인데 II 지역의 무질서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IV 지역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곳이라 해도 포장마차나 가두판매점과 같은 노점상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V나 에어컨이 설치된 고급포장마차와 같이 이들 노점상들의 특성상 여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과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교제와 참여를 나타내는 집합효율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II, III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 있는 IV 지역에서의 집합효율성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였다.

② OLS 회귀분석 요약

청소년들의 비행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통해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개별비행에 대한 결과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모든 비행에 있어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더 많은 비행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성비행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중고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들보다 지위비행과 성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는 중고별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중유해환경과 중물리적 무질서도가 거의 모든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중물리적 무질서도의 영향력이 성비행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성비행의 은밀한 행위적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버려진 차량이나 오래된 건물이 많은 곳에서 성비행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시적 수준의 과정적 변수들의 경우엔 집합효율성이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지위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에서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소

위 주민들의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소위 서구 사회에서는 주민들 간의 끈끈한 교제와 목적달성을 위한 참여와 같은 적극적 활동을 바탕으로 할 때 범죄감소의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비록 활발한 교제나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만 주위 사람들에 대해 좋은 인상이나 느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감소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③ HLM 분석 요약

한편 거시적 수준의 변수와 미시적 수준의 변수들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HLM을 통해 살펴보았다. HLM은 소위 위계적선형모델이라고 불리는 통계기법으로 거시와 미시의 각 수준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HLM의 ANOVA 모델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의 비행유형 가운데 학교 간 변량이 가장 큰 것은 성범죄(10.34%)이었고, 다음이 지위비행(7%), 폭력비행(4.83%) 및 재산비행(4.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성비행이나 지위비행은 개인의 차이보다는 학교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재산비행이나 폭력비행은 학교 간 차이보다는 개인 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간 차이 즉, 거시적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진 성비행과 지위비행만을 대상으로 추가분석을 하였다. 이 때 분석의 초점은 과연 거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영향력이 미시적 수준의 변수들을 통해 매개되어지는가에 맞추어졌다. 다시 말해 거시적 수준의 영향력을 옳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는가에 관심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지위비행의 결과를 단계별로 분석해본 결과 초기모델에서는 거시적 수준의 영향력, 특히 경제수준에 따른 지역별 영향력과 중유해환경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수준의 변수들 즉, 경제 지역별 영향력과 중유해환경의 영향력은 개인수준의 학교 성적 및 용돈이

포함되면서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 영향력이 개인 수준의 과정적 변인들에 의해 매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체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나 유해환경이 많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지위비행은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많은 용돈을 쓰면서 저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개인의 열등한 특성과 결합되어질 때 지위비행을 부추기는 상승작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비행의 경우에도 지위비행과 같은 논리의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거시적 수준의 영향력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유해 환경이 많을수록, 경계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낮을수록 성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영향력에서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성비행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용돈이 많을수록 성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위비행에서와는 달리 성비행의 경우엔 집단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개인수준의 변수들에 의해 매개되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볼 때 성비행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에서 각각 발휘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 역시 두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각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시사점

①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사회통제란 대체로 보상이나 제재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통칭하는 말로서 일종의 제도적 장치이자 기제이다. Janowitz(1976)는 사회통제를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식적 사회통제란 법률과 규칙 등과 같이 정부나 조직의 사법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비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란 법이나 규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비난이나 부정, 죄책감, 죄의식, 불안감 등을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그는 사회 내 죄악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제철차를 통한 공식적인 통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내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나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는 아노미적 사회에서 더욱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는 가운데 공식적인 통제를 통해 강압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의 관심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문제해결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죄에로의 유혹이나 유인을 억제하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다. 사회통제의 유무는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나 유해환경 등 가시적 환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교체, 참여 등의 비가시적 여건의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가시적 환경과 비가시적 여건 양자 모두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무질서정도나 유해환경은 많이 존재하지만 주민 간의 교체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소위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활성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회통제의 활성화는 외부의 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자체 내에서 자생시켜 나아가야 한다. 일탈에로의 유혹이 집단 구성원들의 관심과 제재를 통해 적절히 규제되어 나아갈 때 비로소 범죄에 대한 사회통제가 적절히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주거안전성의 확보와 공동체의식의 강화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활성화하는 여러 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주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Kasarda와 Janowitz(1974)에 따르면 대중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거주기간이나 이사횟수 등과 같이 안정적인 주거와 관련된 변수들이 여러 유형의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집합효율성의 확보에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⁴⁴⁾. 이와 같은 결과는 주거의 안전성이 집합효율성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와 상통하는 것이다(Sampson, 1988; Sampson 외, 1997; Simcha, Fagan & Schwartz 1986).

③ 경제자본, 유해환경 그리고 집합효율성

기존의 연구들은 범죄와 비행이 경제적인 요인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해체이론에 근거한 시카고학파의 학자들은 높은 이주율, 인종다양성과 함께 빈곤율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경제적인 부흥기에 범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이렇게 경제와 범죄와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Vold와 동료들(2002)은 경제와 범죄 간의 관계가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설명한다.

첫째는 빈곤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와 범죄와의 관계를 엄밀히 추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는 경제와 범죄가 두 가지의 상반된 가정 위에 기초해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가 어려울 때 범죄가 많다는 가정과 범죄란 경제가 부흥할 때 같이 성장한다는 가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시간의 문제로 경제력이 범죄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의 문제로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는 경제력에 따른 영향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의 문제이다. 과연 빈곤이라는 문제가 동단위에서 작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단위인지, 시단위인지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문제인지를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로는 경제력

44) 별도의 통계결과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주거안정은 교제, 친인척, 참여와 이사횟수는 교제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에 따른 문제로 소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로도 회자된다. 즉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단순히 빈곤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실업률, 인구밀도, 주택문제, 높은 이혼율, 미혼모, 높은 이주율 등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다른 개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Vold와 동료들이 제시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의 실직, 이혼 등 몇몇 요인들은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적인 요인은 빈곤의 문화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문화적 현상들과도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 양자를 구분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끝으로 빈곤이나 경제적 불평등이냐의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위 가진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증오범죄의 원인은 단순히 빈곤에서 비롯된 것인지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기란 애매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과 마찬가지로 거시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범죄 유발요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요인이 바로 유해환경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술집이나 디스코장, 러브호텔 등으로 대변되는 유해환경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많은 관심을 끌어난 부분이다. 그러나 유해환경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해환경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것이다. 과연 유해환경이 그 자체로 비행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다른 매개요인을 통해 비행을 유발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은(김준호·박정선, 1995) 유해환경이 범죄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양자 간에는 다른 매개요인이 존재함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Park, 200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의 연구들은 경제, 유해환경, 지역특성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범죄로 연결되는가를 밝히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소위 집합효율성이라는 지역내 집단과정을 제시하였다. 집합효율성 연구의 기본 주장은 경

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유해환경이 난무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 간의 교체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의 정도가 낮고 이로 인해 범위가 억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높은 집합효율성은 범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 일종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집합효율성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주거기간과 이사횟수 등 주거안정성 요인들은 지역사회 의 집합효율성과 일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보하지는 못하였고 아울러 집합효율성의 세 요인들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론적인 면과 방법론적인 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첫째는 이론적인 것으로서 주거안정성과 집합효율성의 논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60년대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붕괴되었다. 새롭게 발전한 도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 집중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분산 및 주거지이동, 높은 전세율, 주거안정을 해치는 투자로서의 주택개념 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성이 대단히 불안해졌다. 또한 오랜 군부독재로 인한 국민들 간의 대립구도 및 급격한 민주화로 인한 정부 권위의 붕괴는 양극화, 노사갈등, 지역갈등 등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여 주민들 간의 화합과 어울림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통계적 방법론의 문제로 주거안정성과 집합효율성의 논리가 우리나라에도 적합하나 아직 현실적으로 양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갖춘 지역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거안정성과 집합효율성의 경우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즉 주거안정성과 집합효율성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질 정도의 변량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덧붙여 다수준적 연구를 위해 충분한 정도의 집단수준의 표본이 확보되었으면 보다 유의

미한 통계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학생들의 용돈활용교육

끝으로 지역 간 경제적 차이와 유해환경의 효과를 개인수준에서 매개해 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소위 용돈이다. 지위비행이나 성비행에 대한 다 수준회귀분석(HLM)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용돈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비행수준은 높아졌다. 물론 설문내용의 제약상 용돈의 출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용돈의 다소정도만을 가지고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 접근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비행과 성비행의 경우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에 따라 비행의 정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들로 하여금 용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도덕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4) 정책제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에 대한 정책제언은 지역단위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개선과제와 지역사회 중심의 근본적인 문제행동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의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제행동 대책별 과제는 국내 문제행동 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원보고서 III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장에서는 지역중심의 포괄적인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청소년친화도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내 지역사회의 실험적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 오랜 경험 축적을 통해 마련한 GUIC(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의 실천전략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⁴⁵⁾.

4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과제인 ‘김영지·방은령·박정선·박경희.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2006년 12월 이 보고서와 함께 발간)’을 참조할 것.

(1) 지역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개선과제

가. 지역특성과 역량에 맞는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 내 문제행동 대책사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문제행동의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특성에 기반한 추진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최근들어 정책시행 시 지역사회 내의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출, 성보호, 폭력, 학업중단, 약물 등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들과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구축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위스타트 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교육안전망 구축사업 등 교육·복지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사업들이 각자 지역중심 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하며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 현황과 지역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 민간과 공공영역의 조직체계 형태와 역량의 수준 등 지역사회 현실과 조건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획일적인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 간에 원활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서비스의 중복·누락 현상이 나타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구축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위스타트 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교육안전망 구축사업 등 교육, 청소년, 복지정책 분야의 지역사회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관련 부처체계 내에서 한정된 범위의 네트워크만을 강조할 뿐 관련 부처를 뛰어넘어 진정한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다양한 문제행동 대책의 지역사회 추진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특성과 역량에 근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사업과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에 있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관련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2006. 9. 입법예고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특별지원청소년 등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상담, 보호, 자활, 기관연계 등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자원을 발굴하고 기관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고,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나.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자원 및 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의 문제행동 대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각종 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 및 다양한 영역별 자원 교류가 중요하다. 지역에는 다양한 전문가 및 자원봉사 인력과 시설, 설비, 교재, 교구 및 공간 등의 물적자원이 존재하며 각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원도 있다. 지역사회에는 청소년, 교육, 복지, 문화, 여성, 경찰, 종교, 기업 등의 분야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적극적인 공유가 가능하다면 문제행동 관련 정책,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단절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교류 활성화는 지역사회 내 자원 교류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정책·사업의 성패는 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 달린 만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고 지역 내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보

여진 바와 같이 헌신적이고 열의 있는 전문 전담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의 청소년동반자(YC),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프로젝트조정자(PC)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방과후아카데미의 프로젝트 매니저(PM)와 스케줄 매니저(SM)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담인력의 명칭도 다양하다. 이렇게 각 문제행동 대책별로 프로젝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단계별 연수 등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례조사 결과,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혁신적인 사업으로서 지역조례 만들기를 추진했던 몇몇 지역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진척이 더딘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 이유는 담당자가 지역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에서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 열의와 헌신성만을 가지고 추가업무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등 시간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업무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중심 문제행동 대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마련과 이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역 조례를 통해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위원, 사회복지사, 아동위원, 아동복지지도원, 복지위원 등 청소년 관련 인적자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각 분야의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을 연계·활용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대책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중심 청소년정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방 청소년단체협의회나 지역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과 같은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단위의 효율적 업무협력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예시: 부천시청소년지도자협의회 푸른모임,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가

모임 OK Youth 등). 지역사회 내의 전문인력 간의 자발적 모임과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 협의기구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활발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전문성을 갖고 지역청소년정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다.⁴⁶⁾ 지역단위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문의 전문인력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운영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많은 시설·공간 등 물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가능하기 위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이혜영·김민 외, 2006). 지역사회 내의 인적자원 교류 기반으로 ‘협의체 구성’ 과,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컴퓨터 통신망 연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행동 대책 관련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위기청소년과 문제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로서 의료지원 분야에서 국립의료원과, 청소년폭력 예방 분야에서 태권도·합기도장과 업무 협약을 하여 폭력예방 지킴이를 양성한 사례, 학교에서 교사 지원을 위해 교총 1388교사지원단을 구성한 사례 등은 자원네트워크 구축 실패로서 매우 고무적이다. 지역단위에서도 다양한 자원들과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을 통해 연계·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6)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치단체와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둘 수 있고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청소년단체·시설 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다. 지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와 증거에 기반한 대책 마련 및 엄격한 평가와 검증체계 수립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와 특성 및 지역자원의 역량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문제행동 대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는 지역에서는 지역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에 맞는 내용과 형태로 보완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일부 문제행동 대책의 경우 전 지역과 대상에 대한 획일적인 사업 적용방식이 사업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행동(가능) 청소년 대상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 실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문제의 원인, 성격, 수준과 단계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자원낭비가 있을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현실태에 적합한 처방이 아닐 경우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더 나아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 문제행동의 경우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일탈행위나 일회적인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행동 초기증상의 청소년에게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역효과를 낼 뿐이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문제행동 대책을 시행할 때에는 일반 청소년, 개연성 있는 청소년, 선도대상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1, 2, 3차적 대책을 단계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와 원인 및 문제행동 대책의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의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연구와 전반적인 지역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데이터를 생산해 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연구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 사업·프로그램의 장기적 시행과 엄격한 평가 및 검증체계를 갖

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행동 관련 정책의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중단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은 꾸준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 일회적 행사성으로 시행되는 사업 관행은 특히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제행동 예방과 감소 대책 분야에서는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효과성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스웨덴 보건복지부 연구소인 Institute for evidence-based social work practice(IMS)는 기존의 The Centre for Evaluation of social work(CUS)를 발전시켜 2004년에 개소한 연구소로서,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증거에 기반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사업의 결과와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활동 방법과 형태를 개발하며, 필요한 대상의 최선의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지식에 기반한 복지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보급하며 다양한 부문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스웨덴은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 청소년의 문제 실태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엄격한 실효성 평가 및 효과적인 대책 개발을 위해 청소년 연구개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 의식과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기적 보고서(‘OO지역 청소년 실태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 실태뿐만 아니라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예측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한다.

지역단위 청소년 문제행동 프로그램 시행과 평가과정을 거쳐 지역특성에 기반한 지역별 성공사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타지역에 벤치마킹 자료로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역별 대책과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대해,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다. 지역별 성공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결과를 지역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나누도록 한다.

(2) 청소년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대책

가. 청소년의 인권과 전인적 발달이 보장되는 청소년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 국제기구의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CFC),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의 시범적용 추진

청소년이 각종 스트레스와 소외감, 위협 등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CFC)’ 사업이나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특별총회 선언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강조하는 지방의제 21 등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권고를 적극 실행하는 사업들로서, 청소년의 관점과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2002년 개최된 유엔 아동특별총회 결의안인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은 세계 각국이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해 추진할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국대표단도 이 결의안에 적극 동의한 바 있다. 결의문이 밝히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최상의 유익을 고려한 지속적인 인간개발이 실시되는 세상으로, 각국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재천명하였다.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증진, 질 좋은 교육

제공, 학대·착취·폭력으로부터 보호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2003년 까지 ‘아동·청소년이 살기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은 2005년에 이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에 따른 국내 실천운동으로서 각 지역마다 지방의제 21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에서도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의제 21이 지역사회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주요그룹으로 아동·청소년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가 아직 미흡하다.

이에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협력과 참여를 통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CFC)’ 또는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를 자치단체별로 검토과정을 거쳐 시범적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서 관심 있는 청소년 관계자들의 자발적 활동이 촉발되어 자치단체장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추진체제를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제 추진을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2절에 제시하였다.

47) 최근 부처별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에 경쟁적으로 노력과 재원을 투입하며 유행처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진정한 주민참여형 공동체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행자부-살기좋은지역만들기·소도읍육성사업·신활력사업, 농림부-농어촌생활개선사업·은퇴자마을, 문화부-문화도시·가고싶은섬계획, 정통부-정보화마을, 해양수산부-어촌관광마을, 환경부-생태마을, 여성부-가족친화사회환경, 복지부-건강도시, 건교부-혁신도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테마관광형과 기업클러스터형 마을모델에 치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네마다 양질의 돌봄시설, 보행환경, 녹지환경 등 평범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진정한 주민참여형 공동체형성, 작은 주민참여 연습의 지속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소현, 살기좋은 지역 제대로 만들려면, 중앙일보, 2006. 9. 5. 29면).

나. 도시설계와 개발과정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역 청소년의 욕구와 관점 반영

도시설계와 개발과정에서부터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일은 가장 효율적인 문제행동 대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무질서는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유해환경을 감소시키거나 사전에 유해환경 발생과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05년 11월 청소년위원회가 후원하고 성남YM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남지부, 전교조성남지부가 주최하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신도시 만들기 100인 토론회’가 열려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교수, 교사, 학부모, 공무원, 기업, 법조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는데, 청소년 관련 토론회에서 쉽게 보기 힘든, 성남시 판교사업개발 단장,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 팀장, 전국부동산협회 정자동분회장 등이 참여하여 판교신도시의 계획단계부터 청소년 문화의 보호·육성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기존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볼 때, 판교 신도시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과 상업지역의 중심에 청소년문화를 육성하는 방안이 도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건전문화가 유해환경에 침해되지 않도록 성인위락시설은 청소년 이용지역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락시설 집중화’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업소 등의 위락시설을 상업지역에 집중화하여 주거지에서 거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을 예방하고 건전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당, 일산, 평촌 등의 신도시들이 건설될 당시에는 위락지구에 대한 개

념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성인유흥업소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성인업소와 청소년 전용시설이 한 건물에 존재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청소년위원회, 2005. 6). 특히 신도시에 나타난 청소년 유해업소 분포가 갖는 특성으로는 첫째, 주택가와 마주보고 있고 학생 통학로 등 근린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둘째, 해당 교육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업소가 밀집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고양시 일산구), 셋째, 한 건물에 청소년 관련 업소와 유해업소가 뒤섞여 있는 점, 넷째, 복합건물 내 숙박업소 개조가 시설안전 점검 등으로 국한되어 손쉽게 가능한 점 등이다. 그러나 유해업소의 난립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부재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항의활동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위락지구 지정 관련 법률조항은 있으나 임의규정이며, 위락지구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처세 등으로 위락지구 지정사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핀란드 헬싱키시 청소년국장인 Siurala Lasse에 따르면, 헬싱키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헬싱키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 가구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슬럼가가 형성되지 않도록 전체 도시가 균등한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처음 설계된 도시계획에 따라 문제발생 가능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조짐이 보이면 즉시 조기개입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건전문화를 육성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이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의 취약집단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역 청소년의 욕구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관련 정책·사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의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의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의 오랜 경험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욕구와 관점에 근거하여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청소년의 생각과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로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구하거나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방향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간 및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건강한 놀이공간과 여가문화에 대한 부분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과 교류가 활발하고 소속감을 느낄수록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사실은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이다.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활성화되고 공동체의식이 강화될수록 문제행동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주민 간의 교제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 우리사회의 지역공동체 부재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들과 공동으로 질적 행동연구를 수행한 GUIC 프로젝트 결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친근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 문화적 표현과 협력적 개선이라는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응집력 있는 지역사회에의 소속감, 안전한 거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들, 범죄로부터의 자유, 이동의 자유, 놀이를 할 수 있는 녹색공간 등을 원했으며 자신들의 환경을 설계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매우 열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외감, 폭력과 범죄, 복잡한 교통, 다양한 활동환경의 부족, 지루함,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깨끗한 물과 위생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 부재, 불안정한 주택 보유, 정치적 무기력 등은 부정적인 지역사회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 문제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여가문화 공간과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풀뿌리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성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훈련경험을 쌓음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기금공모사업의 ‘청소년참여·권리증진’ 분야에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참여활동 지원분야’가 새롭게 추가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교통문화 자원봉사단, 환경·교통 감시활동,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동아리, 마을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다.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도 지역 민간단체가 지역운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06년도에는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NGO활동기반확대,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국제교류협력 등 7개 분야에 148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였다. 여기에는 미래사회와 현재 세대가 함께하는 마을 이루기 자원봉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교육, 지역문화만들기 프로그램, 지역사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청소년 사업 등 청소년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민간지원사업 분야에 청소년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만들기 프로그램 분야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과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의 교육, 복지, 행정 등의 분야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지역참여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라. 청소년 친화적 법률 구조 마련 : 급식, 유해환경, 인권, 청소년참여 등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분야에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조례 제정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틀이 중요하다. 지역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일관되게 증진·보호하는 법률과 규정 및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뿌리를 둔 명확하고 원칙적인 법적 틀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은 어려우며, 개발된다 하더라도 차별적인 방법으로 개발될 우려가 크다.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무국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 친화적 법률 구조 마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기준을 점검하고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아동에게 관련된 법률이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국가적 검토가 있었는가?
- 국가의 법률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역 수준에서의 검토가 있었는가?
- 지역 당국들은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법률이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는지를 검토했는가?
- 이 검토들에는 독립적인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아동들이 참여하며 자문

을 제공했는가?

•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 원칙들이 도시에 있는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네 가지 일반원칙은 첫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아동들은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 (적절한 반차별 법률과 소외 아동을 위한 우대정책), 둘째, 아동들에게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생존권과 최대한의 생존 및 개발에의 권리, 넷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아동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아동들의 견해에 대한 존중 등이다.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포함하여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자문, 변호 및 소송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한 전 도시적 검토가 있었는가?

다행히 최근 들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급식조례 제정운동의 경우,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가 모여 2002년 11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를 만들고 직영전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벌였고 2003년 11월에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전국적으로는 법 개정, 지역적으로는 조례 제정운동이 확산되었다. 가장 청소년 친화적인 급식조례로 평가받았던 제주시 조례의 경우, 전교조, 종교계, 시민단체 등 55개 단체가 참여하여 급식연대 준비위를 구성하여 제주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친환경급식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부천시, 군산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조례의 세부 내용을 작성·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조례 제정은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의 이념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구체적인 장인 지역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⁴⁸⁾

2005년 군산시에서 개최한 ‘청소년인권조례 제안을 위한 토론회’에는 교수, 경찰, 교사, 청소년지도자, 변호사, 청소년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여 조례제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군산시 청소년인권 조례(안)’은 시(市)는 모든 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교육권,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표현권 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 사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시의 청소년정책에 있어 청소년 권리의 보장상황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권리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청, 학교, 교사 등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담은 것으로, 교육받을 권리,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는 아동인권조례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지방의제를 실천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푸른부천 21’ 산하에 아동인권네트워크 분과를 조직하여 운동을 시작하였다.

지역 청소년정책 과정에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2001년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위원들의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기구를 제도화 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폭력 대책을 추진하고자 했

48) 2006. 9. 8~9. 28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기존의 청소년인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권리 및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청소년관련법의 인권조항은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분위기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던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2003년 민간부문에서 연구와 시범적용을 통해 제안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역 사회의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공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자치단체를 추동시킬만한 제도적 근거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중요한 청소년 정책사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참고자료로 부록에 지역조례 예시(안)을 제시하였다.

마. 청소년친화적 지역 예산편성 및 지역 청소년정책과정에 청소년참여 활성화

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된다. 지역 예산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온전한 한 집단으로 주목받아야 하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예산과 자원확보를 위해 지역사회는 다음의 기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도시 정부가 그 배분이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서비스에 있어 자기 도시의 어린이들이 자원의 공평한 몫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 도시 예산 전체와 예산 내 요소들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쓰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적절히 분석되고 있는가?

- 도시 예산 과정이 투명하며 어린이들을 자문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는가?

- 도시 정부의 모든 양상에서 아동들에게 확보된 자원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동들의 예산이 준비되고 또 배분되고 있는가?

한편, 지역 청소년정책 과정에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의 욕구에 근거하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해 청소년참여 제도화는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

또한 지방의회에 ‘청소년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의 생활기반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삶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공식입법체계 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예산의 심의·확정,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 주민생활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의회 소속의 청소년의회는 이러한 지방의회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고, 선거를 통해 표출하지 못한 지역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모아 예산과 법규와 정책이 청소년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는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가 적절한 노력을 강구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할 것,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정책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 참여 제도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전인적 발달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 빈곤지역과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확대

경제적 빈곤이 범죄와 비행 발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유해환경과 무질서가 많이 존재했으며 지역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다. 집합효율성 연구의 기본 주장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유해환경이 난무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 간의 교제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의 정도가 낮고 이로 인해 범죄가 억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권고는 가난이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하는 데 있어 최대의 장애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한 잠재력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 때문에 가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다.

주거 안정성을 갖지 못하는 빈곤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높은 이주율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도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거주기간이나 이사횟수 등과 같은 안정적인 주거 관련 변수는 집합효율성 확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필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충분한 주거시설은 가정의 통합을 가져오며 소속감, 안정감, 인간의 연대감을 강화하므로 아동·청소년 복지에 필수적이다. 이에 아동특별총회는 도시 주변지역과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택부족난을 해결하고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안정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지역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 청소년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과정에 기업과 미디어(지역 언론·방송 등)의 역할 활성화

지역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부모와 가정, 지방정부, 지방의원 등 입법기관,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기관, 기업체와 민간기관, 종교계·문화계 지도자, 언론기관 등 다양한 사회부문과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간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지역공동체 형성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 민간기업과 지역언론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역할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지역 내 민간기업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자원봉사 인력을 제공하며 청소년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최근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 임파워먼트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SK와 부스리기사랑나눔회가 추진하는 ‘1318 Happy Zone’ 사업은 교육·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중·고등학생 지원사업이다. ‘Make a Connection’ 프로젝트는 국제청소년재단과 핀란드 기업인 노키아의 협력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연계·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또래, 가족,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언론은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기관은 아동·청소년, 부모와 가정, 일반인들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있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개발·촉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

는 데 있어 아동·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존에 다소 역할이 미흡했던 지역 주체인 민간기업과 언론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도록 그 역할을 촉진하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부문과 종교계의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이들의 인적·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관심과 노력 촉진 :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선정 및 시상, 지역 성공사례 보급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성공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다.⁴⁹⁾

기존에도 이러한 취지를 가진 사업이 있어 왔으나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청소년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2004년 청소년정책부서가 문화관광부에 있던 시기에는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정도, 인권·자율활동, 행정체계, 관련제도, 이용시설, 지원시설 및 기구 등을 평가해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2005년도에는 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경기도 안양시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2005년의 조사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구

49) 국가적 특성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를 모든 도시에 권장해 나가기 위해 국가적 프로그램을 만든 필리핀과 스페인의 사례처럼 중앙단위에서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경우도 있다.

성하는 여건, 시설, 제도 및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16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는데, 평가 결과 상위를 차지한 기관은 도시환경 여건상 청소년 유해시설이 많더라도 청소년업무 전담 공무원수를 늘리고 청소년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과 정책적 의지로 이를 극복한 경우가 많았다. 2006년도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 차원에서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권과 삶의 질이 온전히 보장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권고 수준의 진정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한 지표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자.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 국제적 준거의 지역적 활용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제시하는 9가지 단계를 소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고려되도록 하며 이들도 기본 서비스의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구조와 활동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건설하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더불어 정부 내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 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역정부의 행정과정에서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라는 개념은 그 지역사회가 크던 작던, 도시이건 시골이건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이 틀을 개발한 유니세프 사무국은 제공된 기본 골격을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 사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1. 청소년의 참여 :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촉진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의견을 고려한다.

2. 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틀 : 모든 청소년들의 권리를 일관적으로 증진·보호하는 법률, 규정 및 절차를 확보한다.

3. 도시의 아동·청소년권리 전략 :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 건설을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이나 아젠다를 개발한다.

4. 청소년 권리 부서 또는 조정 메커니즘 : 지역 정부 내에서 청소년들의 견해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일을 책임질 영구적인 구조를 마련한다.

5.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 : 법, 정책, 업무 수행(practice)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실행 전·중간·후에 평가할 체계적 과정을 마련한다.

6. 청소년들의 예산 : 청소년들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분석한다.

7. 정기적 도시 청소년 실태 보고서 : 청소년들과 청소년 권리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수집한다.

8. 청소년의 권리 알리기 : 성인 및 청소년들의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9.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청소년옴부즈퍼슨 또는 청소년위원(commissioner)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들을 개발한다.

위의 9가지 단계별 세부내용과 체크리스트는 원보고서 IV장 2절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러한 틀을 고려하여 지역 실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V. 결 론

1. 주요결과

이 연구는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를 조사하고, 각 영역별로 현행 대책을 분석하여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 수준에서 볼 때,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모두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자아통제는 개인적 수준에서 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청소년비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학교나 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라고 할 때, 공교육의 존재이유와 의미에 대한 어른들의 성찰이 요구된다. 한편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는 것 또한 확인이 되었다. 유흥업소의 범람이나 거리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는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비행과의 관계는 사회해체론과 일상생활이론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청소년을 교급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본 결과 학교급(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비행원인의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학생의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학교요인은 학교불신이고 지역사회 환경은 거리무질서이다. 중학생이 생각하는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 개인적, 가정적 요인보다 그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중학생의 비행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인문등학생의 경우는 중학생과는 달리 자아통제의 비행억제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도 고등학생의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을 설명하는 학교환경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가정적인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적었다. 실업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환경의 하나로서 유흥업소의 수가 그들의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적인 변수나, 가정, 학교변수는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실업고 학생들이 유흥오락 지역의 환경으로부터 탈선의 유혹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녀학생을 분리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자아통제력은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 다만 차이점은 남학생에게 있어서 자아통제력은 지위비행을 막는 요인에 한정되고 있지만,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지위비행과 함께 폭력비행과 자살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역사회환경 중 유흥업소의 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거리무질서는 남학생의 비행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비행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성별에 따른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각종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그것을 예방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 크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개인통제력의 확립을 강조하거나, 가정의 화목과 통합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s)을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의미를 찾고 교육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과제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율적인 교육의 수용은 타율적인 학습의 강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철학적 자기성찰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 지

에 대한 아무런 의미 없이 타율적으로 대학입학을 위해 로봇처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찾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으며, 치열함이 없기에 작은 유혹에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될 수도 있다.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불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한 축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으로 삼은 것은 이같이 지역사회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지정이나 청소년통행제한금지구역의 지정도 모두 지역사회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의 환경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이 연구의 결과대로라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통행을 막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전반적인 거리질서의 회복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거리질서의 회복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목표이기도 하다(최선우, 2003).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예방적인(proactive) 범죄통제정책으로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계도하고 관리함으로써 일탈과 범죄를 억제하려는 정책이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즉 개인과 단체와의 협조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예방과 범죄자 교정은 이제 형사사법기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무질서와 유흥업소의 범람 등의 지역적 환경이 비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경찰과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개별 구성원들이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경찰도 이제는 사후적인 범죄통제정책(reactive crime control policy)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행/범죄의 원인을 미리 찾아 근절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의 결과 지역사회 요인의 비행 유발효과가 검증된 바,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비행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본 연구는 중학생과 인문 등학생, 실업고등학생으로 교급을 나누어서, 또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서 비행원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은 지역의 사회 물리적 환경의 영향이 크고, 고등학생은 자아통제의 영향이 크며, 실업고 학생은 유흥업소의 존재가 영향을 주며, 여학생의 경우 자아통제가, 남학생의 경우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의 발견은 교급과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측면과, 각 집단의 특수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비행예방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성인범죄자 교정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서도, 최근의 추세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요소(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충동조절 등)와 더불어 범죄유형에 맞는 (crime-specific, 예를 들어 성범죄자, 절도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성별 특성에 맞는 성인지적(gender-specific) 요소(여성의 관계의존성, 양육기술 등)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비행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정 프로그램도 청소년 시기라는 공통된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비행유형별 위험 요소와 성별 차이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결과가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효과를 측정해 본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전제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독립변수들 간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이 개인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매개과정을 거쳐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예컨대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며 추후의 분석으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는 점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임을 밝혀둔다.

2. 정책제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위기개입을 위해서는 부모역할 및 가정기능, 학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개입이 적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소년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과 관련된 근거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통합법률 또는 유기적인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소년법은 입법원칙과 가치우선성을 분명히 하고, 회복적 사법 실행을 위한 이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요구된다. 새로운 소년사법모델을 위한 통일적 원칙과 철학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균형적·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들과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회복적 가치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학교, 기업 및 변호사, 청소년육성관련그룹과 같은 사회화기관에게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체계간의 연결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위탁(referral)’신청을 통하여 사법외적 제재(Extrajudicial Sanctions)의 실질

적 시행이 가능토록 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 및 민간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제5장 ‘교육적 선도’의 전면개정이 요구된다. 청소년 인권과 복지가 강조되는 21세기 정책 비전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 선도’라는 용어규정은 새로운 시대적 이념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안적 용어(개념)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 21세기 소년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염두에 두어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과의 연관성을 담아 ‘회복적 보호지원’이라는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복적 보호지원’의 장은 바로 소년사법체제와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전환처우 또는 중간처우를 위한 실행 인프라(infra)를 규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은 시급하게 청소년과 그 가족을 일시 격리하여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할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법원의 선고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인권 원칙에 부응하여 최소한 직접적 체벌(물리적 체벌)의 금지원칙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체벌불가피성은 ‘사회적 통념’이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불확정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체벌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교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인권·자치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니는 의미는 학교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폐쇄성을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가족 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원내용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혼이나 경제적 갈등에 의한 가정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 부적절한 양육방식 및 부부갈등 등과 같은 가정적 요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지원이 바로 가정·부모중심의 지원내용이다.

약화된 가정기능을 회복시키는 지원, 어려운 가정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의 자문과 지원, 부모들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교정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부부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상담과 같은 지원들이 포함된다.

첫째, 문제청소년 가정의 부모는 우선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제 학교폭력 문제해결방안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부모교육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정기능을 정상화하고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 부모들의 교육기회 및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문제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특별 부모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및 사법기관(경찰, 법원 및 보호관찰소) 등의 연계망 속에서 지역관련기관이 찾아가는 부모교육 또는, 부모를 호출하여 상담실에서 개별적,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정지원을 할 때에는 가족 안의 중심인물을 찾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기 청소년 가정은 가정이 해체되어 있거나 가정이 유지되더라도 갈등적이고 응집력이 부족하다. 민감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민감한 관찰과 지원은 가정의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바로 가정동반자이다.

셋째, 청소년을 위기로 몰아넣는 변인 중 가장 분명한 변인이 가정의 빈곤이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의 고용을 청소년의 가정이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기술 교육 지원과 가

족구성원들이 함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알코올이나 정신 질환과 같은 집중입원 치료가 요망되는 문제 가족이 있는 가정이다. 알코올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학대와 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문제 가족을 입원치료 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미리 다양한 연계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위기청소년의 경우, 도박, 폭력, 가출 등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러한 문제가 어떤 법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모를 때, 합리적 해결이나 생산적 해결이 어렵게 된다. 누구나 법률적 정보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여섯째, 가정의 중요한 기능은 정서적 지지와 휴식이다. 위기 가정의 특징은 가난이나 가족의 갈등에 의해 휴식기능과 같은 기본적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먹고, 쉬고, 잘 수 있는 생물학적 욕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재가 자원봉사지원이다. 지원방법은 가정의 일반적 생활을 점검하여 필요한 재가봉사 내용을 결정한다.

일곱째, 가족의 응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종 캠프와 주말 집단 프로그램 등을 가족이 활용하게 하는 지원이다. 열악한 환경과 황폐되어 있는 가정의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여행 등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규약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며, 학교 내에서 전문상담 제도나 정신보건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다기관 간 실무규약(protocols)] 마련 : 관련대응기관 간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교육청, 경찰·검찰, 법원, 민간청소년단체 및 의료기관 등 상호간의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이고 기관 중심이 아닌 수혜자중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위반의 심각성 등급에 따라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사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교사, 교장, 교육감 및 교육 각급기관의 담당자들의 책무와 면책권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입법원칙과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세우고,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관련 법제간의 관계 및 법조항간의 관계가 상충될 때, 구체적인 입법적 지침과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라는 정책목표에 합당하도록 세부적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치료비 구상권 등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가해학생 처분조치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그리고 ‘자치위원회’성격과 임무 등이 과연 헌법적 권리와 적법절차라는 대원칙 하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실천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제3의 조정센터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또는 화해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은 학교 또는 경찰에서 사건의 ‘위탁(referral)’하여, 회복적 실천기술을 훈련받은 전문조정자(facilitator)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학교 전문상담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생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상담인력이 학생지도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학교체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학교 정신보건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우울, 불안,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와 청소년 비행이나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이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각종 정신건강서비스와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여덟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태도교육은 상당시간을 요하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시행 시기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대인관계 대처능력 증진 및 심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대안학교 설립 등 가피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 가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제도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은 아동인권침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은 불가능하여, 이를 위해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학생교육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그 자체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권교육과 학생들의 평화적인 감수성 및 갈등해결능력을 길러주는 회복적 사법이념에 근거한 체계적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인권과 전인적 발달이 보장되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의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범적용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법률 구조와 지역 예산편성, 청소년과 기업, 미디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청소년이 각종 스트레스와 소외감, 위협 등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협력과 참여를 통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CFC)’ 또는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를 자치단체별로 검토과정을 거쳐 시범적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서 관심 있는 청소년 관계자들의 자발적 활동이 촉발되어 자치단체장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추진체제를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틀이 중요하다. 지역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일관되게 증진·보호하는 법률과 규정 및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뿌리를 둔 명확하고 원칙적인 법적 틀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은 어려우며, 개발된다 하더라도 차별적인 방법으로 개발될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 내의 중요한 청소년 정책사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된다. 지역 예산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온전한 한 집단으로 주목받아야 하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역 청소년정책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욕구에 근거하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지역 청소년정책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 참여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전인적 발달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부모와 가정,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기관, 기업체와 민간기관, 종교계·문화계 지도자, 언론기관 등 다양한 사회부문과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간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지역공동체 형성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 민간기업과 지역 언론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역할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기존에 다소 역할이 미흡했던 지역 주체인 민간기업과 언론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도록 그 역할을 촉진하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부문과 종교계의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관심과 노력을 촉진하고, 청소년 유익 공간 및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빈곤지역과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설계와 개발과정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성공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과 삶의 질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권고 수준의 진정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한 지표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건강한 놀이공간과 여가문화에 대한 부분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과 교류가 활발하고 소속감을 느낄수록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사실은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이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여가문화 공간과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풀뿌리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성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훈련경험을 쌓음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민간 지원사업 분야에 청소년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만들기 프로그램 분야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과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의 교육, 복지, 행정 등의 분야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지역참여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빈곤이 범죄나 비행 발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유해환경과 무질서가 많이 존재했으며 지역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 안정성을 갖지 못하는 빈곤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이주율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도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거주기간이나 이사 횟수 등과 같은 안정적인 주거 관련 변수는 집합효율성 확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필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충분한 주거시설은 가정의 통합을 가져오며 소속감, 안정감, 연대감을 강화하므로 아동·청소년 복지에 필수적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안정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지역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설계와 개발과정에서부터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일은 가장 효율적인 문제행동 대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무질서는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유해환경을 감소시키거나 사전에 유해환경 발생과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건전문화를 육성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이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의 취약집단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역 청소년의 욕구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영자, 김윤희(1999). 비행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8(2).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편(2006). 알기 쉬운 도시이야기. 서울: 한울.
- 교육인적자원부 외 관련부처(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06년도 중점추진 계획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본용 외(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서울: 제이플러스에드.
- 국회좋은교육연구회(2005).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자료집. 서울: 국회좋은교육연구회.
- 권지은(1998).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기광도, 이희길(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17.
- 김경준 외 (2005).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개발원.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식(2000).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비행성향 및 자살충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조, 윤옥경(2001).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비행: 분석과 대응. 청소년학연구 제 5권 1호.
- 김성준, 김찬동, 김용운(2004).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뉴거버넌스 실현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승구(1992). 외국의 소년범죄처리태도와 실태 -일본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한, 서정아(200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 이명진, 이승현(2005).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연구Ⅲ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행정·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은경(2000). 체벌의 신화와 실제, 한국사회학 제34집 봄호.
- 김은경(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범 정책동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이동원(2003).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김일수(1998). 형법총론(제6판). 서울: 박영사.
- 김준호(1994).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제17권.
- 김준호(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 제3권.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박정선(1995).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고경임·최원기(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광대경, 이동원, 박철현(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엽(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 김준호, 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화 외(2002). 청소년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 노성호(2004). 청소년비행원인들의 연합효과에 대한 검증. 한국청소년패널조사II(데이터 활용 논문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민수홍(1997).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200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피해경험. 한국청소년패널조사II(데이터 활용 논문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제12권.
- 민수홍(2005). 수형자의 자기통제력과 차별교제가 교도소 내 규율위반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16권.
- 박병식(200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자료집.
- 박병식 외(1999).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 문제청소년 지도를

- 위한 법률적 이해.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순진(2004).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중첩. 한국청소년패널조사II(데이터 활용 논문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신, 김의철(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 박철현(2004). 차별접촉, 긍정적 자아개념, 그리고 청소년비행: Reckless의 붕괴이론 검증. 한국청소년패널조사II(데이터 활용 논문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현선, 이상균(1998). 청소년기 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학교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8).
- 박효정 외(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방희정, 조아미(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16, NO. 1.
- 백혜정, 황혜정(2005).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정아, 김영희, 김서연(2005). 청소년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손유미, 김상호, 조정아(2003).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명희(2002). 한국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과 교육적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일교육문제세미나.
- 신윤정, 최은진(2004). 청소년의 향정신성 유해약물 중독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연구
- 신현숙(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 안권순, 한건환(2001).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변인과의 관계. 상담과 지도 36.
- 연문희(2003). 한국학교상담의 현재와 미래, 한국학교상담학회 2003년 학술대회 자료집.
- 오성삼(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 출판부.
- 유성경(1999). 적응유연성 발달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청소년상담연구 제7권 제1호.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제38권.
- 유성경, 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

- 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3(2).
-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제18권 1호.
- 유성경, 안희정, 이소래, 오익수(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진이, 김영인, 류중석, 신현숙(2005). 청소년유해업소 개선대책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윤철경, 김성경, 김현주, 박병식, 이봉주(2005).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이순래, 박철현(2005).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원(1997).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회통제이론의 확장: 주요통제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6.
- 이동원(200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 한국청소년패널조사II(데이터 활용 논문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원, 김지선(1999).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동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명숙, 김영미(1993). 가족구조와 부모물화가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2).
- 이민희 외 2인(2004).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임지연(2004).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식(1997). 자아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매개과정. 1997년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요약문. 서울: 한국사회학회.
- 이성식(1998). 거주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범죄피해. 피해자학 연구 제6집.
- 이수진, 박중규(2004). 청소년 온라인 게임중독 실태와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순래(2004).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패널조사II(데이터 활용 논문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은경 외 4인(2003). 청소년비행 위험요소·보호요소 척도의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2).
- 이은주(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

- 이재분, 박효정, 현주(2003).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상 (1999). 형법총론(제4판). 서울: 박영사.
- 이종원 외 4인(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주호 (2005). 한국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나남출판.
- 이춘화, 윤옥경(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 조아미(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혜영, 양병찬, 김민, 김정원(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성택, 김혜진(200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혁백(2005). IT와 공공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경숙 외 3인(1999).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문제청소년 지도를 위한 법률적 이해.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영실(2002). 부모의 훈육과 비행의 관계 연구, 형사정책연구 49.
- 정기선, 민수홍, 이희길(2001). 가족과 청소년비행. 서울: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 정지웅 외(2005). 지역사회 종합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정지웅, 이성우, 정득진, 고순철(2000). 지역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진주 외(2004). 여성 청소년의 흡연실태와 흡연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정현희, 이시형, 김은정, 박현선, 신현아, 강신옥(1998).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미래.
- 조병인 외(200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아미, 방희정(2004). 사이버관련 청소년의 문제행동 - 음란성과 폭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제2호.

- 조영달 (1998). 한국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 나남출판.
- 조한범, 이금순, 이우영, 전효관(2003).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주리애, 권석만(2001). 인터넷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유형분석 :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Psychological Science Vol. 10, No. 1.*
- 짐 아이프 저, 류혜정 역(2005). 지역사회개발. 서울: 인간과 복지.
- 청소년대화의광장(1998). 청소년문제론.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가출청소년 조기발견방안 및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보호백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위원회(2005). 푸른성장 행복한 도시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5).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 세미나 자료집.
- 최영신(2005).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강석구, 김혜경(20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일섭, 류진석(200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충욱(1997), 유해환경과 청소년 문제. 교육사회학연구(한국교육사회학회) 제7권 제3호.
- 폭력없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외(2005), 학교폭력 위기관리 매뉴얼. 서울: 폭력없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하성규, 김재익, 전명진, 문태훈(2003). 지속가능한 도시론. 서울: 보성각.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2004). 학교폭력대책국민운동추진을 위한 단체워크숍 자료집. 서울: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2005). 학교폭력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100인 토론회. 서울: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국회좋은교육연구회(2005),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 법률적 과제-학교폭력과 성비행의 관계. 서울: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국회 좋은교육연구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4). 청소년환경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전국 청소년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2004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Workshop.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복지학회(2005).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구축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상철 외 4인(2003). 청소년 문제행동 :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한상철, 김남선, 이수연, 이미연, 최성열(2005).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연구 : 청소년성관련문제행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경북 : 대구한의대학교청소년문제연구소
- 황순길 외(2005). 학교청소년상담사 학교상담 활동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園田寿(1999). 解説児童賣春・児童ポルノ處罰法. 日本評論社.
- 澤登俊雄(2003). 少年法入門(第2版). 有斐閣.
- 橫山實(2002). 日本における少年非行の動向と嚴罰化傾向. 소년법연구 창간호.
- Akers, R. L.(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Akers, Ronald L. and Christin S. Sellers.(2005).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Roxbury Publishing Co.(민수홍 외 역, 범죄학이론. 2005. 나남).
- Barnes, G.M. and M.P. Farrell(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763-76.
- Bernd-Dieter Meier/Dieter Rössner/Heinz Schöch(2003). *Jugendstrafrecht*, Beck·München.
- Blum, R.W., & Libbey, H.P.(2004). Executive Summary.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 Blum, R.W., McNeely, C. A., & Rinehart, P.M.(2002). *The Untapped Power of Schools to Improve the Health of Teens*. Minneapolis, MN: Center for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Univ. of Minnesota.

- Braitwaite, J.(1981). The Mith of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 Bruner, C., Kunesch, L., and Knuth, R.(1992). *What does research say about interagency collaboration*. Oak Brook, IL: NCREL.
- Bruno W. Nikles/Sigmar Roll/Dieter Sprürck/Klaus Umbach(2005). *Jugendschutzrecht*, 2. Aufl., Luchterhand.
- Burgess, Edwin(1925). A Growth of the City: An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pp. 47-42 in the *City: Suggestions for Investigations for Human Behavior in the Urban Environment*. edited by Morris Janowitz,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rsik(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6.
- Burt, M. R., Resnick, G. and Novick, E. R.(1998). *Building supportive communities for At-risk adolescents: It takes more than servic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esney-Lind, Meda.(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l of female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35.
- Clabby, J. F., & Elias, M.J.(1986). *Teach your child decision making*. New York: Doubleday.
- Cohen, Albert K.(1955). *Delinquent Boys*. Glencoe, IL: Free Press.
-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Supplement: S95-S120.
- Detlev Baum/Bruno W. Nikles(2001). Vom ordnungsrechtlichen zum erzieherischen Jugendschutz, in: Günter F. Müller(Hrsg.), *Lebenslanges Lernen*, Festschrift für Franz Fippinger, Landau.
- Driskell, David(2002). *Creat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 - a manual for participation*. Paris: UNESCO Publishing.
- Elliott, D.S., Voss, H.(1974). *Delinquency and Dropout*. Lexington: Lexington.
- Fischer(1982). *To Dwell Among Friends: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aser, M. W., Richman, J. M., & Galinsky, M. J.(1999). Risk, protection, and

- resilience.: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 Gans, Herbert(1962). *The Urban Villages*. New York: The Free Press
- Glueck, S., & Guleck, E.(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Havard Univ. Press.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o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1989). Exploring Alternatives to Integrated Theory. In Steven F. M., Marvin D. K., Allen, E. L.(Eds.), *Theoretical Integration in the study of deviance and crime: problems and prospects*. Albany, NY: SUNY Press.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cobs, Jane(1961). *The Death and Life of the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Janowitz, Morris(1976). *Social Control of the Welfare Stat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plan, H.(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53-277.
- Kasarda, John D. and Morris, Janowitz(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9.
- Kelly, D.H., & Pink, W.T.(1973). School Commitment, Youth Rebellion, and Delinquent. *Criminology*, 10.
- Klem, A.M., & Connell, J.P.(2004). Relationship Matter: Linking Teacher Support to Student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62-273.
- Lawrence, R.(1985). School Performance, Containment Theory, and Delinquent Behavior, *Youth and Society*, 17(1).
- Lemert, Edwin. M.(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 Hill.
- Messner, Steven F. and Richard, Rosenfeld(2001). *Crime and the American Dream*. Belmont, CA: Wadsworth.
- Nye, F.(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ark, Cheong Sun(2002). *An Integrated Multilevel Approach to Juvenile Delinquency - An Application to Korea* -. Ph.D Dissertatio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 Patterson, G.(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OR:

Cast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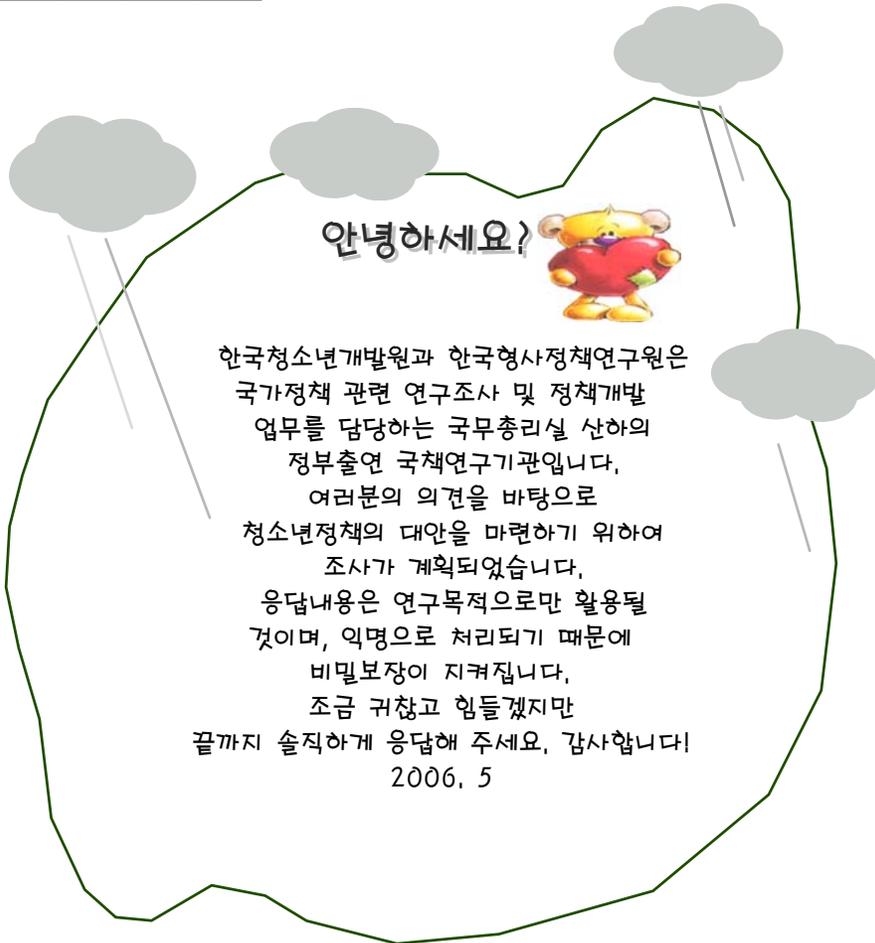
- Patterson, G.(1986). Maternal Rejection: Determinant or Product for Deviant Child Behavior? In W.W. Hartup & Z. Rubin(ed.).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Polk, K., & Schafer, W.E.(1972). *School and Delinquenc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Ragan, Doug- McNulty, Loril(2006). The youth friendly city - *The World Urban Forum 2006 Vancouver working group discussion paper*. Vancouver: The Environmental Youth Alliance.
- Rankin, J.H., & Kern, R.(1994). Parental Attachment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2.
- Rankin, J.H., & Wells, E.(1990).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s and Direct Controls on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R.W., Bauman, K.E., Harris, K.M., Jones, J., Tabor, K., Beuhring, T., Sieving, R.E., Shaw, M., Ireland, M., Bearinger, L.I., & Udry, J.R.(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Robinson W. S.(1950). Ecological Correlations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5.
- Rutter, M., & Giller, H.(1984). *Juvenile Delinquency: Trends and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Sampson, R. J.(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3.
- Sampson, R. J.(1999). What 'Community' Supplies. In Ferguson and Dickens(Ed.) *Urban Problems and Community Development*(pp. 241-279). Brookings.
- Sampson, R. J., Stephen, R., and Felton, Earls.(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Vol. 277.
- Shaw, Clifford and Henry, McKay(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mcha-Fagan, Ora and Joseph, E. Schwartz(1986). Neighborhood and Delinquency: An Assessment of Contextual Effects., *Criminology*, Vol. 24.
- Sullivan, R. and M.F. Wilson(1995).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elinquency: A Review and Proposal', *Adolescence* 30(117).

- Suttles, Gerald D.(1968). *The Social Order of the Slu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ttle, C.R., Villemez, W.J. and Smith, D.A.(1978). The myth of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 Tittle, C. R. & Meiyer, R. F.(1991). Specifying the SES/Delinquency Relationship, *Criminology*, 28(2).
- Unicef(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2004). Child Friendly Cities. Unicef Publication.
- Vold, George B., Thomas, J. Bernard and Feffrey, B. Snipes(2002).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lgrave, L.(1998). What is at stake in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 In L. Walgrave(Ed.).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 Potentialities, Risks, and Problems for Research*. Leuven, Belgium: Leuven University Press.
- Wellman, Barry(1979). The Community Question: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nk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4.
- Wirth, Louis(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4.
- Ziegler, E., Taussig, C., & Black, K.(1992).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 promising preventative for juvenile delinquency . *American Psychologist*, 47(8): 997-1006.

부록 : 설문지

부록 : 설문지

설문지 NO.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가 계획되었습니다,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지켜집니다,
조금 귀찮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06. 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여러분의 부모님 및 가족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가 두렵거나 슬플 때 힘이 되어 주신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신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 하신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나에게 부드럽게 대답하신다.	1	2	3	4	5
5)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다.	1	2	3	4	5
6)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5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5
8)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5
9)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잘 돕는다.	1	2	3	4	5
10)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1	2	3	4	5
11) 우리 집 식구들은 대화를 많이 한다.	1	2	3	4	5
12)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믿지 못한다.	1	2	3	4	5
13)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1	2	3	4	5
14) 우리 집 식구들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한다.	1	2	3	4	5
15) 부모님은 서로 대화를 자주 하신다.	1	2	3	4	5
16) 부모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말다툼이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신다.	1	2	3	4	5
18)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때리기도 하신다.	1	2	3	4	5
19)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1	2	3	4	5
20)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욕을 하기도 하신다.	1	2	3	4	5

2. 당신이 집안에서 말을 잘 안 듣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잘못했을 때마다 혼낸다
- ②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 혼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 ③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

3. 당신의 부모님(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은 당신이 잘못을 했거나, 당신을 야단치실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심하게 때리셨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고함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심하게 욕을 하셨다.	1	2	3	4	5

4. 당신의 성적이 올랐거나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행동했을 때, 부모님께서 칭찬을 자주 해주시는 편입니까?

- ① 자주 칭찬하신다
- ② 가끔 칭찬하신다
- ③ 거의 칭찬하시지 않는다
- ④ 전혀 칭찬하시지 않는다

4-1.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과 의견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내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서로 대화를 통해 결정을 하도록 하신다
- ② 내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부모님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신다
- ③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

5. 당신은 부모님과 평소에 대화를 잘 합니까?

- ① 진지하게 대화를 자주 나눈다
- ② 피상적으로 끝도는 이야기만 한다
- ③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

5-1. 부모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는 말이 안통해서
- ②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안 되어서
- ③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서
- ④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불안해서
- ⑤ 기타 ()

6. 당신이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따뜻한 관심과 애정 ② 가족간의 많은 대화 ③ 신뢰와 이해심
 ④ 편애하지 않는 대우 ⑤ 부모의 확목 ⑥ 경제적 여유
 ⑦ 기타()
7.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당신의 부모님은 담임선생님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부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1번 ② 2-3번 ③ 4번 이상 ④ 만난 적 없다.
9. 당신의 학교에서는 부모님과 선생님간에 학생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 당신은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간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1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10-1번으로 가시오)
- 10-1.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화를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② 나의 학교생활을 부모님께 알리기 싫어서
 ③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④ 부모님이 학교에 오면 존지를 내야될 것 같아서
 ⑤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⑥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것이 무조건 싫어서
 ⑦ 기타 ()
11. 당신의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① 있다 (11-1번으로 가시오) ② 없다 (12번으로 가시오)
- 11-1.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2번을 참고해서 답해도 좋습니다).
-

12.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	항	전혀 불필요	약간 불필요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	매우 필요
1)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양육방법	1	2	3	4	5
2)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1	2	3	4	5
3)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	1	2	3	4	5
4)	효과적인 부모자녀 간 갈등 해결 방법	1	2	3	4	5
5)	효과적인 부부갈등해결 방법	1	2	3	4	5
6)	분노(화)를 조절하는 프로그램	1	2	3	4	5
7)	청소년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	1	2	3	4	5

12-1. 위에 제시된 프로그램 중 당신의 부모가 받았으면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 * 두 번째로 필요한 프로그램 ()

13.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럼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여 판단한다.	1	2	3	4	5
3)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도 한다.	1	2	3	4	5
5)	나는 아무리 신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 위험이 따르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일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7)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9)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10)	나는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여러분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4.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에는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1	2	3	4	5
2) 우리 담임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1	2	3	4	5
4)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주고 지지해 주신다.	1	2	3	4	5
5) 우리 학교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신다.	1	2	3	4	5
6) 우리 학교에는 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사이가 좋다.	1	2	3	4	5
8) 우리 학교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다.	1	2	3	4	5
9) 학교에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다.	1	2	3	4	5
10) 우리 학교에는 나에게 힘을 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다.	1	2	3	4	5
11) 학교에 가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다.	1	2	3	4	5
13)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은 별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1	2	3	4	5
14)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15)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공부하기가 싫다.	1	2	3	4	5
16) 부모님은 나에게 내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높은 성적을 요구하신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부모님으로부터 공부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때가 많다.	1	2	3	4	5
18)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1	2	3	4	5
19) 부모님은 나의 성적에 대체로 만족하고 계신다.	1	2	3	4	5
20) 지금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1	2	3	4	5
21)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	1	2	3	4	5
22)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체로 유능하다.	1	2	3	4	5
23) 갈수만 있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1	2	3	4	5
24)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인 것이 좋다.	1	2	3	4	5
25) 이 학교에서는 공부하는데 흥미나 재미를 느낀다.	1	2	3	4	5
26) 우리 학교의 규칙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	1	2	3	4	5
27)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성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신다.	1	2	3	4	5
28)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1	2	3	4	5
29) 이 학교의 규칙은 너무 엄격하다.	1	2	3	4	5
30) 학급 내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31) 학급 내 맘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32)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33) 학교에 맘에 들지 않는 선생님이 계신다.	1	2	3	4	5
34)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35) 학교에서 부모님이 참가하시는 행사 (예: 운동회, 학예발표회) 등이 열린다.	1	2	3	4	5
36)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37) 우리학교 선생님은 왕따,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신다.	1	2	3	4	5
38) 우리학교 학생들은 왕따,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15. 당신이 현재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아래에 제시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 () * 두번째로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 ()

- 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② 학교선생님과의 갈등 ③ 진로문제
- ④ 학교친구(동성 및 이성포함)와의 갈등 ⑤ 학교폭력문제 ⑥ 학교성적문제
- ⑦ 학교의 교칙에 대한 부적응문제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6.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친구가 학교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① 즉각 선생님에게 알린다
 - ② 즉각 경찰서에 알린다
 - ③ 즉각 부모님에게 알린다
 - ④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26-1로 가시오)

26-1.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복이 두려워서
- ② 신고했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할까봐
- ③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④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 ⑤ 경찰이나 선생님이 귀찮게 할 것 같아서
- ⑥ 피해당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27. 당신은 폭력을 행사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규칙에 따라 퇴학시켜야 한다
- ② 뉘우치도록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한다
- ③ 피해학생이 용서하면 퇴학시켜서는 안 된다
- ④ 나를 괴롭힐 수도 있으므로 퇴학시켜야 한다
- ⑤ 처벌은 하되 퇴학은 시켜서는 안 된다
- ⑥ 피해학생에게 보상하면 퇴학시켜서는 안 된다
- ⑦ 나만 괴롭히지 않는다면 퇴학시키든 말든 상관없다

28. 다음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한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다음의 유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피 해 유 형	없다	있다
1)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2)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1	2
3)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집단따돌림(또는 왕따)을 당한 적이 있다.	1	2
4)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성폭행은 제외).	1	2
5) 가족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성폭행은 제외).	1	2
6)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여학생만).	1	2
7) 가족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여학생만).	1	2
8) 한적한 거리나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여학생만).	1	2

28-1. 피해를 입은 학생들만 답하시오. 위 28번의 피해유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피해유형을 한 가지 선택하십시오. 피해유형 _____ 번
 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 ① 수치심 | ② 또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
| ③ 주변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 | ④ 친구들과 멀어진 느낌 |
| ⑤ 이야기할 데가 없다는 느낌 | ⑥ 학교생활을 못 하는 것 |
| ⑦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 | ⑧ 악몽과 불면증 |
| ⑨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 | ⑩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 |
| ⑪ 제대로 상담받지 못한 것 | ⑫ 사건에 대해 여러 번 답해야 되는 것 |
| ⑬ 기타 () |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길에서 보는 아이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1	2	3	4	5
5) 길에서 보는 어른들이 우리 동네 어른이신지 아닌지 알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동네를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동네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1	2	3	4	5
8) 주민들이 이 동네에 오래 살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5
9) 빈곤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1	2	3	4	5
10) 빈부격차가 심하다.	1	2	3	4	5

32. 사는 곳에 행정구역상 동 이름 이외에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까? (예: 삼거리마을, 연원마을 등)

① 예 (이름: _____) ② 아니오

33. 집과 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4. 통학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② 부모님 자가용 ③ 버스(마을버스)
 ④ 지하철 ⑤ 자전거 ⑥ 2개 이상의 방법
 ⑦ 기타 (_____)

35. 위에서 응답한 통학방법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약 _____ 분

36. 당신이 사는 지역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 ① 주거지역 ② 상가지역 ③ 공장지역
 ④ 복합지역 ⑤ 기타 (_____)

37. 당신이 사는 지역사회에는 다음 중 어떤 주거형태가 가장 많습니까?

-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연립주택
 ④ 기타 (_____)

38.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근접한 내용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민들이 친절하다.	1	2	3	4	5
2)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다.	1	2	3	4	5
3) 주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5
4) 주민들이 어른들을 공경한다.	1	2	3	4	5
5) 주민들이 아이들을 잘 돌본다.	1	2	3	4	5
6) 주민들이 서로 서로를 아낀다.	1	2	3	4	5
7) 아이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5
8)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한다.	1	2	3	4	5
9) 아이들이 예의바르다.	1	2	3	4	5
10) 주민참여 행사(음악회, 운동회 등)가 열린다.	1	2	3	4	5

39. 동네에 다음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많은 편이다	아주 많다
1) 교회	1	2	3	4	5
2) 학원	1	2	3	4	5
3) 상가	1	2	3	4	5
4) 24시간 편의점	1	2	3	4	5
5) 공원, 놀이터	1	2	3	4	5
6) 극장, 공연장	1	2	3	4	5
7) 아이들이 쉬 만한 장소	1	2	3	4	5
8) 아이들이 어울려 놀 장소	1	2	3	4	5

40. 동네에 다음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많은 편이다	아주 많다
1) 전자오락실	1	2	3	4	5
2) PC 방	1	2	3	4	5
3) 노래방	1	2	3	4	5
4) 비디오방/DVD방	1	2	3	4	5
5) 만화방	1	2	3	4	5
6) 나이트클럽(디스코텍 포함)	1	2	3	4	5
7) 복권방 등 사행성 업소	1	2	3	4	5

문	항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많은 편이다	아주 많다
8)	당구장	1	2	3	4	5
9)	술집 (호프집)	1	2	3	4	5
10)	러브호텔	1	2	3	4	5
11)	사창가	1	2	3	4	5
12)	후미지고 어두침침한 곳	1	2	3	4	5

41. 지역의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만족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1	2	3	1	2	3	4
2) 근로 청소년회관	1	2	3	1	2	3	4
3) 청소년공부방	1	2	3	1	2	3	4
4)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	2	3	1	2	3	4
5) 청소년 자활지원관	1	2	3	1	2	3	4
6) 가출청소년 쉼터	1	2	3	1	2	3	4
7)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1	2	3	1	2	3	4
8) 청소년 상담센터	1	2	3	1	2	3	4
9) 자원봉사센터	1	2	3	1	2	3	4
10) 고용안정센터	1	2	3	1	2	3	4
11) 미혼모시설	1	2	3	1	2	3	4
12) 직업훈련원	1	2	3	1	2	3	4
13) 공공 도서관	1	2	3	1	2	3	4
14) 공공 문화·체육시설	1	2	3	1	2	3	4
15) 구민회관	1	2	3	1	2	3	4

42. 평소에 동네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자주 보니까?

문	항	전혀 못 봄	별로 못 봄	그저 그렇다	가끔 보는 편	자주 보는 편
1)	사람들끼리 싸우기(말싸움, 몸싸움)	1	2	3	4	5
2)	운전자들끼리의 다툼	1	2	3	4	5
3)	술 취한 사람	1	2	3	4	5
4)	고성방가로 떠드는 사람	1	2	3	4	5
5)	노숙자	1	2	3	4	5
6)	거리에 짐 뺀 사람	1	2	3	4	5
7)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무단횡단)	1	2	3	4	5
8)	신호등을 안 지키는 차량	1	2	3	4	5
9)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사람	1	2	3	4	5
10)	어린 아이를 혼내거나 야단치는 부모	1	2	3	4	5
11)	담배꽂이를 버리는 사람	1	2	3	4	5
12)	휴대전화를 큰 소리로 받는 사람	1	2	3	4	5

43. 동네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주 보니까?

문	항	전혀 못 봄	별로 못 봄	그저 그렇다	가끔 보는 편	자주 보는 편
1)	버려진 차량	1	2	3	4	5
2)	포장마차	1	2	3	4	5
3)	노점상이나 가두판매점	1	2	3	4	5
4)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진 건물	1	2	3	4	5
5)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1	2	3	4	5
6)	침이나 담배 꽂초	1	2	3	4	5
7)	넓고 오래된 건물	1	2	3	4	5

44. 당신의 동네 주민특성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에 친척이 살고 계신다.	1	2	3	4	5
2)	동네에 부모님의 가까운 친구분이 살고 계신다.	1	2	3	4	5
3)	우리 동네 어른들은 대체로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던 분이다.	1	2	3	4	5
4)	우리 동네는 어른들끼리(주민들끼리) 가깝게 지낸다.	1	2	3	4	5
5)	우리 부모님은 반사회에 자주 참석하신다.	1	2	3	4	5
6)	나는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한다.	1	2	3	4	5
7)	우리 동네에 나를 아는 동네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	1	2	3	4	5

45. 다음의 상황에서 동네 어른들은 어떻게 하실지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주실 것이다.	1	2	3	4	5
2)	동네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면 못하게 하실 것이다.	1	2	3	4	5
3)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나 공원 등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보면 못하게 하실 것이다.	1	2	3	4	5
4)	동네아이들이 몰려다니며 떠드는 것을 보면 꾸짖으실 것이다.	1	2	3	4	5
5)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실 것이다.	1	2	3	4	5
6)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나쁜 짓을 하면 우리 부모님 귀에 금방 들어갈 것이다.	1	2	3	4	5
7)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충고하실 것이다.	1	2	3	4	5
8)	날치기가 누군가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는 것을 본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것이다.	1	2	3	4	5
9)	낯선 사람이 동네 집 근처에서 서성이며 담을 넘을 듯한 기미가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것이다.	1	2	3	4	5

46.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타교에서 퇴학당한 친구가 우리 학교로 전학 오는 걸 반대한다.	1	2	3	4	5
2)	폭력서클에서 활동한 친구는 그렇지 않은 친구보다 심하게 처벌해야 한다.	1	2	3	4	5
3)	어떤 잘못이라도 죄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야 한다.	1	2	3	4	5
4)	폭력을 행사한 친구가 치료비를 지불하면 용서해야 한다.	1	2	3	4	5
5)	폭력을 행사한 친구가 <u>진심으로 사과</u> 하면 용서해야 한다.	1	2	3	4	5
6)	폭력을 행사한 친구가 치료비를 지불하고 <u>진심으로 사과</u> 하면 용서해야 한다.	1	2	3	4	5

47.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참여해 본 적이 있는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흡연예방프로그램 ② 성교육프로그램 ③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④ 폭력예방프로그램 ⑤ 약물오남용예방프로그램 ⑥ 기타 ()

47-1.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만) 참여 후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48. 각 행동 중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없다	6개월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주일에 한두번	1주일에 3-4번
1)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2)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3)	성인용 음란/포르노물(비디오·영화·만화 등)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4)	성인용 술집(호프집/단란주점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5)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6)	시험볼 때 권닝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7)	학교를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8)	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9)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0)	집단 패싸움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1)	백화점/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2)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3)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빼앗은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4)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5)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복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6)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7)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르노물을 열람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8)	채팅/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19)	채팅/게시판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20)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55. 당신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아주 잘하는 편 ② 잘 하는 편 ③ 보통 수준
④ 못하는 편 ⑤ 아주 못하는 편

56. 1달 평균 용돈은?

- ① 쓰지 않는다 ② 1-5만원 정도 ③ 5-10만원 정도
④ 10-20만원 정도 ⑤ 20-30만원 정도 ⑥ 30만원 이상

♣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김민	순천향대학교 · 교수
김석병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 팀장
김영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 공동대표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김현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상담자활팀 · 사무관
김현주	중앙대학교 · 교수
우정자	루터대학교 · 교수
임영식	중앙대학교 · 교수
임준태	동국대학교 · 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 교수
천상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 · 팀장

◆ 집 필 진 ◆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연구 보조 ◆

김귀랑	숙명여자대학교 · 석사
김민규	한양대학교 · 석사과정
이정주	한양대학교 · 석사과정
함은정	한양대학교 · 석사

연구보고 06-R1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인 쇄 2006년 12월 5일

발 행 2006년 12월 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02)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31-9(93330)